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분석

- 2014. 8.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최 기 호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분석

2014. 8.

연구책임자 최 기 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 최 보 략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세무회계학전공 조교수)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제 출 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과제
「외국인 투자지원에 대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분석」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8.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최기호

목 차

I. 머리말	1
1.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1
2.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검토의 필요성	1
3.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검토	2
II. 선행연구검토	4
1. 이론적 배경	4
2. 서울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10
III.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률	30
1. 조세부담률의 측정과 표본 선정	30
2.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조세부담률 비교	38
3.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투자국별 조세부담률	55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경과기간별 유효세율	59
5. 소결	62
IV.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64
1.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64
2. 미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74
3. 영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78
4.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81
5. 대만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87
6. 홍콩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91
7. 인도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93
8. 중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98
9. 일본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102
10.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104
1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	107

V. 외국인직접투자 과세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사항들: OECD 보고서로부터의 시사점	117
1.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효익	117
2. 외국인직접투자 과세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	119
3. 투자유치국의 세제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관련성에 대한 관점	126
4. 국제적인 조세경쟁에 대한 대응	130
5.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136
6. OECD 보고서 정책고려사항의 시사점	139
VI. 맺음말	142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42
2.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분석	144
3.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의 개선방향	147
참고문헌	149

표 목 차

<표 1> 표본기업의 업종별 구성-2011년 기준	32
<표 2>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표본의 기술통계-2011년 표본	34
<표 3>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조세부담률	39
<표 4>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 구간별 비중	42
<표 5>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연도별 조세부담률	44
<표 6>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총자산 규모별 조세부담률 I	46
<표 6>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총자산 규모별 조세부담률 II	48
<표 7>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세전 순이익별 조세부담률 I	50
<표 7>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세전 순이익별 조세부담률 II	51
<표 8>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업종별 조세부담률	53
<표 9> 외국인투자기업 대표투자국별 조세부담률 I	56
<표 9> 외국인투자기업 대표투자국별 조세부담률 II	57
<표 10>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경과기간별 조세부담률	61
<표 11> 국가별 외국인투자 추이	65
<표 12>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연혁	67
<표 1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 요건	70
<표 14> 외국인투자지역 유형별 비교	70
<표 15>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73
<표 16>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73
<표 17> 외국인투자 규제 사업분야	74
<표 18>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조세지원제도	78
<표 19> 영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81
<표 20> 싱가포르의 보조금지원 제도	84
<표 21> 업종 및 활동별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84
<표 2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86
<표 23> 지원규모 및 프로젝트 집행기한	89
<표 24> 가공수출지역 및 과학공업단지의 입주 우대제도	89
<표 25> 대만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90
<표 26> 인도의 법인세율	96

<표 27> 인도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97
<표 28>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변화	98
<표 30>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내·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비교 I	108
<표 3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내·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비교 II	110

그림 목 차

<그림 1> 외국인투자의 추이	65
<그림 2> 외국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조세요인과 비조세요인	127

I. 머리말

1.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당면과제임. 이는 국내경기활성화나 선진기술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목적에서 순기능이 있음.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정책 중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조세감면이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수십년 동안 이용되어 왔음.
 - 조세감면의 내용은 최초 투자, 투자수익, 이익에 대한 배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최초 투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며 투자로부터의 이익에 대해서는 최초 5년간은 100%, 그 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고 있음.
 - 또한 감면받은 투자이익의 배당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감면이 있음.
 - 우리나라의 이러한 조세지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와 비교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임(Invest Korea, 2004; 최기호, 2007)

2.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검토의 필요성

-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은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임.
 -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과 투자지역의 세율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Hines, 1997; Blouin, 2012)
 -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가 유치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전태영과 변용환, 2006; 최기호, 2007).
- 그렇지만 조세감면으로 인한 세수손실을 상쇄하는 유인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해외의 많은 연구들에서 세금 감면이 외국인투자유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과의 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함.
 - Wilson(1993), Single(1996) 등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서 세율이 갖는 중요성은 이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보다는 간접시설이나 거주환경 등의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함.

-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에서도 조세지원으로 투자유인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최기호, 2007).
- 이상을 요약하면 외국인투자유치를 조세감면의 실효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검토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우선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지원 세제의 연혁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를 확인하고자 함.
 - 외국의 지원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하고자 함. 특히 우리나라와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조명하고자 함.
- 다음으로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조세부담을 유효세율, 현금유효세율, 장기유효세율 등이 있음. 이러한 측정치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국내 기업들 간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이들 기업의 조세감면이 실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함.
-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직접 파악하고 이에 따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과제임. 대안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한 방법이 있지만 이 또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선진외국의 사례와 선행연구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외

국인투자기업들의 실태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을 진단하고자 함.

- 또한 조세감면 외에 비조세 지원 등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비조세지원으로서는 최초 투자비용의 일부 분담이나 거주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지원 등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지방소득세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서 이러한 방안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II. 선행연구검토

1. 이론적 배경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효익

-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정책담당자들은 외국인직접투자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유치국(host country)의 소득(domestic income)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OECD, 2007).
 - 직접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지인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급여나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의 국내소득을 증가시키게 됨.
 - 간접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사업상 필요한 물품 등의 2차 구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국내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하여 다양한 지식이나 기술이 투자유치국의 법인이나 개인들에게 이전되어 현재와 미래 투자유치국의 국내소득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에서의 국내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직접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서 투자유치국에서 내국인을 고용하며 간접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지기업을 추가로 활성화시켜서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투자유치국에서의 고용현황이 완전고용에 가깝다면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은 현지 기업에서의 고용을 대체하는 효과만 갖게 되므로 추가적인 고용효과를 거둘 수 없을 수도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에서 기술이나 지식의 이전효과(spillover effect)를 줄 수 있음.
 - 기술이나 지식의 이전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생산성이 높여주는 형태로 투자유치국의 경제발전에 기여
 - 또한 직접으로 기술이 현지의 다른 국내법인들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인적 자본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기술이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이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로 투자유치국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러한 경쟁의 심화가 생산성을 증가시키거나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나. 외국인직접투자와 투자유치국에서 조세지원 간의 관계

- 직관적으로 투자유치국에서 조세지원을 해준다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이는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음(OECD, 2001).

$$\text{식(1)} \quad (\Delta Y / \Delta K)(1-u) = (r+d)(1-A)$$

- 위 식은 한계자본수익과 한계자본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외국인투자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수립된 것임.
 - 좌변은 세후 한계자본수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Delta Y / \Delta K)$ 는 자본 한 단위 추가 투입에 대한 한계 세전수익이며 u 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임. 그런데 한계 세전수익은 자본 투입에 대해서 체감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 우변은 세후 한계자본비용을 나타냄. r 은 투자자들의 최소요구수익률이며 d 는 자본의 감가상각율이고 $(1-A)$ 는 한계 자본의 구입비용임.
- 투자유치국에서 투자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을 인하하면 식(1)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
 - 식(1)의 균형상황에서 소득관련 세율 u 를 u' 로 낮춘다면 $(\Delta Y / \Delta K)(1-u') > (r+d)(1-A)$ 가 되는데 자본에 대한 한계수익이 체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다시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투입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결과적으로 소득관련 세율이 낮아지면 자본투입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증가
 -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법정세율을 인하하거나 외국인직접투자 수익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조세감면(tax holiday)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음.
- 투자유치국에서 투자세액공제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여하는 공제율을 높이면 식(1)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
 - 식(1)의 균형상황에서 한계자본의 구입비용 $(1-A)$ 에서 A 를 A' 로 높이게 되면 $(\Delta Y / \Delta K)(1-u) > (r+d)(1-A')$ 가 되는데 자본투입에 대한 한계수익은 체감하므로 다시 균형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본투입은 증가해야 함.
 - A 를 높인다는 것은 투자유치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재산세감면 등을 실시하여 투자에 따른 자본의 한계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재산세 감면 등을 실시하면 결과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투자유치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송금세율을 낮추면 식(1)에서 외국인직접 투자는 증가

- 식(1)의 균형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최소요구수익률 r 을 r' 로 낮춘다면 $(\Delta Y / \Delta K)(1-u) > (r+d)(1-A')$ 가 되는데 자본투입에 대한 한계수익은 체감하므로 다시 균형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본투입은 증가해야 함
- 투자유치국에서 r 을 낮춘다는 것은 외국인투자자 인한 수익의 모국 송금에 대한 원천세율 등을 낮추어줌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자들이 자본투입에 부여하는 최소요구수익률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이익송금에 대한 원천세율 인하 등을 실시하면 결과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

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지원 유형

□ 외국인직접투자의 목표에 따라서 조세지원의 대상은 달라질 수 있음. 일반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목표는 국내고용창출, 고도기술도입, 국내 낙후 지역의 개발 등임.

- 목표를 얼마나 구체화하고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조세지원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 목표의 구체성에 따라서 국내투자자와 어느 정도 차별화시킬 것인가가 달라질 수 있음.

□ 조세지원의 시점에 따라서 유형은 달라질 수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지원을 투자시점에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가장 조기에 집행되는 조세지원이라고 할 수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이익에 대한 조세감면등은 투자이익에 대한 조세지원으로서 투자성장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볼 수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이익송금에 대한 조세지원은 투자이익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대해서 분배되는 시점에서 조세지원이 시행되는 것으로서 시기상 가장 늦게 집행되는 것임.

(1) 법정 법인세율 인하

□ 낮은 법인세율은 외국인직접 투자의 한계 수익률을 높여서 자본의 추가적인 투입을 유인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법정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아니면 내국인과 무차별하게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
 -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국내투자와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음.
 -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외국인투자자들에 비하여 불공평한 조세부담을 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납세순응도를 떨어뜨려 과세기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음.

- 반면에 국내투자자와 외국인직접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국내투자 및 기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조세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 없는 세수손실을 증대시킨다는 단점을 가지게 되지만 조세회피를 최소화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법인세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것에 비하여 세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법이 자주 변경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는 단점을 갖는다.

- 일반적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지나친 세수손실로 인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세지원방안으로 부적합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내투자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과세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장점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함(OECD, 2001).
 -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할 것임.

(2) 투자수익에 대한 조세감면

-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법인세 등을 일정기간 동안 감면하는 조세지원 방안임.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으로 알려져 있음. 다만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안임(Single and Kramer, 1996).
- 조세감면으로 인한 유인효과는 감면율, 감면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또한 감면개시일을 생산활동이 개시한 시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최초 이익이 발생한 시점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의 초기에는 주로 비용만 발생하며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감면개시일을 생산개시일이 아닌 이익이 생기는 시점으로 하는 경우가 보다 큰 유인효과를 가질 것임.
 - 그러나 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조세감면을 적용할 경우에는 가급적 이익을 이연시켜 감면개시일을 늦추고 이에 따른 감면금액을 극대화하는 세무계획에 노출될 수 있음.
- 조세감면제도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데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조세회피를 통한 세수손실이 증대되는 것임.
 - 예를 들어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조세회피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조세회피는 기업집단 내에서의 대출이나 로열티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짐. 또한 이전가격을 통한 소득 이전도 가능함.
 - 또 다른 예로서는 감면기간 이후의 소득을 감면기간에 조기 인식함으로써 납부세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예상할 수 있음.

(3) 투자세액공제

-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한 자산구입 등에 대하여 일정비율 만큼을 세액공제하는 것임.
 - 투자수익이 발생하기 전 세액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할 것인지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과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음.
- 세액공제방식은 투자에 따른 지원이므로 투자의 일부금액을 환급해주는 효과를 갖

게 됨.

- 이러한 세액공제방식은 직접적으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조세지원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조세지원대상을 명백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조세지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을 가짐.
- 이에 따라 세액공제방식은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국내외 투자에 대해서 구분 없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4) 투자이익 송금에 대한 조세감면

- 외국인직접투자 이익은 다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배당, 이자, 사용료 등의 형태로 송금되는데 송금과 관련된 원천세 등을 낮추어줌.
 - 이러한 원천세가 높은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세전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위축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송금 원천세를 낮추거나 배당세액공제 등을 시행하면 외국인투자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수익률이 낮아짐으로써 자본의 추가투입을 유인할 수 있게 됨.
- 송금 원천세 인하는 투자모국의 과세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투자모국에서 전세계과세시스템을 채택하고 송금에 대해 추가로 과세한다면 송금 원천세 인하는 실제적인 외국인직접투자유인효과를 갖지 못하며 단지 국가 간 세수이전을 불러오게 됨.
-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한계투자자가 외국인투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송금 원천세 인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지 못하며 외국인직접투자자들에게 우발적인 이득을 안겨주게 됨.

2. 서울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 외국인직접투자와 조세와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함.
 - 거시자료를 이용한 연구로서 미국 혹은 여러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 자료와 서울 간의 관련성을 본 연구들임. 이는 또 다시 시계열자료, 횡단면자료,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음(OECD, 2007).
 - 개별 다국적 기업들의 자료와 같은 미시자료를 이용한 연구로서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해외직접투자와 서울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로서 이들 연구들은 다시 경험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사례 및 설문을 이용한 연구들로 구분됨.

가. 거시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

- 거시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은 한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이용하여 서울과 투자실적 간의 관련성을 보고자 한 것임. 이는 다시 시계열자료, 횡단면자료와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들로 구분됨.

(1)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

-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은 주로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고 이와 미국의 서울 변동 간의 관련성을 보는 것임.
- Hartman(1984)은 최초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그는 1965-1979년 동안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실적과 직접투자의 세후수익률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음.
 - 연구결과는 대체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세후수익률과 외국인직접투자는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서울이 인하(인상)되면 세후수익률이 증가(감소)하고 그 만큼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이외에도 그는 유보소득에 의한 투자와 신규투자로 외국인직접투자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의 모형은 유보소득에 의한 투자를 보다 잘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Boskin and Gale(1987)에서도 Hartman(1984)과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다만 그들은 1956-1984년으로 분석기간을 확장하였으며 세후수익률을 또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것임.

- 그들은 대체로 세후수익률과 외국인직접투자와의 탄력성이 Hartman(1984)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Newlon(1987)은 앞선 Hartman(1984), Boskin and Gale(1987)의 연구에서 사용된 미국경제분석국(BEA)의 자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수정하여 다시 유사한 분석을 실시함.
- 그는 계수추정치들이 시기별로 안정되지 않고 민감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1965-1973 기간 중에는 유보소득이 아닌 신규자금에 의한 직접투자가 오히려 모형에 의해 잘 설명된다는 것을 발견함.
- Slemrod(1990)는 선행연구들을 확장하였는데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모국이 지역과세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와 전세계과세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함.
- 투자모국에서 지역과세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모국의 세율이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기회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투자모국의 세율과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와의 양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증결과는 이를 보여주지 못함.
 - 반면에 투자모국에서 전세계과세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자금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과세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비하여 투자모국의 세율과 양의 관련성이 낮아지거나 음의 관련성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실증결과에서 이를 보여주지 못하였음.
 - 이렇게 실증결과가 예측을 뒷받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는 한계세율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 전반적으로 시계열 연구에서는 투자유치국의 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와의 음의 관계를 보여주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존재함.
- 이러한 유형의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주는 탄력성 추정치의 표준편차가 매우 커서 탄력성의 크기에 대해서는 일관된 추정이 어려움(De Mooji and Everdeen, 2005).
 - 투자유치국으로 대체로 미국의 자료만을 이용하였음. 따라서 미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2)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연구

-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자와 해외직접투자국의 세율 간의 관련성을 보는 것임. 따라서 이들 연구들은 미국의 해외투자(outbound investment)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보았던 시계열 연구에서 미국내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investment)를 보았던 것과 다름.
 -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투자유치국의 세율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Hartman(1981)은 1965-1979 사이의 미국 해외직접투자 총액이 외국과 미국에서의 세후 수익률에 반응한 것임을 보여주었음.
 - 유보이익에 의한 투자와 미국 내 신규 자금이전으로 인한 투자를 구분하였을 때, 유보이익에 의한 투자에 대해서 Hartman은 외국 세후수익률에 대해서는 정의 영향(투자탄력성 1.4)을 갖고 국내 세후수익률에는 음의 영향(투자탄력성 -0.66)을 받는다고 보고함. 그러나 자금이전으로 인한 투자는 세후 수익률과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음.
 -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선 미국내 외국인직접투자를 이용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주로 유보이익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세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Boskin and Gale(1987), Newlon(1987)에서는 Hartman의 결과를 확장하고 최신화 하였는데 Hartman의 확인한 경향이 장기간 지속되고 자료의 변경에 대해서 강건함을 확인하였음.
 - 시계열 증거는 미국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연도는 미국인이 유보이익을 통해서 해외로 투자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줌.

- Frisch and Hartman(1983)은 투자유치국 과세가 1972년 세무신고에서 보고된 자회사 자산의 횡단면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음.
 - 이들은 16개국 15개 산업에서 총량 자료를 수집하였고 투자유치국 세율과 -0.26의 탄력성을 보고함.

- Grubert and Mutti (1991)에서는 국가별 세율이 1982년 미국 소유의 설비자산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음.
 - 이들은 33개국 해외자회사의 설비자산 분포를 보았는데 현지세율과 -0.11의 탄력성을 보였음.

- Hines and Rice(1994)는 73개국 자회사의 설비자산 분포를 고려하였는데 세율이 1% 낮아지면 설비자산이 3%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전반적으로 횡단면 연구에서도 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와의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한계세율을 낮춘다면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3)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

- Swenson(1994)은 일반균형 관점에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유치국과 모국 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음.
 -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련성만을 분석하는 부분균형관점을 채택하고 있었음.
- 일반균형관점에서는 세율의 변동은 기업의 세전수익률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기초함.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세율이 인하(인상)되면 자산의 가격이 인상(인하)되어 투자의 세전수익률이 인하(인상)됨. 따라서 결과적으로 모든 투자의 세후수익률은 같아질 것임(Scholes and Wolfson, 1990).
- Swenson(1994)은 이러한 관점을 채택하여 1986년 미국의 세법개정으로 평균법인세율이 인상되었는데 그 결과로 국내투자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이 변화하였을 것으로 예상함.
 - 즉 미국의 평균법인세율이 인상되면 미국내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투자의 세전수익률이 상승하게 됨. 그렇지만 세전수익률이 상승하더라도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평균법인세율이 올라갔으므로 세후 투자수익률은 변동이 없음.
 - 반면에 외국인직접투자자들 중 모국에서 전세계과세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의 평균법인세율이 올라가더라도 평균세율에 변함이 없음. 따라서 이들 외국인직접투자자들은 미국내 투자의 세전수익률이 올라간 만큼 세후수익률도 올라가게 됨.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세후수익률이 인상되어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실증분석 결과 이러한 예측이 입증됨. 즉 모국에서 전세계과세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는 미국의 평균세율 인상에 따라 증가한 반면 모국에서 지역과세시스템

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는 미국의 평균세율 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패널자료를 이용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국가별로 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 간에 관련성에서 엇갈리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Jun(1994)에서는 1980-1989년간 10개 OECD 국가로부터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연구하였지만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함.
 - Devereux and Freeman(1995)에서는 1985-1989년 7개 OECD 국가의 상호간 외국인직접투자와 자본비용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는데 약한 음의 관계가 일부 발견되었지만 대부분은 유의하지 않음.
 - Buettner(2002)에서는 1991-1998년 EU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조사하였는데 결과는 일관성없이 엇갈리고 있었음.

(4) 선택모형

- 이분 선택 모형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이 아닌 외국인직접투자를 선택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함. 즉 투자유치국 세율에 따라 해당국가가 투자지역으로 선정될 확률을 보고자 하는 것임.
- Bartik(1995)에서는 미국 내 50개 주의 법인세율에 따라 해당지역에 공장이 유치될 확률을 조사하였는데 법인세율은 음의 탄력성을 보임.
- Papke(1991)에서도 유사하게 미국 내 50개 주에서의 산업별 유효세율에 따라서 새로운 공장이 설립될 확률을 조사하였는데 산업별로 탄력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 Hines(1996)에서는 주차원의 법인세율이 1987년 50개 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이 아닌 선정횟수를 이용한 선형확률모형으로 분석함.
 - 세율탄력성은 유의하였지만 외국인직접투자금액으로 추정된 것보다는 작다는 것을 발견함.
- Swenson(2001)은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에 대한 분석이 아닌 외국인직접투자를 6개

세부항목인 신규공장설립, 기존공장확장, 인수합병, 합작기업, 지분증가와 기타 직접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함.

- 미국내 50개 주에 투자한 46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투자금액이 아닌 투자횟수를 이용하였고 주 차원의 법인세율을 유효세율 대용치로 이용함.
- 신규공장설립이나 기존공장확장의 경우에는 대체로 유의한 음의 탄력성을 보여서 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그렇지만 합병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율과 양의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인수합병에서의 지분이 높을수록 총 직접투자에 미치는 세금의 영향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5) 시사점

- 지금까지 거시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세율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대체로 음의 탄력성을 보임. 이는 세율이 높아질수록(낮아질수록) 외국인투자는 감소(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 모형에 따라서 구분하면 투자선택모형에서 탄력성이 가장 낮았으며 횡단면분석에서의 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투자선택모형에서 탄력성이 낮은 것은 세율은 투자금액 의사결정에서보다 투자선택 의사결정에서 영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반면에 횡단면 모형은 평균탄력성이 -7.16으로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연구모형에 따라서 탄력성 추정치는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투자유형에 따른 탄력성 추정치를 비교하면 공장설립이나 확장에 대해서 세율탄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세율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공장설립 등에 세율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세율에 대한 대용치별로 살펴보면 법정세율을 대용치로 이용한 경우에 탄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은 상대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개념적으로는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이 법정세율보다 높은 영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이 갖는 측정오류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음.

- 이론상 투자모국에서 전세계과세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보다 지역과세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세율탄력성이 민감하게 나타나야 함. 그렇지만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이 두 시스템에 따른 세율 탄력성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유보이익에 의한 투자나 신규자금에 의한 투자 유형 구분도 세율 탄력성에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였음.

가. 미시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

- 미시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은 기업차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와 세율 간의 관련성을 보고자 한 연구들임.
- Harris(1993)에서는 1986년 세법 개정 이후 미국에서 자본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 기업들이 해외에 더 많이 투자하였음을 보고하였음.
 - 1986년 세법 개정에서는 미국 내에서 투자세액공제와 투자의 가속상각제도를 폐지하였고 최저한세 범위를 확장하였음.
 -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세율의 인상은 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Cummis and Hubbard(1995)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나리오 하에서 미국 회사의 해외 자회사의 투자방정식을 추정하였는데 하나는 회사가 단순히 세금을 무시한다는 가정을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의사결정에 세금을 포함한다고 가정하였음.
 - 그들은 첫째보다는 둘째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세금이 자회사의 의한 직접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Kemsley(1998)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특정국가에 대해서 수출할 것인지 현지에 공장을 설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세율이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음. 특히 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이러한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였음.

-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가 초과한 기업은 해외 직접투자시 국외원천소득이 증가하면서 납부한 외국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투자보다는 수출에 의존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반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미달하고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투자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 실증분석 결과는 그의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결과는 투자모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과세시스템(전세계과세시스템 혹은 지역과세시스템) 유형에 따라서 직접투자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서 앞선 거시자료 연구에서 과세시스템 유형에 따른 직접투자규모가 대체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대조적인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음.

□ Kemlsey(1998)은 또한 투자유치국에 대한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수출이나 직접투자금액이 투자유치국 세율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음. 그는 앞선 연구의 다국적 기업별 자료들을 투자유치국별로 합산하여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 1982년부터 1989년 사이 총 78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함.
- 실증분석 결과 투자유치국의 세율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었음. 이는 투자유치국의 세율이 높을수록 직접투자보다는 수출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선 거시자료 연구에서 세율 탄력성이 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과임.

□ Butter and Ruf(2004)에서는 독일 다국적 기업들이 EU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분석함. 그들은 법정세율과 과거평균세율을 이용하였는데 다른 연구들에 비하여 탄력성이 낮게 추정되었음.

□ Stowhase(2003)에서는 1991-1998년 동안 독일의 다국적 기업들이 8개 유럽 국가 중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선형확률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

- 그는 투자활동을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와 재무나 연구개발과 같은 서비스 기능에 대한 투자로 구분하였음.
- 그리고 세율을 법정세율과 평균세율로 구분하였음.
- 설비투자에 있어서는 평균세율은 영향을 미쳤지만 법정세율은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서비스기능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오히려 법정세율은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평균세율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동이 자유로운 서비스 기능에 대한 투자는 입지특유의 이점을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세계 관점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택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다. 설문과 사례연구

- 앞선 거시자료나 미시적인 기업차원의 경험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투자유치국의 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와의 음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와의 음의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는 분명히 조세가 외국인직접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조세 외에도 많다는 점에서 볼 때 과연 조세유인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님.
-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비조세요인까지 포함하여 실제로 조세유인이 비조세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얼마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데 효과적인가를 보기 위한 설문과 사례연구들이 있음.

(1) Scholes·Wolfson 관점

- Scholes and Wolfson(1992)에서는 효과적인 세무계획은 단순한 조세의 최소화가 아닌 세후 수익률의 극대화임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에서 조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조세비용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효과적 세무계획의 원칙 하에서 이들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서 조세요인과 비조세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 이들은 근본적인 완전경쟁시장 가정 하에서는 모든 투자의 세후수익률은 동일한 것이며 따라서 세금에 대한 혜택은 세전 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를 암묵세라고 부름.
 - 이러한 근본적인 관점은 외국인직접투자에도 적용할 수 있음.
- 이들의 관점을 그대로 적용하다면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에 투자하든지 궁

극적인 세후수익률을 동일할 것이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이 큰 국가일 수록 세전 수익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임. 이러한 세전 수익률 하락은 형식적으로는 세금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보아야 하는 암묵세라고 할 수 있음.

- 국가별 투자에 있어서 암묵세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간접 시설과 같은 비조세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 따라서 암묵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조세지원만을 감안하여 투자지역을 선택하게 된다면 투자의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하지 못하게 될 것임.

□ 또한 거주지국에서 전세계과세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유치국에 납부한 조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투자유치국에서 발생한 암묵세는 외관상 조세가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조세요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말할 수 있음.

□ 이러한 Scholes and Wolfson의 관점을 요약한다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조세의 영향은 이차적인 것이며 만일 비조세요인들로 인한 수익률 하락이 조세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한다면 조세유인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을 의미함.

- 이는 조세지원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조세비용이 클 수 있다는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 또한 투자자들이 단순히 조세만을 감안하여 투자지역을 선정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비조세비용을 통합적으로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것임을 의미하는 것임.
- 이러한 관점은 그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조세의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2) Wilson(1993)의 현장연구

□ Wilson(1993)은 앞선 Scholes and Wolfson(1992)의 관점을 채택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지역을 선정할 때 조세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어떤 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실제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연구는 거시자료나 기업차원의 미시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에서 알아낼 수 없는 경영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음.
 - 그는 9개의 미국 다국적 기업의 CFO들과 생산, 자금, 세무 분야의 상급관리자들과 면담을 통하여 이들이 지난 25년간 내려왔던 68개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조세가 미친 영향을 찾아내고자 함.
- 그는 다국적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와 비조세비용을 어떻게 통합하여 입지와 관련된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자 함. 그가 채택한 관점은 기업의 입지의사결정에서는 입지와 관련된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Scholes and Wolfson(1992)의 관점과 일치함.
- 그는 비조세비용으로서 마찰(frictions)과 규제(restrictions)를 고려하였음. 마찰이란 기업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조세최소화의 장애가 되는 것을 의미함. 규제란 정부의 규정들을 의미함. 이런 마찰과 규제는 서로 연관성이 높음. 이러한 마찰과 규제는 입지선정에서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비조세비용임.
- 결합마찰(coupling frictions)은 특정한 기능을 특정지역에 위치시켰을 때 다른 기능과의 통합 필요성으로 인한 마찰임. 여기에는 물류비용, 문화적 차이, 소비자 접근성 등이 포함됨. 예를 들어 특정부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조세유인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에 공장을 설립하였지만 운송비용 등으로 인하여 전체 원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결합마찰로 인한 비조세비용이 세금절감액을 능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가마찰(country frictions)은 특정 국가에 생산설비를 위치시켰을 때 차선으로 고려한 국가에 대비하여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의미함. 여기에는 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시설, 정치적 안정성이나 노동력 품질 등이 있음. 예를 들어 조세유인에 따라서 특정 국가에 공장을 설립하였지만 부실한 도로망이나 낮은 품질의 노동력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면 국가마찰로 인한 비조세비용이 세금절감액보다 컸음을 의미하는 것임.
 - 조정마찰(coordination frictions)은 회사의 전체적인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 전체로 영업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비용을 의미함. 여기에는 부문경영자의 업적평가시스템, 해외자회사 간의 이전가격 시스템 등이 포함됨. 예를 들어 조세유인에 따라 생산설비를 해외에 위치시켰을 때 이로 인하여 경영자들에 대한 동기부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다면 이는 조정마찰로 인한 비조세비용을 부담한 것임.

- Wilson은 다국적 기업의 CFO들과의 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
 - 관리나 유통센터와 같은 기능들은 결합마찰로 인한 비조세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서들의 해외 입지선정에는 세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제조설비의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결합마찰이나 국가마찰로 인한 비조세비용의 중요성이 매우 큼.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세율이 낮다고 해서 입지로 선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이전 가격 설정은 세금목적만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업적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따라서 반드시 세금목적의 이전가격이 설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전가격 설정이 회사의 목표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입지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세금비용보다는 비조세비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Wilson의 연구는 비록 조세유인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중요도는 다른 비조세비용에 비하여 낮을 수도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이후 연구들에서 조세유인의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침.

(3) Rolfe and White(1992)의 연구

- Rolfe and White(1992)는 실험을 통해서 조세유인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그들은 39명의 기업 투자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개의 세금요인과 3개 비세금요인 수준을 달리한 설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해당 국가의 투자지역으로서의 매력도를 11점 척도를 표시하도록 함.
 - 2개의 세금요인은 법인세감면과 관세 면제이며 3개의 비세금요인은 임금수준, 사회간접시설, 송금의 제한 유무임.
 - 각 요인에 대해서 임의로 긍정적 수준과 부정적 수준으로 구분한 16개의 가상의 사례를 피험자들에게 제시하였음.

- 실험 결과, 법인세감면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는 결과를 얻었음.

- 법인세 감면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했지만 그 설명력은 크지 않았음. 이는 비록 조세유인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법인세감면이 투자지역매력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비조세요인들이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매우 크게 나타났지만 다른 비조세요인들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관세가 높은 상황에서는 법인세감면은 투자지역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록 한정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의 사례를 이용한 실험연구라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조세유인과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전달해주고 있음.
- 조세유인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며 다양한 비조세요인들과 결합되었을 때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

(4) Porcano and Price(1996)의 연구

- Porcano and Price(1996)는 150개의 미국기업, 100개의 영국기업, 34개 프랑스기업, 52개 독일기업과 85개 일본기업들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에서 고려하는 21개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음.
- 21개 요인들은 크게 나누어 조세요인과 비조세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조세요인으로는 내국세율(national tax rate), 지방세율(local tax rate), 내국세법(national tax rule), 지방세법 (local tax rule), 국세감면(national tax holiday), 지방세감면(local tax holiday), 관세(tariff) 등 총 7개 요인으로 구분함.
 - 비조세요인으로는 환율(exchange rate), 간접시설(physical infrastructure), 배당정책(dividend policy), 중앙정부의 유인(national government incentive), 지방정부 유인(local government incentive), 임금(wage rate), 제품에 대한 수요(product demand), 환경법(environmental law), 노동공급(labor supply), 노동품질(labor quality), 경제환경(economic condition), 무역 개방(avoid trade restriction), 외국인투자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foreign investment), 정치적 분위기(political climate) 등 총 14개 요인으로 구분함.
- 14개 비조세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응답자들이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아

래와 같음.

- 제품에 대한 수요 요인이 4.21점으로 평가되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환율 요인이 3.09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인은 3.17점과 3.10점으로 21개 요인 중 17번째와 20번째를 차지하여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는 정부보조금과 같은 비조세 유인이 외국인직접투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7개 조세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7개 조세요인들의 중요성 평가는 3.14점에서부터 3.46점까지임.
- 내국세율이 3.46점으로 가장 중요한 조세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내국세 감면이 3.14점으로 가장 중요성이 낮은 조세요인으로 평가되었음.
- 7개 조세요인들의 중요도 순위는 7, 8, 9, 10, 15, 17, 19위로 나타남.
- 이러한 중요도 순위는 상대적으로 비조세요인들에 비하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조세요인의 중요도를 총체적으로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

- 조세요인들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전반적인 중요도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음. 이는 조세요인들이 해외직접투자와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선행연구들과 일관된 응답으로 보임.
- 그러나 응답자들의 55%는 대체로 조세요인이 이차적인(minor) 영향만을 갖는다고 응답함으로써 조세요인의 중요도는 비조세요인에 비하여 대체로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5) 최기호(2007)의 연구

□ 최기호(2007)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52개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가 투자유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현재 세제의 설계와 운용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임.

□ 일차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에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조세요인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가임.

- 이를 위해서 가장 직접적인 설문으로서 우리나라에 조세부담이 낮아서 투자하였다(Q1)라는 설문을 제시하였음.
-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에 대한 투자민감도를 측정하였는데 조세부담이 높아지는(혹은 낮아지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여 투자규모를 축소(혹은 증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Q2, Q3)을 각각 제시하였음.

□ 다음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느끼는 조세부담에 대한 인지도를 설문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함.

- 이러한 취지에서 설문 Q4를 제시하였으며 조세부담이 단순히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명시적 세금이 아닌 세무관련 인건비나 외부전문가수수료 비용 등을 포함한 개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설문 Q4를 보완하기 위한 설문 Q5를 제시하였음.

□ 외국인투자를 위한 세제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설문문항들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세제운용만족도를 명시적인 세법규정에 대한 이해가능성 (Q6),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편리성 (Q7), 잘 정비된 고충처리절차 (Q8), 그리고 조세전문가에 대한 접근가능성 (Q9)와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세제운용에 대한 만족도 수준(Q10)으로 구분하여 설문 문항을 설계하고 제시함.

□ 이러한 총 10개의 설문문항은 아래와 같으며 각 문항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요구함.

Q1. 모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부담이 낮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하였다.

Q2. 모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부담이 높아진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규모를 감축시킬 수도 있다.

Q3. 모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부담이 낮아진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규모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Q4. 모회사 입장에서 판단할 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자회사에 대한 조세부담은 다른 나라에 소재한 자회사에 비해 작은 편이다.

Q5. 모회사 입장에서 판단할 때 우리나라에서 세무계획/세무보고를 위한 자체적 인건비 지출과 세무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 수수료 비용 등 세무관련비용지출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Q 6. 외국인투자를 위한 세법규정들은 명백하고 이해하기 쉽다.

Q 7. 외국인투자를 위한 세법상 제반절차는 간편하며 이용하기 편리하다.

Q 8.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한 제반 고충처리절차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Q 9. 우리나라에서 세무와 관련한 조세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문을 받기가 매우 편리하다.

Q10.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관련세제의 운용에 대하여 만족한다.

□ 10개 문항별로 응답값의 평균과 중위값은 아래와 같음.

설문문항	평균	중위값
Q1	2.68	2.00
Q2	2.86	2.50
Q3	3.26	3.00
$Y1=(Q1+Q2+Q3)/3$	2.93	2.83
Q4	2.32	3.00
Q5	2.84	2.00
$Y2=(Q4+Q5)/2$	2.58	2.50
Q6	2.45	2.00
Q7	2.18	2.00
Q8	2.27	2.00
Q9	2.98	3.00
Q10	2.51	2.00
$Y3=(Q6+Q7+Q8+Q9+Q10)/5$	2.48	2.40

□ 위의 설문문항별 응답값을 보면 대체로 모든 설문에서 응답값들이 중간값인 3점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 세법의 운용측면에 대한 설문문항들의 응답값들이 대체로 낮음. 가장 낮은 것은 외국인투자를 위한 세법상 제반절차는 간편하며 이용하기 편리하다라는 설문 문항(Q7)에 대한 응답값(2.18)이며 우리나라 세법의 절차나 고충처리절차(Q8)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은 수준(2.27)이었음.

○ 유일하게 국내조세부담이 감소하면 국내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설문(Q3)에 대한 응답값만이 3점을 초과하였음.

□ 표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라 법인세감면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감면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비감면기업)으로 구분하여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

을 살펴보았음.

- 감면기업들은 대부분 비감면기업에 비해서 응답값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10개 문항 중에서 9개 문항에서 모두 감면기업의 응답값이 컸음.
- 또한 각 문항분류별로 세부문항별 평균응답값($Y_1 \sim Y_3$)에서 감면기업과 비감면기업의 차이를 보면 모두 감면기업이 상대적으로 크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
- 감면기업은 비감면기업에 비해서 조세부담이 낮아서 국내에 투자하였다(Q1), 국내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Q4), 세무관련비용지출이 낮다(Q5)라는 설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응답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조세지원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것임. 즉,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서 감면기업의 조세부담율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감면기업은 비감면기업에 비해서 우리나라 세법운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Q10)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조세지원을 통해서 조세부담율이 낮아졌고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이 전반적인 세제운용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됨.
- 감면기업이 비감면기업보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응답값을 보였으나 조세지원이 지금보다 낮아지면 국내투자규모를 증가시킬 것이다(Q3)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높은 값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조세요인이 외국인직접투자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을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것임.

□ 최기호(2007)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우선 외국인투자지원세제를 통해서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국내투자에 있어서 조세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낮다고 느끼고 있으며 세제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단변량 분석이나 다양한 통제변수를 고려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음. 따라서 이러한 결과만을 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지원세제는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집단과의 상대적 비교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지원세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절대적인 응답값의 수준을 보면 상대적 비교와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즉, 조세감면기업들의 대체적인 응답값은 보통 수준은 3점이거나 오히려 3점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세제운용 면에서의 만족도는 대체로 3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서 비록 상대적으로 비감면기업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투자지원세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됨.

- 조세감면기업과 비감면기업을 포함한 전체표본을 통한 분석에서도 1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있어서 응답값들은 보통수준인 3점에 못 미치고 있었음. 특히 세제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었는데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지원세제의 한 부분일 뿐이며 조세감면 여부와 관련없이 전체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운용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에 바람직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투자지원세제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로 해석됨.

□ 최기호(2007)의 설문분석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지원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차별화된 반응이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조세환경에 대한 평가는 평균적으로 부정적이었던 것임.

-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세감면기업의 상대적인 평가결과만을 보면 외국인투자지원세제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외국인투자지원세제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보다는 목표설정이나 지원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함. 즉, 감면기업과 비감면기업과 상대적 차별성에만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조세감면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감면기업에 대해서만 조세지원을 집중하는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지원세제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6) 시사점

□ 설문이나 사례를 이용한 연구들에서는 거시자료나 미시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에 의하여 실제로 구체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 Scholes and Wolfson(1992)은 조세요인과 비조세요인의 상충관계를 제시하였으며 해외 직접투자에서 비조세요인들을 암묵세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지 못하면 비효율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주장함. 또한 조세요인은 비조세요인의 불리함을 상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조세지원이 불리한 비조세요인을 암시하는 신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함.
- Wilson(1993)은 다국적 기업의 재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에서 조세요인보다는 비조세요인들이 해외직접투자의사결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다만 지리적 여건과 같은 비조세요인들이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조세요인은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함.

- Rolfe and White(1992), Porcano and Price(1996)에서는 각각 실험과 설문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 중 법인세 감면과 같은 조세지원 요인의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 최기호(2007)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세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하여 조세요인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대체로 응답의 절대값이 크지 못하였으며 세제에 만족도도 낮은 수준이었음.

□ 이와 같은 설문이나 사례를 이용한 연구들의 대체적인 결과는 법인세 감면과 같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우선순위는 다른 비조세비요인들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것임.

라. 선행연구의 소결

- 본 절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와 조세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선행연구들을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음.
- 거시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세율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하고자 하였음.
 - 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와의 음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세율이 낮을수록 직접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 투자유치국의 세율뿐만 아니라 모국의 세제도 상호작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를 들어 외국납부세액공제 체도를 갖고 있는 모국에서의 저세율 국가에 대한 투자는 세율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음.
 - 그러나 세율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조세지원의 효과 혹은 여러 비조세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기업차원의 미시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에서는 거시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있음.
-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이나 사례연구들에서는 앞선 연구들과는 달리 조세요인과 비조세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짐.

- 이들 연구들에서는 법인세감면과 같은 조세지원은 직접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 우선순위는 생각보다 낮다는 것임.

□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조세지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해서 이용하는 다양한 조세지원은 비조세요인들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함. 따라서 조세지원을 지나치게 확대하기에 앞서 비조세요인들에 의한 매력을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조세지원에 있어서도 세율인하나 법인세감면 등과 같은 여러 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함.

III.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률

- 이번 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률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률을 국내기업의 조세부담률과 비교하고자 함. 이를 통해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내국기업과 비교하여 공격적인 세무계획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투자국별로 조세부담률을 비교하고자 함. 이러한 비교는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투자 모국의 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줄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 이후 경과기간에 따른 조세부담률을 보고자 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최초 투자일로부터 10년 이내 주로 수행되므로 등록 이후 경과기간에 따른 조세부담률을 비교함으로써 조세지원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을 것임.

1. 조세부담률의 측정과 표본 선정

가. 조세부담률의 측정

- 조세부담률은 여러 가지 측정치로 나타낼 수 있지만 유효세율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임.
 - 유효세율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text{유효세율} = \frac{\text{법인세}}{\text{세전 당기순이익}}$$

- 분모인 세전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임.
- 분자인 법인세는 몇 가지 대응치로 나타낼 수 있음
 - 실제 납부한 법인세로 표시할 수 있지만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납세자의 법인세신고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료를 관찰할 수 없음.
 -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 증감을 감안하는 것이 있음. 이는 과세소득과 회계상 당기순이익의 일시적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영구적 차이뿐만 아니라 일시적 차이를 이용한 세무계획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의 대응치로 보고자 함. 그 이유는 자료입수

가 가장 용이하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또한 이익조정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연 법인세순자산의 증감을 반영하는 방법에 비하여 신뢰성이 높은 측정치라고 판단함.

-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기와 장기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조세부담률을 측정해보고자 함.

$$\text{단기 유효세율} = \frac{\text{손익계산서상의 연간 법인세비용}}{\text{손익계산서상의 연간 세전 당기순이익}}$$

$$\text{장기 유효세율} = \frac{\text{5년(10년)간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 누적합계}}{\text{5년(10년)간 손익계산서상의 세전 당기순이익 누적합계}}$$

- 단기 유효세율과 달리 장기 유효세율은 일시적인 유효세율 변동이 아닌 장기적인 변동을 포착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세무계획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됨.
 - 위 식과 같이 측정된 유효세율은 세전 당기순이익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값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음.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유효세율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1보다 크면 1의 값을 갖는 것으로 조정함.

나. 외국인투자기업 표본과 대응표본

-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공시한 기업들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본 분석을 위한 표본으로 선정함.
 - 회사명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TS2000 상장회사협의회 재무제표 데이터베이스에서 2011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기업.
 - 2011년 현재 TS2000 상장회사협의회 재무제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비교대상인 국내기업으로 선정하였음.
 - 이에 따라 2011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 1,432개와 국내기업 16,908개를 분석 대상 표본으로 선정함.

<표 1> 표본기업의 업종별 구성-2011년 기준

산업구분	외국인투자기업		내국기업	
	표본규모	%	표본규모	%
농업	3	0.2	86	0.5
광업	1	0.1	62	0.4
식품섬유	74	5.2	1,486	8.8
화학금속기계	592	41.3	5,660	33.5
자동차	130	9.1	1,211	7.2
전기가스	13	0.9	131	0.8
환경	6	0.4	207	1.2
건설	19	1.3	1,601	9.5
도소매	295	20.6	2,056	12.2
육상운송	2	0.1	183	1.1
항공	66	4.6	497	2.9
숙박	26	1.8	215	1.3
출판	41	2.9	422	2.5
정보통신	31	2.2	372	2.2
부동산임대	55	3.8	1,482	8.8
기타	78	5.4	1,237	7.3
합계	1,432	100.0	16,908	100.0

□ <표 1>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업종별 구성을 보여줌.

-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제조업 비중은 55.6%이지만 국내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5%임.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제조업 비중은 국내기업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중에서 식품섬유업종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표본의 비중은 5.2%인데 비하여 국내기업 비중은 8.8%임. 또한 화학·금속·기계 업종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표본에서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41.3%인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33.5%에 그치고 있음. 외국인투자기업 표본에서 자동차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9.1%이지만 국내기업은 7.2%에 불과함.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조업 중에서 식품섬유업종의 비중이 약간 낮지만 대신 화학·금속·기계와 자동차에서 업종 비중이 높음. 이러한 현상은 화학·금속·기계 업종으로 구분되는 삼성전자, LG전자나 자동차업종으로 구분되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국내 대기업의 부품공급을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진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3%에 그치고 있지만 국내기업은 9.5%를 차지하고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외국인투자기업이 건설업 비중이 적은 것은 주로 국내발주에 의존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외국인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도소매업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서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6%에 이

르고 있지만 국내기업은 12.2%에 그치고 있음. 이렇게 매우 큰 비중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소매업과 같은 유통업이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으로서 외국인기업이 진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부동산임대업도 외국인투자기업(3.8%)보다 국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8.8%)이 훨씬 높음. 이는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다. 표본의 유형 구분

□ 본 보고서에서 분석 대상으로 이용하는 표본은 다음과 같이 모두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2011년 표본
 -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시한 외국인투자기업명단 기업에서 2011년 상장회사협의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무제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시에 2011년 상장회사협의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국내기업 전부로 구성된 표본.
 - 외국인투자기업 1,432개와 국내기업 16,908개로 구성됨.
- 2009~2013년 5년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표본
 - 2011년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을 기준으로 2009~2013년 5년간 계속 TS2000 상장회사협의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으로 구성된 표본의 기업×연도 표본. 이는 동일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독립된 표본으로 간주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기업 5,214개, 국내기업 51,096개로 구성됨.
- 2004~2013년 10년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표본
 - 2011년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을 기준으로 2004~2013년 10년간 계속 TS2000 상장회사협의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으로 구성된 표본의 기업×연도 표본. 이는 동일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독립된 표본으로 간주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기업 6,763개, 국내기업 59,968개로 구성됨.
- 2009~2013년 계속기업의 5년 평균 표본
 - 2011년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을 기준으로 2004~2013년 5년간 계속 TS2000 상장회사협의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으로 구성된 표본에서 5년간 평균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는 표본. 5년간의 장기유효세율을 구하는데 이용되는 표본임.
 - 외국인투자기업 1,047개, 국내기업 10,238개로 구성됨.

- 2004~2013년 계속기업의 10년 평균 표본
 - 2011년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을 기준으로 2004~2013년 10년간 계속 TS2000 상장 회사협의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으로 구성된 표본에서 10년간 평균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는 표본. 10년간의 장기유효세율을 구하는데 이 용되는 표본임.
 - 외국인투자기업 684개, 국내기업 6,045개로 구성됨.

라. 기술통계

□ 아래의 <표 2>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재무자료의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음.

<표 2>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표본의 기술통계-2011년 표본

(단위: 천원)

패널A: 기술통계

변수	평균	중위수	백분위수		
			25%	50%	75%
외국인투자기업(n=1,432)					
총자산	140,707,154	30,878,345	17,593,388	30,878,345	79,381,411
영업이익	11,224,080	2,090,892	478,566	2,090,892	7,101,967
세전이익	11,410,459	2,058,163	310,186	2,058,163	7,037,343
법인세비용	2,648,379	363,224	0	363,224	1,386,218
당기순이익	8,767,151	1,699,301	249,179	1,699,301	5,614,591
총자산영업이익률	0.079	0.064	0.020	0.064	0.135
총자산세전이익률	0.079	0.063	0.012	0.063	0.136
총자산대 법인세비용	0.020	0.011	0.000	0.011	0.030
총자산당기순이익률	0.059	0.051	0.010	0.051	0.108
부채비율	0.523	0.536	0.344	0.536	0.707
국내기업(n=16,908)					
총자산	138,717,210	21,888,344	13,556,302	21,888,344	48,579,721
영업이익	6,655,942	993,588	173,915	993,588	2,776,978
세전이익	6,108,687	699,660	40,641	699,660	2,573,501
법인세비용	1,523,231	90,582	0	90,582	486,316
당기순이익	4,783,842	580,581	24,844	580,581	2,079,927
총자산영업이익률	0.002	0.043	0.008	0.043	0.084
총자산세전이익률	-0.005	0.031	0.002	0.031	0.081
총자산대 법인세비용	0.011	0.004	0.000	0.004	0.015
총자산당기순이익률	-0.016	0.025	0.001	0.025	0.067
부채비율	0.587	0.627	0.398	0.627	0.791

패널B: 총자산규모별 구성

총자산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내국기업	
	표본규모	%	표본규모	%
100억미만	43	3.0	1,464	8.7
100-199억	408	28.5	6,265	37.1
200-299억	250	17.5	2,753	16.3
300-399억	140	9.8	1,420	8.4
400-499억	80	5.6	871	5.2
500-599억	58	4.1	608	3.6
600-699억	55	3.8	447	2.6
700-799억	44	3.1	362	2.1
800-899억	35	2.4	305	1.8
900-999억	29	2.0	250	1.5
1,000-9,999억	258	18.0	1,918	11.3
1조 이상	32	2.2	245	1.4
합계	1,432	100.0	16,908	100.0

패널C: 세전순이익 규모별 구성

세전순이익 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내국기업	
	표본규모	%	표본규모	%
<0	167	11.7	1,877	11.1
0-9억	368	25.7	7,669	45.4
10-99억	635	44.3	6,122	36.2
100-999억	230	16.1	1,098	6.5
1,000억 이상	32	2.2	142	0.8
합계	1,432	100.0	16,908	100.0

- <표 2> 패널A에서 총자산규모를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총자산규모는 1,407억원이며 국내기업은 1,387억원 정도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그 외 다른 지표들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총자산규모가 국내기업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평균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소수의 대기업들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 중 2011년 기준으로 총자산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롯데호텔로서 12조원 정도이며 다음으로는 한국지엠으로 10조2천억원 정도이지만 국내기업으로서 총자산규모가 가장 큰 삼성전자는 117조원이며 다음으로 한국전력은 94조원에 이르고 있음.
- 우선 총자산규모의 중위값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총자산규모의 중간값은 309억원이지만 국내기업은 219억원으로서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총자산규모의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백분위수를 보더라도 25%, 75%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176억원, 794억원인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135억원과 486억원에 머무르고 있음.
- 또한 <표 2> 패널B에서 총자산규모별로 범주를 구분한 후 구성비를 보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총자산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총자산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표본 1,432개 중에서 43개로서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전체 16,908개 중에서 1,464개로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총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표본에서 20%가 초과하는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14%에도 못 미치고 있음. 총자산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업 비중도 외국인투자기업에서는 2.2%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음.
- <표 2> 패널A에서 수익규모를 보면 대체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국내기업 중 2011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올린 기업은 삼성전자로서 9.6조원이며 다음은 현대자동차가 5.6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림. 이에 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서는 삼성코닝 2.7조원이며 삼성토탈이 5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선 영업이익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평균 112억원이고 중간값은 21억원임. 이에 비하여 국내기업은 평균 66억원이고 중위수도 9억원에 그치고 있어서 국내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략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익만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백분위수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25%, 75%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이익은 5억원과 70억원이지만 국내기업은 2억원과 28억원 정도로서 역시 외국인투자기업 수익 규모의 40%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도 대체로 영업이익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표 2> 패널C에서는 세전순이익 규모에 따라 일정한 범주로 구분한 후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이를 보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순이익 규모가 국내기업에 비하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세전 순이익으로 0보다 작은 손실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표본의 11.7%이고 국내기업은 11.1%로서 서로 유사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 순이익이 10억원 미만인 범주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은 25.7%인데 비하여 국내기

업은 무려 45.4%에 달하고 있음. 이는 국내기업의 거의 절반이 0~10억원 사이의 소규모 이익을 본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하여 이익규모가 작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반면에 외국인투자기업은 10~100억원 범주에 속한 비중이 44.3%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범주에서 국내기업은 36.2%에 그치고 있음.
- 또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본 기업의 비중은 외국인투자기업이 18.3%인데 비하여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7.3%에 불과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표 2> 패널A에서 법인세비용을 보면 외국인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법인세비용의 평균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26억원이지만 국내기업은 15억원에 불과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60%수준에 그치고 있음. 중위수를 보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은 3.6억원이지만 국내기업은 0.9억원에 그치고 있음.
- 법인세비용의 백분위수를 보면 25%, 75%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0, 14억원이지만 국내기업은 0과 4.8억원에 불과함.

□ <표 2> 패널A에서 수익성 비율을 보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익성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총자산 영업이익률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평균 7.9%이고 중위수도 6.4%인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평균 0.2%이고 중위수는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총자산 영업이익률의 백분위수를 보면 25%, 75%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2%, 13.5%인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0.8%, 8.4%에 그치고 있음.
-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세전순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을 보더라도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표 2> 패널A에서 총자산 대비 법인세비용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규모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큰 것을 알 수 있음.

□ <표 2> 패널A에서 부채비율을 보면 평균값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52%인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59%로서 국내기업이 약간 높으며 중위수도 외국인투자기업은 53%

이지만 국내기업은 63%에 달해서 국내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경향은 백분위수를 비교하더라도 동일한데 25, 75%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34%, 70%인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40%, 80%를 보여주고 있음.

- 전반적으로 기술통계를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으며 부채비율이 낮아서 보다 재무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대체로 이미 해외에서 오랜 기업 역사를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들로서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제품을 국내에 도입하여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임에 비하여 국내기업들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음.

2.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조세부담률 비교

가. 유효세율 비교

- 아래의 <표 3>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조세부담률을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비교하고 있음. 이를 보면 대체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5가지 표본 유형별로 볼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17.5%~23.7%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비하여 국내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14.8%~21.6%를 보이고 있음.

〈표 3〉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조세부담률

변수	표본 규모	평균	중위수	백분위수		
				25%	50%	75%
패널A: 2011년 표본						
외국인투자기업	1,431	0.175	0.189	0.000	0.189	0.247
국내기업	16,890	0.148	0.126	0.000	0.126	0.229
차이		0.027***	0.063***	0.000	0.063	0.018
패널B: 2009~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						
외국인투자기업	5,214	0.183	0.197	0.024	0.197	0.243
국내기업	51,096	0.155	0.145	0.000	0.145	0.229
차이		0.028***	0.053***	0.024	0.053	0.014
패널C: 2004~2013년 계속기업 기업×연도 표본						
외국인투자기업	6763	0.203	0.216	0.072	0.216	0.275
국내기업	59968	0.182	0.186	0.002	0.186	0.262
차이		0.020***	0.030***	0.069	0.030	0.013
패널D: 2009~2013년 계속기업의 5년 평균 표본						
외국인투자기업	1047	0.196	0.206	0.084	0.206	0.247
국내기업	10238	0.170	0.166	0.005	0.166	0.233
차이		0.026***	0.041***	0.079	0.041	0.014
패널E: 2004~2013년 계속기업의 10년 평균 표본						
외국인투자기업	684	0.237	0.228	0.163	0.228	0.274
국내기업	6045	0.216	0.210	0.098	0.210	0.268
차이		0.021***	0.018***	0.064	0.018	0.007

평균에 대해서 t검정이고 중위수에 대해서는 맨 휘트니 검정을 실시함.

* 유의수준 1% 이내 ** 유의수준 5% 이내 *** 유의수준 1% 이내

□ <표 3> 패널A에서의 2011년 표본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은 평균 17.5%인데 비하여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은 평균 14.8%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하여 2.7%가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임을 알 수 있음(유의 수준 1% 이내).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법정세율은 24.2%(법인세율 22% + 지방소득세 2.2%)인데 이에 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유효세율 17.5%와 국내기업 평균 유효세율 14.8%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음. 그러나 유효세율은 여러 가지 세액공제나 감면 등이 반영되고 손실 기업의 경우에는 유효세율이 0%가

되므로 법정세율보다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평균 유효세율이 법정세율에 비하여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됨.

- 중위수를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18.9%인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12.6%로서 6.3%의 차이를 보여서 더욱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 유의함.
- 백분위수에서도 25%, 75%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은 각각 0%, 24.7%인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0%, 22.9%로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 3> 패널B에서의 2009~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표본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18.3%인데 비하여 국내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15.5%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8%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유의수준 1% 이내). 5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에서 평균 유효세율은 앞선 2011년 표본에 비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모두 1% 정도 상승함. 이는 앞선 2011년 표본에는 5년 미만 존속기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5년간 계속 존속한 기업만이 표본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임. 즉 존속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아지고 유효세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중위수를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19.7%인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14.5%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5.3%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 유의함.
- 백분위수에서도 25%, 75%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2.4%, 24.3%인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0%, 22.9%로서 확실하게 외국인투자기업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표 3> 패널C에서의 2004~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표본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20.3%인데 비하여 국내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18.2%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 정도 높음.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 유의함. 10년간 계속 존속한 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앞선 다른 표본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유효세율의 중위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1.6%이고 국내기업이 18.6%로서 3% 정도 외국인투자기업이 높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유효세율의 백분위수를 보면 25%, 75%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7.2%, 27.5%로서 국내기업의 0.2%, 26.2%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 3> 패널D에서의 2009~2013년 계속기업의 5개년 평균 표본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19.63%인데 비하여 국내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17%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6% 정도 높음.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 유의함.
 - 유효세율의 중위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6%이고 국내기업이 16.6%로서 4% 정도 외국인투자기업이 높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유효세율의 백분위수를 보면 25%, 75%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8.4%, 24.7%로서 국내기업의 0.5%, 23.3%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 3> 패널E에서의 2004~2013년 계속기업의 10개년 평균 표본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23.73%인데 비하여 국내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21.6%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1% 정도 높음.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 유의함. 10년 장기유효세율은 법정세율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세전이익과 법인세비용이 10년간 누적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유효세율이 0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유효세율의 중위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2.8%이고 국내기업이 21%로서 1.8% 정도 외국인투자기업이 높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유효세율의 백분위수를 보면 25%, 75%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16.3%, 27.47%로서 국내기업의 9.8%, 26.8%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 구간별 비중

유효세율	2011표본				2009~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				2004~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				2009~2013년 계속기업의 5년 평균 표본				2004~2013년 계속기업의 10년 평균 표본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	
	표본 규모	%	표본 규모	%	표본 규모	%	표본 규모	%	표본 규모	%	표본 규모	%	표본 규모	%	표본 규모	%	표본 규모	%	표본 규모	%
0%	381	26.6	5,487	32.5	1,168	22.4	15,164	29.7	1,320	19.5	14,749	24.6	180	17.2	2,445	23.9	60	8.8	1,013	16.8
0~10%	142	9.9	2,157	12.8	523	10.0	6,348	12.4	535	7.9	5,971	10.0	103	9.8	1,300	12.7	45	6.6	505	8.4
10~20%	228	15.9	3,345	19.8	958	18.4	11,157	21.8	1,182	17.5	11,574	19.3	208	19.9	2,526	24.7	143	20.9	1,263	20.9
20~30%	516	36.1	4,151	24.6	1,977	37.9	12,902	25.3	2,634	38.9	18,825	31.4	421	40.2	2,853	27.9	316	46.2	2,218	36.7
30~40%	83	5.8	785	4.6	268	5.1	2,417	4.7	646	9.6	4,649	7.8	66	6.3	500	4.9	61	8.9	531	8.8
40~50%	27	1.9	340	2.0	106	2.0	1,065	2.1	157	2.3	1,577	2.6	26	2.5	176	1.7	22	3.2	151	2.5
50~60%	13	0.9	188	1.1	59	1.1	663	1.3	92	1.4	878	1.5	10	1.0	110	1.1	8	1.2	91	1.5
60~70%	9	0.6	101	0.6	30	0.6	333	0.7	47	0.7	487	0.8	9	0.9	61	0.6	9	1.3	62	1.0
70~80%	9	0.6	77	0.5	32	0.6	284	0.6	43	0.6	352	0.6	5	0.5	42	0.4	5	0.7	38	0.6
80~90%	3	0.2	55	0.3	15	0.3	191	0.4	22	0.3	229	0.4	4	0.4	32	0.3	1	0.1	25	0.4
90~100%	4	0.3	35	0.2	15	0.3	99	0.2	18	0.3	132	0.2	2	0.2	16	0.2	2	0.3	21	0.3
100%	16	1.1	169	1.0	63	1.2	473	0.9	67	1.0	545	0.9	13	1.2	177	1.7	12	1.8	127	2.1
합계	1,431	100.0	16,890	100.0	5,214	100.0	51,096	100.0	6,763	100.0	59,968	100.0	1,047	100.0	10,238	100.0	684	100.0	6,045	100.0

- <표 4>에서는 유효세율을 0%에서 100%까지 10% 간격으로 범주화한 후에 각 구간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표본규모의 비중을 살펴본 것임.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유효세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극단적인 유효세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지를 보기 위한 것임.
 - 유효세율이 0%인 기업은 세전 당기순이익이 음이거나 아니면 법인세비용이 음인 기업임. 유효세율 0%인 기업의 비중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8.8~26.6%이며 국내기업은 16.8~32.5%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0%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음. 이는 앞선 <표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익규모나 수익성이 높으며 손실을 보는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 유효세율이 40% 이상으로서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일시적으로 과세소득에 비하여 작은 경우에 해당함. 이렇게 비정상적인 경우가 전체표본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이 서로 유사함.
 - 유효세율이 0~10%, 10~20% 구간에서의 비중을 보면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하여 2~4%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에 유효세율 20~30% 구간에서의 비중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10% 이상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효세율 30~40% 구간에서도 1~2% 정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표 4>에서의 결과를 볼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크게 나타난 것은 유효세율 0%인 기업의 비중이 적고 상대적으로 20~30% 구간에 많은 비중이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 한 이는 40%가 넘는 극단적인 유효세율을 갖는 기업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결론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높은 유효세율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나. 연도별 유효세율 비교

- 아래의 <표 5>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유효세율을 연도별로 비교하고 있음. 이러한 비교는 앞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것이 특정 연도의 영향이 아닌 일반적인 현상임을 보여주기 위함임.

〈표 5〉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연도별 조세부담률

패널A: 2009~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

연도	법정세율 ^a	외국인투자기업		내국기업		차이 ^b
		유효세율	표본규모	유효세율	표본규모	
2009	24.2%	0.181	1035	0.149	10295	0.032***
2010	24.2%	0.177	1048	0.157	10269	0.021***
2011	24.2%	0.189	1044	0.161	10233	0.028***
2012	24.2%	0.177	1045	0.152	10176	0.026***
2013	24.2%	0.189	1042	0.157	10123	0.033***
합계		0.183	5214	0.155	51096	0.028***

패널B: 2004~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

연도	법정세율 ^a	외국인투자기업		내국기업		차이 ^b
		유효세율	표본규모	유효세율	표본규모	
2004	27.5%	0.217	606	0.201	5989	0.016***
2005	27.5%	0.199	668	0.190	6014	0.010***
2006	27.5%	0.205	676	0.193	6011	0.012***
2007	27.5%	0.216	677	0.208	6009	0.008***
2008	27.5%	0.207	673	0.195	6021	0.012***
2009	24.2%	0.197	675	0.162	6021	0.036***
2010	24.2%	0.190	683	0.168	6001	0.022***
2011	24.2%	0.202	744	0.177	5997	0.025***
2012	24.2%	0.191	682	0.163	5966	0.028***
2013	24.2%	0.202	679	0.166	5939	0.035***
합계		0.203	6763	0.182	59968	0.020***

a. 법정 최고 법인세율 + 지방소득세율

b.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유효세율 차이임.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 유의수준 * 10% 이내 ** 5% 이내 *** 1% 이내.

□ 우리나라의 연도별 법정세율은 2004년과 2009년에 세법 개정으로 변동하였음.

- 법인세 법정최고세율은 2003년말 세법개정으로 종전 27%에서 25%로 인하되었으며 다시 2008년말 세법개정으로 22%로 추가로 인하되었음.
-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이므로 우리나라 연도별 법정세율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27.5%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는 24.2%임.

- 유효세율은 영구적 차이나 세액감면 등이 반영되므로 대체로 법정세율보다 낮아지지만 어느 정도는 법정세율의 변동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표 5> 패널A에서는 2009~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의 연도별 유효세율을 비교하고 있음. 이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기업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은 17.7%에서 18.9%까지 분포하는데 비하여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은 14.9%에서 16.1%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모든 연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높음.
 -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 차이는 2010년 2.1%가 가장 작고 2013년 3.3%가 가장 큰 것임.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모든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 유의함.

- <표 5> 패널B에서는 2004~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의 연도별 유효세율을 비교하고 있음. 이를 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은 2012년 19.1%가 가장 작은 것이며 2004년 21.7%가 가장 높은 것임. 대체로 변동폭은 크지 않음. 반면에 국내기업은 2009년 16.2%가 가장 작은 것이고 2004년 20.1%가 가장 높은 것임. 모든 연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국내기업의 유효세율보다 높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서 국내기업은 유효세율의 연도별 변동이 큼.
 -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유효세율 차이는 2007년 0.8%로 가장 작았으며 2009년이 3.6%로 가장 컸음. 그리고 모든 연도에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 유의함. 그리고 대체로 양자의 차이는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2008년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유효세율 차이가 2% 미만인데 비하여 2009년부터는 2~3%로 확대되고 있음.
 - 법정세율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7.5%이었다가 2009년부터 24.2%로 3.3% 인하되었음. 내국 기업은 이러한 법정세율 인하의 추세를 반영하여 2009년을 기점으로 유효세율이 3% 이상 낮아지고 있음. 그런데 이에 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정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효세율이 변동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유효세율 차이가 2009년부터 커지는 주요 원인은 법정세율 변동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국내기업보다 높은 것은 특정 연도의 영향이 아닌 일반적인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법정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다. 총자산규모별 유효세율 비교

- 아래의 <표 6>에서는 총자산규모를 연도말 재무상태표 총자산 장부가액으로 정의하고 이를 세분화한 구간으로 구분한 후 각 구간별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유효세율을 비교한 것임.
 - 이러한 비교는 앞선 <표 2>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대체로 평균적인 총자산 규모가 컸으며 유효세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한 민감도 분석 차원으로 시행하는 것임.
 - 즉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것이 총자산규모로 인한 것이 아닌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표 6>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총자산 규모별 조세부담률 I

패널A: 2011년 표본

총자산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내국기업		차이 ^a
	유효세율	표본규모	유효세율	표본규모	
100억미만	0.075	43	0.097	1457	-0.022
100-199억	0.149	408	0.136	6261	0.013
200-299억	0.168	250	0.149	2747	0.019*
300-399억	0.160	140	0.146	1420	0.014
400-499억	0.198	80	0.156	871	0.042**
500-599억	0.155	58	0.162	608	-0.007
600-699억	0.224	55	0.161	447	0.063**
700-799억	0.201	44	0.154	361	0.048*
800-899억	0.232	35	0.199	305	0.033
900-999억	0.233	29	0.193	250	0.041
1,000-9,999억	0.209	257	0.194	1918	0.015
1조 이상	0.228	32	0.216	245	0.012
합계	0.175	1431	0.148	16890	0.027***

패널B: 2009~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

총자산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내국기업		차이 _a
	유효세율	표본규모	유효세율	표본규모	
100억미만	0.088	52	0.068	738	0.020
100-199억	0.155	1099	0.131	13802	0.024***
200-299억	0.172	917	0.147	9595	0.025***
300-399억	0.169	535	0.154	5609	0.015**
400-499억	0.188	361	0.160	3580	0.028***
500-599억	0.174	271	0.158	2544	0.016
600-699억	0.205	231	0.163	1852	0.042***
700-799억	0.211	179	0.176	1576	0.035**
800-899억	0.208	162	0.180	1293	0.028*
900-999억	0.229	102	0.183	1085	0.046***
1,000-9,999억	0.209	1188	0.189	8352	0.020*
1조 이상	0.196	117	0.207	1070	-0.011
합계	0.183	5214	0.155	51096	0.028***

패널C: 2004~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

총자산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내국기업		차이 _a
	유효세율	표본규모	유효세율	표본규모	
100억미만	0.163	128	0.141	1608	0.022
100-199억	0.178	1392	0.162	14244	0.015***
200-299억	0.187	1075	0.174	10046	0.013**
300-399억	0.186	640	0.182	6253	0.004
400-499억	0.207	528	0.185	4196	0.022***
500-599억	0.214	362	0.177	3223	0.038***
600-699억	0.228	301	0.187	2480	0.041***
700-799억	0.233	250	0.193	1979	0.041***
800-899억	0.240	205	0.200	1658	0.040***
900-999억	0.241	157	0.206	1421	0.035**
1,000-9,999억	0.224	1584	0.209	11227	0.015***
1조 이상	0.183	141	0.218	1633	-0.035**
합계	0.203	6763	0.182	59968	0.020***

〈표 6〉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총자산 규모별 조세부담률 II

패널D: 2009~2013년 계속기업의 5년 평균 표본

총자산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내국기업		차이 ^a
	유효세율	표본규모	유효세율	표본규모	
100억미만	0.000	3	0.055	85	-0.055
100-199억	0.173	213	0.153	2682	0.020
200-299억	0.211	196	0.166	2009	0.045***
300-399억	0.181	111	0.172	1164	0.009
400-499억	0.187	70	0.172	724	0.015
500-599억	0.157	52	0.164	500	-0.007
600-699억	0.184	46	0.177	398	0.007
700-799억	0.211	40	0.201	309	0.009
800-899억	0.317	29	0.188	263	0.129***
900-999억	0.176	22	0.171	220	0.005
1,000-9,999억	0.209	240	0.191	1666	0.018
1조 이상	0.214	25	0.202	218	0.012
합계	0.196	1047	0.170	10238	0.026***

패널E: 2004~2013년 계속기업의 10년 평균 표본

총자산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내국기업		차이 ^a
	유효세율	표본규모	유효세율	표본규모	
100억미만	0.152	2	0.079	36	0.074
100-199억	0.217	117	0.210	1330	0.007
200-299억	0.232	131	0.217	1089	0.015
300-399억	0.257	69	0.208	687	0.049**
400-499억	0.225	52	0.209	463	0.017
500-599억	0.230	41	0.225	347	0.004
600-699억	0.271	34	0.202	270	0.068**
700-799억	0.260	26	0.213	214	0.047
800-899억	0.240	20	0.236	164	0.003
900-999억	0.307	18	0.248	145	0.058
1,000-9,999억	0.242	159	0.227	1137	0.015
1조 이상	0.164	15	0.219	163	-0.054
합계	0.237	684	0.216	6045	0.021***

a.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유효세율 차이임.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 유의수준 * 10% 이내 ** 5% 이내 *** 1% 이내.

- <표 6>을 보면 대체로 모든 총자산규모 구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규모가 동일하다고 해도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음.
 - <표 6> 패널A에서는 2011년 표본을 대상으로 총자산 규모별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을 분석한 것임. 이를 보면 2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구간에서는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국내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그 중 3개 구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표 6> 패널B에서는 2009~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총자산 규모별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을 분석한 것임. 이를 보면 1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구간에서는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국내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그 중 8개 구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표 6> 패널C에서는 2004~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총자산 규모별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을 분석한 것임. 이를 보면 1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구간에서는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국내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그 중 9개 구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표 6> 패널D에서는 2009~2013년 계속기업의 5개년 평균 표본을 대상으로 총자산 규모별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을 분석한 것임. 이를 보면 1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구간에서는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국내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그 중 2개 구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표 6> 패널E에서는 2004~2013년 계속기업의 10개년 평균 표본을 대상으로 총자산 규모별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을 분석한 것임. 이를 보면 1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구간에서는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국내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그 중 2개 구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전반적으로 규모를 통제 한 후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보다 높은 유효세율을 보였지만 규모가 100억 미만으로 가장 작은 구간과 1조원 이상의 규모가 큰 구간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표본에서는 오히려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극단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큰 기업의 경우에는 표본수가 적어서 충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라. 세전 순이익규모별 유효세율 비교

□ 아래의 <표 7>에서는 세전 당기순이익 규모를 5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별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 비교하고자 함. 이는 유효세율은 대체로 세전 당기순이익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고 앞선 <표 2>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순이익 규모나 순이익률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유효세율이 국내기업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순이익이 컸기 때문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표 7>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세전 순이익별 조세부담률 I

패널A: 2011년 표본

세전순이익 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내국기업		차이
	유효세율	표본규모	유효세율	표본규모	
<0	0.050	167	0.040	1877	0.010
0-9억	0.151	367	0.132	7651	0.019*
10-99억	0.206	635	0.189	6122	0.017***
100-999억	0.211	230	0.207	1098	0.004
1,000억 이상	0.228	32	0.235	142	-0.007
합계	0.175	1431	0.148	16890	0.027***

패널B: 2009~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

세전순이익 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내국기업		차이
	유효세율	표본규모	유효세율	표본규모	
<0	0.066	548	0.049	6379	0.017***
0-9억	0.156	1121	0.143	18647	0.013*
10-99억	0.208	2389	0.186	20682	0.022***
100-999억	0.213	1033	0.202	4747	0.012***
1,000억 이상	0.203	123	0.211	641	-0.008
합계	0.183	5214	0.155	51096	0.028***

〈표 7〉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세전 순이익별 조세부담률 II

패널C: 2004~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

세전순이익 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내국기업		차이
	유효세율	표본규모	유효세율	표본규모	
<0	0.075	602	0.058	7154	0.017***
0-9억	0.170	1395	0.178	19129	-0.008
10-99억	0.229	3232	0.209	25818	0.021***
100-999억	0.227	1355	0.219	6820	0.008**
1,000억 이상	0.212	179	0.217	1047	-0.005
합계	0.203	6763	0.182	59968	0.020***

패널D: 2009~2013년 계속기업의 5년 평균 표본

세전순이익 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내국기업		차이
	유효세율	표본규모	유효세율	표본규모	
<0	0.029	88	0.027	1130	0.002
0-9억	0.197	235	0.172	3899	0.025
10-99억	0.213	490	0.198	4233	0.016***
100-999억	0.222	212	0.205	856	0.017**
1,000억 이상	0.198	22	0.210	120	-0.012
합계	0.196	1047	0.170	10238	0.026***

패널E: 2004~2013년 계속기업의 10년 평균 표본

세전순이익 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내국기업		차이
	유효세율	표본규모	유효세율	표본규모	
<0	0.013	33	0.021	560	-0.007
0-9억	0.276	149	0.243	2014	0.033
10-99억	0.245	342	0.232	2784	0.013**
100-999억	0.234	146	0.229	591	0.004
1,000억 이상	0.182	14	0.217	96	-0.036*
합계	0.237	684	0.216	6045	0.021***

- <표 7>를 보면 대체로 모든 순이익 구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국내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순이익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국내기업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패널A에서는 2011년 표본을 대상으로 순이익 규모별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을 분석한 것임. 5개 구간 중 1,000억 이상 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외국인투자

- 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유효세율이 크고 그중 2개 구간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패널B에서는 2009~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순이익 규모별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을 분석한 것임. 5개 구간 중 1,000억 이상 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유효세율이 크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
 - 패널C에서는 2004~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순이익 규모별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을 분석한 것임. 0~9억원 구간 및 1,000억원 이상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구간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국내기업보다 큼.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패널D에서는 2009~2013년 계속기업의 5개년 평균 표본을 대상으로 순이익 규모별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을 분석한 것임. 1,000억원 이상인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국내기업보다 높으며 그중 2개 구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패널E에서는 2004~2013년 계속기업의 10개년 평균 표본을 대상으로 순이익 규모별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을 분석한 것임. 5개 구간 중 1,000원 이상인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국내기업보다 높았으며 그중 10~99억원 구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순이익 규모에 따른 구간별로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순이익 규모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은 국내기업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음.
- 다만 순이익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오히려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이 외국인투자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대체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패널 E의 10년 평균 표본에서는 3.6% 정도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이 외국인투자기업보다 높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마. 업종별 유효세율 비교

- 업종별로 조세지원은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제조업은 비제조업에 비하여 세액 공제나 세액감면과 같은 조세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조세지원을 집중적으로 받는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효세율이 낮아짐. 또한 앞선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도소매업의 비중이 훨씬 높음.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업종 구성이 다름으로 인

하여 유효세율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아래의 <표 8>에서는 업종을 제조업, 도소매업과 기타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을 비교하고자 함. 이를 통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것이 업종 구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음.

<표 8>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업종별 조세부담률

패널A: 2011년 표본

산업구분	외국인투자기업		내국기업		차이
	유효세율	표본규모	유효세율	표본규모	
제조업	0.153	795	0.141	8352	0.012**
도소매업	0.242	295	0.197	2054	0.045***
기타	0.167	341	0.142	6484	0.025**
합계	0.175	1431	0.148	16890	0.027***

패널B: 2009~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

제조업	0.163	3039	0.145	26834	0.018***
도소매업	0.250	1064	0.199	5450	0.051***
기타	0.172	1111	0.157	18812	0.015***
합계	0.183	5214	0.155	51096	0.028***

패널C: 2004~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

제조업	0.184	4218	0.167	32693	0.017***
도소매업	0.269	1298	0.219	5917	0.051***
기타	0.195	1247	0.196	21358	0.000
합계	0.203	6763	0.182	59968	0.020***

패널D: 2009~2013년 계속기업의 5년 평균 표본

제조업	0.178	609	0.160	5378	0.018**
도소매업	0.257	214	0.220	1090	0.037***
기타	0.185	224	0.169	3770	0.016
합계	0.196	1047	0.170	10238	0.026***

패널E: 2004~2013년 계속기업의 10년 평균 표본

제조업	0.219	425	0.194	3289	0.025***
도소매업	0.294	133	0.248	597	0.046***
기타	0.237	126	0.239	2159	-0.002
합계	0.237	684	0.216	6045	0.021***

- <표 8>을 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모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보다 유효세율이 높으며 기타 업종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일부 표본에서는 그렇지 않았음.
- 패널A에서는 2011년 표본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을 분석한 것임.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평균 15.3%의 유효세율을 보였지만 국내기업은 평균 14.1%의 유효세율을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또한 도소매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은 평균 24.2%이었는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19.7%에 그쳐서 4.5%만큼 외국인투자기업이 유효세율이 높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기타 업종에서도 유사하게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평균 2.5%만큼 유효세율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함.
 - 패널B에서는 2009~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을 분석한 것임.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평균 16.3%의 유효세율을 보였지만 국내기업은 평균 14.5%의 유효세율을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또한 도소매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은 평균 25%이었는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19.9%에 그쳐서 5.1%만큼 외국인투자기업이 유효세율이 높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기타 업종에서도 유사하게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평균 1.5%만큼 유효세율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함.
 - 패널C에서는 2004~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을 분석한 것임.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평균 18.4%의 유효세율을 보였지만 국내기업은 평균 16.7%의 유효세율을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또한 도소매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은 평균 26.9%이었는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21.9%에 그쳐서 5.1%만큼 외국인투자기업이 유효세율이 높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기타 업종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패널D에서는 2009~2013년 계속기업의 5개년 평균 표본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을 분석한 것임.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평균 17.8%의 유효세율을 보였지만 국내기업은 평균 16%의 유효세율을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또한 도소매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은 평균 25.7%이었는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22%에 그쳐서 3.7%만큼 외국인투자기업이 유효세율이 높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기타 업종에서도 유사하게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하여 평균 1.6%만큼 유효세율이 높았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패널E에서는 2004~2013년 계속기업의 10개년 평균 표본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을 분석한 것임.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평균 21.9%의 유효세율을 보였지만 국내기업은 평균 19.4%의 유효세율을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또한 도소매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은 평균 29.4%이었는데 비하여 국내기업은 24.8%에 그쳐서 4.6%만큼 외국인투자기업이 유효세율이 높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기타 업종에서는 반대로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보다 평균 유효세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표 8>에서의 결론은 업종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국내기업보다 높았다는 것임.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차이가 컸으며 기타업종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평균 유효세율 차이는 크지 않았음.

3.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투자국별 조세부담률

-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투자국별로 유효세율을 비교하고자 함. 이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모국의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됨.
 - 아래의 <표 9>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투자국별 유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이를 보면 대표투자국별로 상당히 유효세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9〉 외국인투자기업 대표투자국별 조세부담률 I

패널A: 대표투자국별 유효세율

대표투자국	2011표본		2009~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		2004~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		2009~2013년 계속기업의 5년 평균 표본		2004~2013년 계속기업의 10년 평균 표본	
	유효 세율	표본 규모	유효 세율	표본 규모	유효 세율	표본 규모	유효 세율	표본 규모	유효 세율	표본 규모
	일본	0.166	527	0.172	1990	0.194	2514	0.176	398	0.225
미국	0.199	279	0.197	1041	0.212	1554	0.215	210	0.245	158
독일	0.217	89	0.209	318	0.235	451	0.230	63	0.269	46
네덜란드	0.192	79	0.192	330	0.219	392	0.202	67	0.266	38
싱가포르	0.123	48	0.162	113	0.134	120	0.184	23	0.177	12
중국	0.146	37	0.167	111	0.193	108	0.218	22	0.172	11
홍콩	0.148	44	0.183	108	0.222	177	0.161	22	0.209	18
프랑스	0.198	46	0.205	192	0.193	248	0.216	39	0.225	25
스위스	0.236	39	0.253	159	0.254	211	0.277	32	0.285	23
영국	0.206	27	0.220	114	0.231	159	0.256	23	0.306	16
케이만군도	0.061	25	0.107	76	0.122	27	0.126	15	0.144	3
말레이시아	0.204	20	0.195	92	0.191	138	0.200	18	0.174	14
스웨덴	0.240	23	0.197	80	0.223	100	0.197	16	0.231	10
버진아일랜드	0.157	20	0.141	63	0.148	95	0.127	13	0.215	9
대만	0.123	9	0.120	25	0.088	20	0.122	5	0.121	2
캐나다	0.123	11	0.119	34	0.143	29	0.245	7	0.124	3
덴마크	0.214	11	0.230	38	0.266	48	0.227	8	0.305	5
벨기에	0.163	10	0.232	35	0.290	40	0.317	7	0.324	4
호주	0.094	8	0.089	32	0.159	15	0.130	7	0.201	2
기타	0.125	79	0.141	263	0.151	317	0.161	52	0.253	32
합계	0.175	1431	0.183	5214	0.203	6763	0.196	1047	0.237	684

패널B: 대표투자국 유형별 유효세율

대표투자국 유형	2011표본		2009~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		2004~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		2009~2013년 계속기업의 5년 평균 표본		2004~2013년 계속기업의 10년 평균 표본	
	유효 세율	표본 규모	유효 세율	표본 규모	유효 세율	표본 규모	유효 세율	표본 규모	유효 세율	표본 규모
	일본	0.166	527	0.172	1990	0.194	2514	0.176	398	0.225
미국	0.199	279	0.197	1041	0.212	1554	0.215	210	0.245	158
유럽	0.209	324	0.211	1266	0.228	1649	0.229	255	0.268	167
아시아	0.146	158	0.173	449	0.185	563	0.187	90	0.183	57
조세피난처	0.104	45	0.122	139	0.142	122	0.126	28	0.198	12
기타	0.122	98	0.134	329	0.151	361	0.167	66	0.240	37
합계	0.175	1431	0.183	5214	0.203	6763	0.196	1047	0.237	684

〈표 9〉 외국인투자기업 대표투자국별 조세부담률 II

패널C: 대표투자국 연도별 유효세율(2004~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표본)

연도	일본		미국		유럽		아시아		조세피난처	
	유효 세율	표본 규모								
2004	0.205	251	0.226	151	0.237	163	0.203	55	0.132	12
2005	0.199	253	0.200	150	0.225	165	0.167	54	0.165	11
2006	0.202	254	0.206	153	0.228	165	0.181	56	0.165	12
2007	0.211	253	0.218	154	0.249	165	0.199	57	0.108	12
2008	0.201	251	0.216	153	0.224	165	0.198	57	0.126	11
2009	0.196	250	0.200	155	0.232	165	0.170	57	0.069	12
2010	0.174	251	0.211	158	0.218	167	0.180	57	0.110	13
2011	0.190	251	0.225	159	0.235	166	0.170	57	0.201	13
2012	0.171	251	0.209	160	0.213	166	0.189	56	0.184	12
2013	0.194	249	0.206	161	0.222	162	0.194	57	0.156	14
합계	0.194	2514	0.212	1554	0.228	1649	0.185	563	0.142	122

- <표 9>를 보면 일본 자회사들은 유효세율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에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표 9> 패널A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표본규모가 있는 대표투자국 19개국별로 각 표본유형별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 일본계 기업들은 표본유형별로 평균 유효세율이 16.6%~22.5%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계 기업들은 19.7%~24.5%에 이르고 있다. 독일계 기업들은 20.9%~26.9%의 평균유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이를 보면 대체로 일본계 기업들은 전체 평균 유효세율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이나 독일계 기업들은 전체 평균 유효세율에 비하여 높음.
 - 반면에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케이만군도는 6.1%~14.4%의 평균유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버진아일랜드는 15.7%~21.5% 사이의 평균유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이들 기업들은 앞선 일본, 미국, 독일계 기업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의 평균 유효세율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대표투자국에 따라 유효세율의 체계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표 9> 패널B에서는 19개 대표투자국을 다시 일본, 미국, 유럽(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영국,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 조세피난처(버진아일랜드, 케이만군도)로 재분류하여 평균 유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 이를 보면 유럽계 기업들은 평균유효세율이 표본유형별로 20.9%~26.8%에 이르고 있어서 일본이나 미국계 기업들보다 높은 값을 보임.
 - 반면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계 기업들은 14.6%~18.7%의 평균유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유럽계 기업들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미국계 기업들에 비해서도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조세피난처가 대표투자국인 기업들은 10.4%~19.8%의 평균 유효세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4~2013년 계속기업의 10개년 평균 표본을 제외한다면 최고가 14.2%에 그치고 있어서 상당히 낮은 평균유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 <표 9> 패널C에서는 2004~2013년 계속기업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대표투

자국 유형별로 연도별 평균 유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 일본계 기업들은 2009년까지 20% 정도의 평균 유효세율을 보여주다가 2010년부터 평균 유효세율이 낮아지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 2010년부터 평균 유효세율이 낮아진 것은 일본이 전세계과세시스템(worldwide taxation system)에서 2010년부터 일본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을 통해서 지역과세시스템(territorial taxation system)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을 있을 가능성도 존재함.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세율이 2009년부터 27.5%에서 24.2%로 낮아진 것의 영향일수도 있음.
- 미국계 기업들은 연도별로 20~22% 사이에서 평균 유효세율이 분포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계 기업의 전체 평균 21.2%는 시기별로 안정적인. 이에 따라 미국계 기업의 평균 유효세율은 연도별로 큰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유럽이나 아시아계 기업들의 평균 유효세율도 연도별로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음. 조세피난처 기업들도 2011년 20.1%, 2012년 18.4%를 제외하면 상당히 낮은 평균 유효세율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앞서 보았던 대표투자국별 평균 유효세율의 차이는 특정 연도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시기별로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경과기간별 유효세율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경과기간별 유효세율을 보고자 함.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자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익발생시점부터 5년 이내 100%,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하기로 규정되어 있음. 실제로 특정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음. 다만 등록기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에 따라서 유효세율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아래의 <표 10>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경과기간별 유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등록 경과기간을 5년 미만, 5~10년, 10년 초과로 구분한 후 각 기간별로 유효세율을 살펴 봄.
 - 패널A에서는 경과기간별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여줌. 이를 보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1.3~16.1%이고 5~10년인 경우에는 15.5~18.9% 그리고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0.8

~21.7%의 평균 유효세율을 보이고 있어서 등록기간이 경과할수록 유효세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외국인직접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효과라고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앞서 경과기간이 늘어날수록 평균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것은 조세지원의 효과라기 보다는 직접투자 후 일정기간 동안은 손실을 보게 되고 이에 따라 유효세율이 낮아진 것 때문일 수 있음. 따라서 패널B에서는 세전 순이익이 0보다 큰 표본에 대해서만 등록 경과기간별 평균 유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이를 보면 대체로 패널A에서처럼 경과기간이 증가할수록 평균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앞선 패널A의 결과가 단순히 손실기업의 영향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임.
- 패널C, D, E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업종별로 구분하여 등록 경과기간별 평균 유효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통상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외국인직접투자자에 대한 조세 지원은 도소매업보다는 제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만일 앞선 패널A에서 보여주었던 추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조세지원의 영향 때문이라면 이러한 성향은 제조업에서 주로 나타나야 하고 도소매업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임. 패널C에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앞선 패널A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경과기간별로 평균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패널D에서의 도소매업 표본에서는 2011년 표본을 제외하고는 경과기간별로 평균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패널C, D에서의 결과는 앞선 패널A의 추세가 외국인직접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라는 것을 시사함. 한편 패널E의 기타업종에서도 경과기간별로 평균 유효세율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됨.

〈표 10〉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경과기간별 조세부담률

패널A: 경과기간별 유효세율

경과기간	2011표본		2009~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		2004~2013년 계속기업의 기업×연도 표본	
	유효세율	표본규모	유효세율	표본규모	유효세율	표본규모
5년미만	0.113	376	0.135	877	0.161	979
5-10년	0.155	322	0.155	1281	0.189	1513
10년 이상	0.215	733	0.208	3056	0.217	4271
합계	0.175	1431	0.183	5214	0.203	6763

패널B: 세전순이익>0인 표본에 대한 경과기간별 유효세율

5년미만	0.141	287	0.159	710	0.181	849
5-10년	0.172	286	0.170	1122	0.202	1367
10년 이상	0.221	691	0.216	2834	0.227	3945
합계	0.191	1264	0.196	4666	0.215	6161

패널C: 제조업 표본에 대한 경과기간별 유효세율

5년미만	0.097	196	0.114	471	0.141	587
5-10년	0.122	166	0.128	704	0.159	815
10년 이상	0.191	433	0.189	1864	0.201	2816
합계	0.153	795	0.163	3039	0.184	4218

패널D: 도소매업 표본에 대한 경과기간별 유효세율

5년미만	0.207	43	0.263	108	0.270	114
5-10년	0.210	76	0.225	256	0.256	327
10년 이상	0.265	176	0.257	700	0.275	857
합계	0.242	295	0.250	1064	0.269	1298

패널E: 기타업종 표본에 대한 경과기간별 유효세율

5년미만	0.106	137	0.120	298	0.157	278
5-10년	0.171	80	0.159	321	0.198	371
10년 이상	0.231	124	0.211	492	0.211	598
합계	0.167	341	0.172	1111	0.195	1247

5. 소결

-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률을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국내기업의 조세부담률과 비교하고자 하였음.
 -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은 국내기업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자산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거나 세전 순이익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들보다 평균 유효세율이 높았음.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평균 유효세율이 국내기업보다 높은 것은 총자산규모나 세전 순이익의 영향 때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됨.
 - 연도별로 평균유효세율을 보면 모든 연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보다 평균 유효세율이 높음. 이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평균 유효세율이 국내기업들보다 높은 현상은 시기별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업종별로 구분해서 보아도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보다 평균 유효세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투자국별로 조세부담률을 살펴보았음.
 - 대체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 대표투자국인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유효세율이 일본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대표투자국인 외국인투자기업들보다 높게 나타남.
 -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만군도와 같은 조세피난처 지역을 대표투자국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평균 유효세율은 예상대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음.
 - 이러한 현상은 연도별로 구분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나타나서 대표투자국에 따라서 평균 유효세율의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본 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경과기간별로 조세부담률을 살펴보았음. 이는 등록 경과기간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임.
 - 예상대로 등록 경과기간이 길수록 평균유효세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음. 따라서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이익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유지되었음.
 - 업종별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제조업에서는 동일하게 등록 경과기간별로 평균유효세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도소매업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지 못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로 제조업에 집중된다는 전

제 하에서 이러한 현상은 등록 경과기간 별로 평균 유효세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생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본 절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국내진출 동기는 대체로 조세보다는 비조세 측면에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의 평균 유효세율은 국내기업들보다 높았음. 만일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조세 동기에 의하여 국내에 진출하였다면 적극적인 세무계획이나 조세감면의 활용으로 인하여 평균 유효세율이 오히려 국내기업들보다 낮아졌을 가능성 있음.
 - 명백하게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을 평균적으로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이를 감안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평균 유효세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진출 동기가 조세가 아닌 비조세 요인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IV.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1.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가. 외국인투자의 개요

-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① 국내 지점 또는 ② 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과 ③ 현지법인을 설립(투자)하거나 ④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으며,
 - ①, ②를 외국법인이라고 하며, 이는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동일인격)하며, ③, ④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표현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별도인격)
-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대상인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
 - 단,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미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1항 4호)

나.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FDI) 동향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변화하여,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과 함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크게 확대됨
 -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차관 및 기술도입 형태로 조달하는 외자도입정책에 주력
 - 선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제도를 개방 및 지원중심으로 전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및 투자자 관리 제도 마련
- 전세계 및 아시아권의 외국인투자는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는 2004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8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
 - 2013년 외국인투자 규모는 신고기준 145.5억불(도착기준 96.8억불)로 사상최대 실적을 거둔 2012년 162억불에 비해서는 10.7% 감소
 - 2014년 1분기 외국인투자(억불) 실적 : 신고기준 50.6(49% ↑), 도착기준 37.4(152% ↑)

〈그림 1〉 외국인투자의 추이



자료 : 산업자원통상부(<http://www.motic.go.kr>)

□ EU의 외국인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일본·중국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감소

- EU는 국내 펀드투자 등 M&A형 투자 증가로 인해 큰 폭의 증가세이었으며, 미국은 제조업, 그린필드형 투자 감소로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일본의 경우 엔저효과, 중국 등 중화권의 경우 '12년 대규모 투자가 발생했던 복합리조트 후속투자 미비 등으로 인해 투자 감소
- (EU) 2012년 27.1억불 → 2013년 48억불, 76.9% ↑, (미국) 2012년 36.7억불 → 2013년 35.3억불, 4.1% ↓, (일본) 2012년 45.4억불 → 2013년 26.9억불(41% ↓), (중화권) 2012년 7.3억불 → 2013년 4.8억불(34% ↓)

〈표 11〉 국가별 외국인투자 추이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증감률
미 국	427	830	614	1,804	3,674	1,702	816	172	835	3,525	820	-51.8
일 본	919	1,718	667	1,237	4,542	599	756	608	727	2,690	746	24.6
E U	581	817	729	587	2,714	436	2,049	736	1,581	4,802	2,259	417.6
중 화	270	977	1,521	1,239	4,006	182	613	791	412	1,998	719	295.1
중국	96	91	252	287	727	53	104	155	169	481	227	328.0
기 타	149	418	562	221	1,350	475	370	440	248	1,533	518	9.1
전 체	2,346	4,760	4,093	5,087	16,286	3,394	4,604	2,747	3,802	14,548	5,062	49.1

자료 : 산업자원통상부(<http://www.motic.go.kr>)

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1)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초기 제한적인 도입 단계에서 개방경제로의 이행 및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도입단계로 변화
 - 1962년부터 외국인자본 유입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1970년대 말까지는 외국인에 의한 국내산업지배에 대한 우려로 직접투자보다는 상업차관 및 IBRD 등의 공공차관 도입에 역점을 두고 추진
 - 그러나 80년대에 79년 제2차 석유과동 및 잇따른 개도국의 채무불이행선언 등의 여파로 차관중심의 외자도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외국인투자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시작
 - 1980년 9월에는 외국인투자 적격사업을 기존 중화학공업분야 이외 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1983년 12월에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기존 외자도입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합하여 외자관리법으로 일원화
 - 외국인투자업무의 주관부서인 재무부는 1984년 7월 외국자본투자제도를 네거티브 리스트제도로 전환하는 외국인투자제도 개편을 단행
 - 1990년대에 들어서 심화되는 국제경제 경쟁에 적극대응할 수 있도록 1991년에는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1993년에는 외자도입심의위원회를 전격 폐지
 -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 1998년 9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하고, 외국인투자제도를 개방 및 지원중심으로 개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행정지원제도도 도입
-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및 제도를 정비하여 외국인투자유치종합대책을 확정(9.2)
 - 세제와 입지 등 투자인센티브의 확충, 외국인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연차별 계획의 수립·추진, 외국인투자가에 대해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과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등으로 구성
 - 2006년에는 연도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이 법정화되어 2007년부터 시책 수립
 - 국내산업 고도화에 긴요한 업종 위주의 투자유치활동, 인베스트 코리아 및 지방자치단체 등 투자유치기관간 협조체계,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과제의 조기 마무리,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 투자환경 집중 홍보 등
-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증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외국인투자가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에 역점

-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할 필요성에 따라, 제1차 투자환경개선 3개년계획(08.5)을 기점으로 투자환경 개선과 더불어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적 대응노력
- 2008년 5월, 제1차 외국인투자 3개년(08~'10)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추진과제 62개를 선정하여 투자유입기반 조성
- 2010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유치 기반을 구축
- 2011년 7월에는 변화된 외국인투자 환경 및 국내 경제, 산업 여건 등에 발맞춰 제 2차 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12~14년간)을 수립

〈표 12〉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연혁

구분	구체적인 연혁
1960~197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발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목적으로 제한적인 FDI 도입 단계 - ‘외자도입촉진법’ 등 제정(’60) 및 관련법 정비 (’66년) - 외국인투자보다 차관 우선 외자유치
1980~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중심의 외자도입 한계로 인하여 FDI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조성 단계 - 외국인투자가능업종 관련 Negative 방식 채택 - UR 및 WTO 출범 등으로 경제개방의 가속화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 (’97년)
1998~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적극적인 FDI 유입 정책 확대 단계 - 강력한 외국인투자 유치 추진 및 적대적 M&A 허용 - 외국환거래 자유화, 외국인 토지취득 전면개방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98)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계획’ 수립(’08.5)
2010~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FDI 유치 촉진 단계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정 등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10) - 2011년 이후 한·미 FTA, 한·EU FTA의 발효로 인한 핵심 투자국별 맞춤형 유치전략 수립 및 KOTRA의 기능 확대 등의 개편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및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 발표(’14.1)

자료 : 지식경제부, 「2012 지식경제백서」를 참고하여 작성

2) 현행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지원, 현금지원, 입지지원, 국공유재산임대 등 지원, 행정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지원기관인 Invest Korea 설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매니저 지정·운용

□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관련 법률로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활동에 대한 입지지원, 현금지원, 국·공유재산지원 및 행정지원에 대한 주요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각종 지원 중 조세지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활동에 대한 입지지원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활동에 대한 입지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외국인투자활동에 대한 입지지원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활동에 대한 입지지원

가) 현금지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

- 현금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인 외국인 투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됨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현금 지원 대상 부품·소재산업”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 상시고용자수 요건을 충족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이나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나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자의 요건 등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기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지역선도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입지지원

-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의 특정한 지역 또는 별도로 입지를 확보해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인투자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 구역 등의 입지를 확보하여 제공

①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①유치협상, ②투자결정, ③실무협의 및 개발계획 수립, ④외투지역 지정요청(지자체→산업자원통상부), ⑤외투지역 타당성 검토, ⑥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 ⑦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⑧지정고시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은 단지형 투자지역, 개별형 투자지역 및 서비스형 투자지역에 따라 달라짐

- 단지형 투자지역 : 지자체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예정 면적(최소 33만㎡ 이상)의 60% 이상 입주수요(MOU)를 확보한 후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심의를 요청
- 개별형 투자지역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실행 가능성,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종합검토 후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
- 서비스형 투자지역은 개별형 형태와 단지형 형태로 구분하며, 개별형 형태는 입주수요(MOU)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단지형 형태는 2개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희망

을 보이는 경우 입주된 수요(MOU)가 선정된 부지의 60%이상 차지

〈표 1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 요건

업종	지정기준
제조업, 고도기술, 산업지원(물류)	FDI 3천만\$ 이상
관광업, 산업지원(물류외)	FDI 2천만\$ 이상
물류업, 사회기반	FDI 1천만\$ 이상
연구개발시설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연구개발시설 - FDI 2백만\$ 이상(석사 이상 연구경력 3년 이상 인력 10인 이상)

자료 : KOTRA, 2013, 외국인투자가이드

〈표 14〉 외국인투자지역 유형별 비교

구분	단지형 외투자지역	개별형 외투자지역
개요	중소규모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사전에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입주	대규모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에 따라 지정
위치	산업단지	제한없음(희망지역)
지정(입주)요건	외투자분 30% 이상 등	업종별 최소금액이상 투자(제조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이상 등)
입지지원	부지매입 후 입주기업 임대 - 국비 수도권 40%, 기타 75%	부지매입비 지원(요청시) - 국비 수도권 40%, 기타 75%
조세감면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	감면요건 - 제조업 1천만\$ 이상 - 물류업 5백만\$ 이상 감면기간 - 국세5년(3년 100%, 2년 50%) - 지방세 15년 이내	별도 감면요건 없음 - 지정요건과 동일 감면기간 - 국세7년(5년 100%, 2년 50%) - 지방세 15년 이내
임대료 감면	75~100% 감면 (필요시 중앙정부, 지자체가 부지매입 임대)	100% 감면 (필요시 중앙정부, 지자체가 부지매입 임대)

자료 : KOTRA, 2013, 외국인투자가이드

② 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지정하여, 제조 및 물류업 영위 기업의 입주로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 구역임

- 자유무역지역에는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별도로 관세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
 -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음
-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할 수 있으므로, 수출목적의 제조업, 창고·물류·하역·포장 등의 물류업, 수출입거래를 위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겐 유리한 사업조건을 제공
-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인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투자신고·입주허가·공장건축허가·수출입 승인 등을 모두 직접 처리하는 One-stop 행정 서비스를 지원

③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은 제조·물류·관광업 등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첨단산업단지·배후부지 등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등을 갖추고, 국내외의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기 위한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완화한 특별구역임
 -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교육기관·병원의 설립 및 운영, 외국어 서비스, 외국화폐·방송 등의 허용,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
 - 현재 1차 3개구역(03년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차 3개구역(08년 :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총 6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 중

다) 기타지원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하여 운영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할 수 있으며(KOTRA사장 지정), 이 경우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를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
 - 프로젝트매니저 대상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직원,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이 경우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 필요
 - 주요 수행업무로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제공 및 면담의 알선에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지원 및 민원대행, 주택임차와 학교입학 안내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지원에 이르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제반 업무가 모두 해당

라) 조세지원

- 일정요건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기술도입대가,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및 자본세 도입에 따른 관세를 감면 하고,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

- 외국투자가투자기업에 대한 금적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상에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조세특례 존재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감면
 - 외국인 투자가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일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동 감면을 위해 기재부 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해야함(조특법 제121조의2)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외국인투자사업에 제공되는 자본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가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인 경우에는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면제신청 해야함(조특법 제121조의3)
 - 증자의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해당 증자분에 대해 조세감면(조특법 제121조의4)
 -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해당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년 동안 면제받으며,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재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해야 함(조특법 제121조의6).

〈표 15〉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조세감면대상	감면내용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1호) - 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기업 및 경제자유지역·제주첨단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각 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치는 사업(2호) *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으로 감면	7년간 감면 최초 5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 경제자유구역 입주구역(2의2호)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2의3호)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2의4호) - 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입주 기업(2의5호)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2의6호)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사업(2의7호) -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3호)	5년간 감면 최초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자료 : 국세청, 2014,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지출현황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크게 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자본 채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조세지출규모가 가장 큰 것은 법인세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이며, 2011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6〉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단위 : 억원)

조세지출 항목	조문	세목	2010 실적	2011 실적	2012 실적	2013 잠정	2014 예산
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	조특§121의2·121의4	소득세	4	1	2	1	2
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	조특§121의2·121의4	법인세	5,765	8,198	4,383	3,297	2,977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채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조특§121의3	부가가치세	142	327	569	292	415

조세지출 항목	조문	세목	2010 실적	2011 실적	2012 실적	2013잠정	2014예산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조특§121의3	관세	118	202	441	290	32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특§121의6	법인세	492	623	445	14	14

자료 : 기획재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2. 미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가. 미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미국은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해당 분야와 관련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이 기존 기업을 인수할 경우 미상무성에 통보해야 되며, 상장기업을 인수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관여하고 있음.
 - 국가안전보장관련 규제는 1998년 종합무역법 502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출입 및 정부조달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1985년 수출관리수정법 102조, 1986년 국방취득개선법 101조, 1987년 국방비수정법 98조 등이 있음.

- 주요 외국인 투자규제 사업분야는 아래와 같음.

〈표 17〉 외국인투자 규제 사업분야

규제분야	내용
통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통신사업(TV, 라디오 운영사업 등)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서비스 외자규제를 최근 대폭 완화
에너지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 수력, 지력발전사업 ■ 라이선스 등록은 미국인 또는 미국회사로 제한
운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항공운송업, 수상, 해상 연안운송업 ■ 미국에서 건조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이상을 미국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
국가안전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국방 관련 사업

자료 : www.ois.go.kr

- 미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법은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의 각 주정부는 해당 주의 경제개발,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토지 무상제공, 각종 세액공제 또는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 연방정부 및 각 주의 투자인센티브 정보는 SelectUSA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 미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별도의 세제지원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법인이나 국내법인의 구분없이 특별지역¹⁾에 입주하는 법인에 대해서 세제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 일반적으로 각 주에서는 외국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나. 미국의 외국인투자 비조세지원제도

□ 일부 주정부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별도 기관을 주정부 산하에 두고 세제지원, 금융지원, 산업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개발

○ 뉴욕주 : 경제개발국(Empire State Development)

○ 테네시주 : 국제관계국(International Affairs Office)

□ 미국의 비조세지원제도는 크게 현금지원, 정책지원 및 기타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뿐만 아니라 연구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현금지원 :

- International Science and Education Competitive Grants Program(미국대학의 역량을 높이는 국제 협력 연구나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여되는 보조금)

-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EQIP : 농업진흥을 위해 농업 종사자, 목축업자, 농업 생산과 환경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산업 목적 외의 산림 소유자에 대해 경제적, 기술적 보조 제공)

- Recovery Act: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IH : 미국의 과학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 보조금)

- Ultra-Deepwater and Unconventional Natural Gas and Other Petroleum Resources Program(심해탐사, 새로운 천연가스 개발, 원유 자원 탐사를 위한 기술 분야의 R&D를 장려하는 보조금)

- Grants.gov(정부기관, 교육기관, 비영리기관, 중소기업 등이 연방 정부에 보조금을

1) 오하이오주의 business Zone, 펜실베이니아주의 Keystone Opportunity Zone, 버지니아주의 Enterprise Zone, 뉴욕주의 Empire Zone 등이 있음

- 신청하면 심사 후 보조금 수여)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연방정부의 필요에 부합하는 혁신적 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 Opportunities for Academic Liaison with Industry(산학협동 지원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나 인턴쉽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 Industry/University Cooperative Research Centers Program(I/UCRC : 산업, 학계, 정부 간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연구 센터로 정부지원금으로 운영)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의 대출 보증 프로그램(SBA는 미국의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대출 보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이 2백만 달러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Loan Guaranty Programme 등이 있음.)
- 정책지원 :
 - Clean Energy Loan Guarantee Program(클린에너지 프로젝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폭넓고 심도 깊은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국에서 자금 대출해줌)
 -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NETL : 대학과 민간 부문의 파트너십, 공동 연구, 재정 지원 등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 연구 R&D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
 - Bilateral Investment Treaty(BIT : 미국의 투자 진흥을 위해 민간 부문 투자를 보호하고 상대국가의 시장친화적 정책 수립을 위한 투자 조약)
 - Free Trade Agreement(협약국간의 무역/투자 진흥을 위해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약)
- 기타지원 :
 - Plant Feedstock Genomics for Bioenergy(에탄올 또는 재생 화학 원료 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 사용률을 높이는 게놈(Genom) 연구에 대해 보조금 지원)
 - Specialty Crop Research Initiative(곡물품질 개선을 위해 해충 피해 방지 노력,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 종자 연구 등에 대한 보조금)
 -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TIP : 미국기업이나 고등 교육기관의 혁신적 기술 연구에 대한 보조금)
 - Rural Business and industry Guaranteed Loans(농촌지역 발전, 기업 유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자금 대출)

다. 미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 연방 세법상의 세제 우대 조치

- 감가상각방법 : IRC에 의해 미국내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가속(할증) 감가상각 인정
- 배당소득공제 : 미국내 법인(자회사)이 외국법인(모회사)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총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
- Business Energy Tax Credit : 태양열에너지, 연료 전지, 풍력 에너지 등과 같은 에너지 시스템 투자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 Energy-Efficient Commercial Building Tax Deduction : 에너지효율 건물의 설비 투자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 Tax incentives in Renewal Communities (RCs) and Empowerment Zones(EZs) : 지역 주민 고용, 지역 공공 장비 업그레이드, 상가 건축 또는 재건축 등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에 대해 상당규모의 조세혜택 제공
- Foreign Trade Zones Boards : 미국의 경제 활동 활성화와 부가가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Foreign-Trade zone을 선정해 이곳에서의 무역 활동에 대해 세금공제를 포함한다 양한 혜택 제공
- Department of Energy Unsolicited Proposals : 美에너지국에 에너지 개발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 사업 계획 등을 제출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세금 공제 혜택 제공
- Renewable Energy Grants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 혹은 정부 보조금 수여
- Renewable Energy Investment Tax Credit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30%의 연방세 공제 혜택 제공

□ 미국은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한 조세지원은 각 주마다 다르며, 뉴욕주, 일리노이주, 텍사스주 및 캘리포니아주 등이 이와 관련된 제도가 존재함.

- 아래의 표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세지원이며, 외국인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및 신규진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해당함.
- 또한, 조세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표 18〉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조세지원제도

구분	지원제도	내용
뉴욕	투자세액공제 (Incentive Tax Credit)	■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액의 최대10%까지의 세액공제가 가능
	연구개발 세액공제 (R&D Tax Credit)	■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해서 9%의 세액공제, 신기술 분야에서의 사업시작이나 확대의 경우 종업원 한 사람당 약1000달러를 3년간의 세액공제
	매상세 감면	■ 생산설비(기계 등) 구입이나 연구개발시설의 취득·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연료·광열비에 대해서는 매상세를 감면
	부동산세 감면	■ 상업용 시설의 개발·확장·수선 장려를 위해 10년 동안 부동산세를 감면
	동산세 감면	■ 동산(과세대상이 되는 동력기계 등)은 유형, 무형에 관계없이 감면
	경제개발지구 세액공제	■ 경제개발지구(Empire Development Zone : EDZ)에서 요건을 갖춘 기업 또는 신규기업에는 10년간은 실질적으로 비과세해주고, 임금공제, 법인소득세 공제, 매상세 환급, 부동산세 감면, 감세 조치, 공공요금의 할인을 적용
캘리포니아	엔터프라이즈존 (Enterprise Zone)	■ 엔터프라이즈존으로 불리는 특정 산업진흥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대조치 대상의 설비를 구입시에 지불한 소비세를 연간 2000만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인정해줌. 임금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의 세액공제
	연구개발 세액공제 (R&D Tax Credit)	■ 과학 분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비 내부비용인 경우 비용의 15%, 외부비용인 경우 비용의 24%를 세액공제
	외국무역구 (Foreign Trade Zone)	■ 외국 무역구로 지정된 지역의 수입관세 감면
	기타 세액공제	■ 신흥시장 세액공제(New markets Tax Credit)와 영화/TV 제작 세액공제 등이 존재

자료 : www.ibfd.org

3. 영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가.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영국은 우수한 투자환경을 바탕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통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직접적인 세제지원보다 보조금 지원정책 위주의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으며,
- 지역선별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제도를 통해 지원대상지역에 투자하는 외국법인에 대해 현금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영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제도보다 보조금·규제제도를 완화하여 지원하는 형태로서 내·외국법인에 대해 동일한 조세감면이 이루어짐.

□ 1979년 외환관리법이 폐지된 이래 외국인투자를 포함한 국제 자본의 거래 및 이동이 완전 자유화되었음.

- 외국인투자를 관리하는 법규 및 규제사항이 전혀 없으며,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규 및 제도도 운영되고 있지 않음.
- 다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통계법이 운영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를 위해 대영투자유치국(IBB)을 두어 영국 홍보 및 지역별 외국인투자 유치기관의 업무조정과 과당경쟁 방지 업무 수행, 지방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해외 사무소 설치를 통한 유치활동 전개하고 있음.

나. 영국의 외국인투자 비조세지원제도

□ 고부가가치 분야나 영국이 앞서있는 산업분야(IT, 전자공학, 바이오 등의 하이테크산업, 자동차, 연구개발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체재허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으며, IT 등 전문직의 노동허가증 발급규제도 완화하고 있음.

□ Innovators Scheme이란 전자상거래 등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을 보유한 기업인/투자자에 대하여 이전까지 영국 입국에 필요한 자기자본이나 투자금액 등에 관한 조건대신 전자상거래나 그밖의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운영방법을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음.
 - 영국에서 2명 이상의 고용(풀타임)을 창출할 수 있을 것
 - 신청자는 해당 영국기업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것
 - 해당 수입이 발생하기 전까지 금전적으로 자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 입국후 최초 6개월동안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만한 자금을 갖고 있을 것

- 영국은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대출금 지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투자 보조금 지원

다. 영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영국정부의 별도의 조세지원보다 G20 국가 중 가장 경쟁력 있는 낮은 법인세를 유지하고 있음.
 - 영국은 2010년 법인세 로드맵을 발간하였고 이는 영국정부가 법인세 관련 정책을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목표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임.
 -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분명하고 지속적인 정책에 의거하여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복잡하고 불필요한 각종 법인세 면제 및 혜택을 줄이고 법인세 자체를 최소화하여 법인세 체계를 간소화하였음.
 - 기존 법인세율 23%를 2014년 4월 이후부터 21%로 낮추고 2015년 5월에 20%로 낮출 계획이며 이로써 영국은 가장 낮은 법인세 세율의 G20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임.
 - 또한, 기업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만 과세되고 각 지방에서는 지방세의 형태로 기업의 이익에 과세를 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지역과세(Territorial Tax) 시스템
 - 영국정부는 법인세를 전세계과세(Worldwide Taxation)에서 지역과세로 바꾸어 나가고 있음.
 - 이런 정책은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영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외국기업이 영국에 본사를 설립할 경우에 이점으로 작용함.
 - 지역과세시스템 도입은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세가 낮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기술관련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을 두고 있음.
 - 특허박스(Patent Box) : 영국정부에서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하고 혁신의 결과물이

영국에서 상업화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10% 적용하는 제도임.

- 특허박스의 법인세는 2015년 20% 보다 훨씬 낮은 세율임.
- 이 제도는 기업들의 R&D 결과물 상업화에 소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또한 외국기업들이 영국에서 상업화를 실시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함.

○ 연구개발 관련 조세 혜택

-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다양한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보유함.
- 기업별 특성에 맞게 다른 형태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혜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R&D 비용의 130%에 조세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은 R&D 비용의 225%에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창조산업 관련 조세 혜택

- 영화 제작시 발생한 비용의 25%에 조세 혜택을 제공하며 2007년 시작한 이후 2014년 3월까지 55억 파운드의 영화제작 투자에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편수로는 825편의 영화에 조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영국정부는 영화제작 관련 조세 혜택의 성공을 바탕으로 창조산업의 또 다른 분야인 애니메이션, 고품질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산업에도 조세 혜택을 도입하고 있음.

<표 19> 영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지원제도	내용
특허박스 (Patent 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10% 적용
R&D 비용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매출 및 자산 규모, 종업원수 요건을 갖추면 R&D비용을 공제 (단, 토지 및 주택의 구입비용은 제외) - 기본적으로 100%의 비용공제를 해주되,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기업은 추가적으로 30%, 중소기업은 125%를 더 공제해 주게 됨.
창조산업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등에 대해서 제작비용의 25%를 공제해주고 있음.

자료 : www.ibfd.org

4.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가.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 21세기 국가비전 달성의 산업개발 동인으로서 지식집약형 경제구조를 확립하기 위

한 첨단기술 도입, 선진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벤치마크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노력 강화

- 내·외국인 구분없이 동일한 지원혜택을 부여하며, 특정지역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은 없음
- 세법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음(2008년도 세법 개정 시 20% → 18%, 2010년도 세법 개정 시 18%→17%)

□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싱가포르 경제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1967년에 도입된 ‘경제확대 우대법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을 운영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아세안, 중국, 인도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제정목표로 두고 있음.
- 관련부처 장관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업 및 제품에 대한 조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선구자적 산업 및 서비스 : 2015년까지 세금 면제
 - 개발 및 확대 우대 정책: 20년 미만 기간에 대해 5% 이상의 세율 할인
 - 서비스 수출 : 최대 10년까지 세금 면제
 - 생산장비용 외채 : 세금 면제 또는 세율 할인
 - 기업투자 우대 : 손실에 대한 세금 공제
 - R&D 및 지적재산권 관리 허브 : 소득세 면제
 - 해외투자 우대 : 해외손실에 대한 세금 납부 연기

□ 이러한 인센티브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인센티브는 주로 4가지 사항 즉, ①총 사업비용 사업비용 (Total Business Spending), (Total Business Spending), ②투자금액 ③고용창출 ④비즈니스 활동의 종류 (마케팅, 지역본부, R&D, 제조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인센티브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동 프로젝트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판단하여 유연하게 결정하게 됨.
 - 예를 들어, 세금감면은 0% 부터 가능하며, 세금감면 기간 역시 5년, 10년, 15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도 가능

□ 싱가포르의 조세특례제도는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 국제기업발전국(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금융관리국(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및 해사급항무관리국(the Maritime Port Authority of Singapore)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제정 관리

- 특히 통상부 산하 외청인 경제개발청(EDB)에서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업무 주관, 기타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유치만을 규정한 특별법은 없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 법인설립 및 투자와 관련된 법을 따르게 됨.

□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인센티브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기업 투자에 대해 차이를 두지 않음.

- 신기술 및 신공정의 도입, 생산성 향상 등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는 아래와 같음.

- Land Productivity Grant (LPG)
- Precision Engineering Manpower Initiative
- Research Incentive Schemes for Companies
- Singapore Israel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Foundation (SIIRD)
- 인센티브 지급 조건은 인센티브별로 자세한 수혜조건이 지정돼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상가능 요소를 폭넓게 두고 있음.
 - 이익실현시점과는 무관하게 EDB로부터 인센티브 제공이 결정되는 사업개시 시점부터 법인세를 15% 또는 그 이하로 조세 감면함.
 - 외국인투자자와 해당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조세감면 및 보조금 등의 투자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수준 결정함.
 - EDB의 해당 산업담당관들이 작성한 산업분석, 기술적 우월성, 싱가포르 경제에 대한 공헌도 등의 종합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센티브의 수혜 여부 및 기간 등 조건을 결정함.
 - 투자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산업담당관이 판단한 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임.

□ 참고로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 예산안 발표에서 2015년까지 임금 보조금 지원제도와 법인세 환급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투자진출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적용됨.

- 임금 보조금 지원 : 2013~2015: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최대 월 급여 4,000 싱가포르달러

- 리를 한도로 총 인상분의 40%까지 지원하며 별도 신청 없이 매년 자동 지원
- 법인세 환급 : 최대 연간 30,000 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총 30%에 해당하는 법인세 환급해주기로 하였음.

나.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비조세지원제도

- 싱가포르는 조세감면이 주된 인센티브이나 사안에 따라 파격적인 현금 지원 또는 자회사인 EDBI(EDB Investment Pte Ltd)를 통한 지분투자 등 탄력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시행 중에 있음.

〈표 20〉 싱가포르의 보조금지원 제도

지원제도	조건	내용
연구 인센티브 (Research Incentive Scheme)	■ 싱가포르에 등록된 기업이 R&D 를 수행	■ R&D 센터 건립시 자금융통 (co-funding)
신기술도입보조금 (Initiatives in New Technology)	■ 신기술, 노하우, 신공정 등의 개발 및 도입관련 활동시	■ 신규설비 시 운전훈련비, 연구개발 훈련비 지원

자료 : www.ois.go.kr

다.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 업종별, 활동별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1〉 업종 및 활동별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업종	조세특례적용대상 사업활동	조세특례
제조 및 서비스 (Manufacturing/Service)	신규 제품 또는 공정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 본점 및 통할점 업무 물류 지적재산권 관리업무	조세감면, 경감세율 적용 및 기타 인센티브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준비금 준비금 및 공제제도 원천징수 면제
무역 (Trade)	원재료 등에 대한 무역업무	경감세율의 적용 준비금 및 공제제도
금융 및 재무 (Finance)	은행업 보험업 재무업	경감세율의 적용 및 원천징수 면제 준비금 및 공제제도

	펀드운용업	펀드에 대한 과세면제 및 펀드운용업무에 대한 경감세율의 적용
--	-------	-----------------------------------

자료 : www.ibfd.org

□ 싱가포르의 조세특례규정은 대부분 경제확장인센티브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 EEIA)과 소득세법(Income Tax Act: ITA)에서 규정하고 있음

- EEIA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조세특례규정은 아래와 같음
 - 선행기업에 대한 과세특례(Pioneer enterprise(section 6 of the EEIA))
 - 생산성향상 설비 투자를 위한 국외차입금에 대한 과세특례(Foreign loans for productive equipment)
 - 특정 사용료에 대한 과세특례(Tax concession on income from approved royalties(section 3 of the EEIA))
 - 투자준비금 (Investment allowance)
 - 해외기업 과세특례(Overseas enterprises(section 97 of the EEIA))
 - 기술개발 해외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Approved eligible investment companies)
 - 혁신 및 고성장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Enterprise investment incentive)
 - 연구개발 허브 과세특례(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hub)

□ ITA에서는 크게 과세면제(exemption), 소득공제(deduction), 경감세율(reduced tax rate)의 세 가지 유형으로 조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 주요 조세특례는 아래와 같음

- 과세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함
- 신설법인에 대한 조세감면(Tax exemption scheme for new companies)
- 소득공제: 특정비용에 대해 비용을 이중으로 인정하여 추가적인 세액절감효과를 제공
 - 무역박람회,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에 대한 관련 비용 이중공제 (Double deduction for expenses relating to approved trade fairs, exhibitions or trade missions, or the maintenance of overseas trade offices (section 14B of the ITA) and for overseas investment development expenses (section 14K of the ITA))
 -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 국내회귀 비용 등에 대한 이중공제(Double deduction for relocation or recruitment of overseas talent)

- 생산성 및 혁신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Scheme)
 -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Angel investors tax deduction (AITD) scheme)
- 경감세율적용: 특정사업 또는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반세율 보다 낮은 특별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시아 통화 운영 업무(Asian Currency Unit (ACU))
 - 증권사(Approved Securities Company)
 - 펀드운용업무(Fund management)
 - 해외투자자의 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한 소득(Income from funds managed for non-resident investors)
 - 본점업무(Operational headquarters)
 - 해외 위험에 대한 보험업무(Insurance and reinsurance of offshore risks)
 - 금융 및 재무 센터업무(Finance and Treasury Centre)
 - 벤처기업(Approved venture companies)
 - 국제거래기업(Approved Global Trading Company)
 - 전자상거래업(Approved Cyber Trader)
 - 본점 또는 지역 통할 본점 업무(International/Regional Headquarters Programme)
 - 국제원재료 거래기업(International commodity trading companies)
 - 국외리스(Offshore leasing)

□ 상기 조세특례제도 중 중요한 지원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2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지원제도	내용
법인세 등 감면, 면세, 면제	■ 상당한 규모의 자본투자를 수반하는 사업 및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사업 등은 신규산업으로서 인정되어 해당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적용)
	■ 기존법인 또는 신규사업 개시법인이 고부가가치관련 분야 사업확장으로 싱가포르 경제에 이익을 가져온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당해투자확장으로 인하여 증가한 소득에 대해 최고 5%까지 법인세 감면
	■ 생산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 실시로 몇 가지 요건을 갖춘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
	■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의 지역통괄서비스에 대한 인정소득(경영, 서비

	<p>스, 판매, 무역의 로열티 등) 증가분에 대해 15%의 경감세율을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혁신기술 또는 노하우 이전에 따라 해외로 지출하는 로열티나 기술 원조 비용 중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비용은 원천징수세 감면 ■ 벤처캐피털 활동 촉진을 위해, 정부가 승인한 벤처 캐피털펀드의 해외 배당 수입, 해외 이자 수입, 주식 매각이익과 관련한 소득 대해서는 10년간 감세 또는 면세(Venture Capital Fund Incentive) ■ 싱가포르에 등기된 법인에서 주식의 50%이상이 내국인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은 인정된 해외투자·프로젝트로부터 얻는 배당, 로열티, 금리, 프로젝트 수입 등에 대한 법인세 최대 10년간 면세(OEI : Overseas Enterprise Incentive) ■ 개척자기업에 대해 생산일로부터 5~10년간 소득세 면제
R&D허브 조세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허브 구축지원을 위해 싱가포르 또는 기타장소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요건 충족하는 외화소득에 대해 5년간 세금 면제 ■ 싱가포르에서 R&D 및 지적재산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은 5년간 해외원천소득의 로열티 및 이자수입 면세
금융허브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일정한 역외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또는 세율감면 ■ 금융기관의 신규 금융활동 개발을 위한 지출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이중 소득공제 허용 ■ 인터넷을 통해 행해진 역외(offshore) 거래에 의해 얻은 인정 소득(비거주자와의 거래)에 대해 10% 경감세율 적용(ACT : Approved Cyber-Trader Scheme)

자료 : www.ibfd.org

5. 대만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가. 대만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대만의 외국인투자는 국가안전, 공공질서 및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화학재료 및 제품제조업, 기본금속공업, 기계설비제조업, 육상운수업, 우편 및 택배업, 라디오 TV방송업, 금융중개업, 법률 및 회계업 및 운동, 오락, 레저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 대만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은 외국인투자조례, 화교 및 외국인투자 제한금지 업종리스트, 화교 및 외국인 투자금액 심사법 등이 있으며, 내외국인 상관없이 투자촉진과 관련한 법률은 산업혁신조례임.
 - 1991년~2009년 기간 동안 실시되었던 투자유치촉진제도인 산업고도화촉진조례의 투자

인센티브가 첨단과학 및 기술 산업과 대기업에 치중되어 전통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0년부터 산업혁신조례 도입하였음.

- 산업고도화촉진조례는 ①자가사용의 설비, 원료 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감면, ②제품 수출 또는 역무 제공에 대해 영세율의 물품세율을 적용, ③산업 고도화 촉진 조례 등의 세제지원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음.
- 반면, 산업혁신조례는 기존의 투자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법인세를 17%로 인하하고 중소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전반적인 지원제도 마련.

나. 대만의 외국인투자 비조세지원제도

□ 대만의 외국인투자인센티브는 조세지원과 비조세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조세 지원은 R&D센터 설립 지원제도와 기타 R&D 지원제도가 있음.

□ 외국기업이 R&D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 경비의 최고 35%까지 지원해주고 있음.

- 지원요건은 ①재무상황이 양호, ②신흥산업 또는 미래지향적이고 대만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선발, ③ 해당 연구개발프로젝트가 대만달러로 6천만달러 이상으로 기업의 자체준비금이 3천만달러를 초과, ④해당 프로젝트에 총투입인력은 4백명 이상, ⑤연구개발활동을 위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투입인력의 60%이상이 연구개발인력에 해당, ⑥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한은 3년을 원칙으로 함.

□ 외국인이 설립한 현지 법인인 경우 내국법인으로 간주되어 R&D센터 설립시 지원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 경비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있음.

- 지원요건은 ①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으로서 재무상황이 양호, ②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적, 통합적, 핵심적, 공통적 및 기초적인 기술을 개발 또는 ③주도형 신제품 개발 또는 ④ 혁신기술 응용 및 서비스 개발인 경우에 해당함.
- 지원규모 및 프로젝트 집행기한은 아래와 같음.
 - 일반사업(설립후 만5년 이상) : 지원금 신청전 3년동안의 평균 세전순이익 기준으로 차등지원함.
 - 신설사업(설립후 5년 이내, 단 바이오테크와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설립후 10년 이내) : 신청연도의 지원경비는 실질자본금의 40%한도내에서 지원하되 상한금액 규정(3년간 최고 3천만 대만달러)을 준수함.

〈표 23〉 지원규모 및 프로젝트 집행기한

단계	연구단계(1단계)	연구개발단계(2단계)
프로젝트 집행기한	최장 1년	최장 3년
지원 상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업체 : 최고 3백만 대만달러 ■ 다수업체 : 최고 5백만 대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별 총지원금액 최고 3천만 대만달러 (정책형 프로젝트의 경우 상한금액 제한없음)
지원 상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프로젝트 : 30% ■ 미래지향적이거나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 : 40% ■ 정책형 프로젝트 : 50%

<http://www.ois.go.kr>

- 가공수출지역 및 과학공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간편한 행정수속, 신속한 통관, 조세우대, 편리한 교통망, 정보통신 인프라, 양호한 치안상태 및 환경 등을 강점으로 부각시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음.

〈표 24〉 가공수출지역 및 과학공업단지의 입주 우대제도

지역	혜택
가공수출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로부터 수입한 기계설비, 원료, 연료, 반제품, 샘플 등의 수입관세, 물품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 상품, 용역의 수출 또는 단지내 입주업체에 판매한 기계설비, 원료, 연료, 반제품의 부가가치세 0% ■ 단지내 사업체의 자가사용상품 생산공장에 대해 건물세 50% 감면 ■ 단지내 신축공장 또는 건물취득시 계약세 면제 ■ 만 5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 반출시 관세 면제 ■ 외국기업의 100% 주식지분 보유 허용
과학공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로부터 수입한 기계설비, 원료, 연료, 반제품의 수입관세 면세(면세 수속, 담보, 보증 등 절차 불필요) ■ 상품, 용역의 수출 시 부가가치세 0% ■ 외국기업의 100% 주식지분 보유 허용 ■ 저금리대출(대출금액이 기계설비 구입 비용의 80% 이하 또는 총투자금액의 65% 이하일 경우 대출금 상한기한 최장 10년까지 허용) ■ R&D 장려금 지원(최고 500만 대만달러, R&D 프로젝트 경비의 50% 이하)

<http://www.ois.go.kr>

다. 대만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 대만의 외국인투자관련 조세지원은 R&D 투자, 민간참여 공공건설, 회사조직개편, 영업 및 생산을 위한 기술의 획득 등에 지원되고 있음.
- R&D 투자의 조세감면 비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R&D 지출비용의 15%를 초과하지 않으며 감면금액이 당해년도 납세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됨.
 -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R&D 내용이 업계 내에서 고도의 혁신일 경우에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만 경제부에서 각 분야의 학자를 초빙하여 구성된 예비심사 전담팀에서 기업의 R&D 기획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기업이 연구개발한 제품 및 기술이 자체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에 의해 제조 및 사용될 경우 합리적인 로열티 또는 기타 대가를 취득해야 함.
 - 조세지원 대상항목은 R&D 정규직 임금, R&D용 소모성 기기, 원자재, 샘플비용, 로열티 등의 전문기술 비용 등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음.
- 민감참여 공공건설인 경우 법인세를 5년간 감면해주고 있으며, 공공건설관련 지출 금액의 5~20%의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고 있음.
 - 이외에도 수입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 토지세, 건물세, 계약세의 감면, 주주의 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감면해주고 있음.
- 기타 회사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인지세, 계약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영업 및 생산을 위한 기술의 획득을 위한 로열티 지급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음.

〈표 25〉 대만의 FDI 조세지원제도

지원제도	내용
R&D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투자 지출 금액의 15%에 대해 투자 당년 법인세가 감면, 당년도 영리사업 소득 세금 30% 한도 ■ R&D 비용이란 신상품 연구개발, 생산기술 개선, 노무기술개선 및 제작 공정 개선에 지출되는 비용
바이오신약 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신약 회사가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에 투자·지출하는 금액의 35%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법인세액 공제

자유무역지대 입주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Z 내에서 사용되는 화물에 대해 관세·화물세·부가가치세·담배 및 주류세·담배제품의 건강복지기부금·무역진흥서비스비·항만서비스비 면제 ■ 또한 해외에서 반입하여 FTZ 내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관세·화물세·부가가치세·무역진흥서비스비·항만서비스비 면제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설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 5년간 법인세 면제, 주주의 투자공제, 민간기관의 투자공제, 수입관세 감면 혹은 분기납부, 토지세, 부동산세, 양도세 감면 등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

자료 : www.ibfd.org

6. 홍콩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가. 홍콩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홍콩은 철저한 자유경제 원칙에 입각하고 있어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부지제공, 임대료 인하와 같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엄격한 규제도 없음.
 - 홍콩 기업의 해외 투자는 물론 외국기업의 대 홍콩 투자에 대해 기초통계 조차 관리하지 않을 정도로 자본 출입에 대한 관리가 자유로운 편임.
 - 홍콩정부는 외국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국내기업과 차별 없이 동일한 조건 하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 자체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홍콩에는 ‘외국인투자유치법’이 없으며, 홍콩에 현지투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제조업종 투자시 환경보호문제와 관련된 것은 환경부와 사전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홍콩은 원칙적으로 투자에 있어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이 없으며, 아울러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투자제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우편, 철도, 수도 등 공익사업 분야
 - 위험업종, 공해업종 및 공중위생업종(홍콩정부관련 부서허가 필요)
- 홍콩은 IT, 문화콘텐츠 등의 기술 집약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술 집약적 상품 개발을 위한 R&D와 IT,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들을 Hong Kong Science Park, Inno Centre Center, Cyber port 등에 집중시켜 효율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나. 홍콩의 외국인투자 비조세지원제도

- 외투법인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지만, 홍콩투자유치기관 (Invest HK)이 현지 금융기관을 소개시켜 주고 있음.
 - 고객의 상당부분이 외국기업으로 이루어진 바, 외국기업으로서 얻는 금리 우대는 없으며, 해외자금조달 및 경기활성 수준을 넘어 아시아 허브를 지향하는 홍콩에는 이미 수많은 해외기업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부분의 투자기업이 외국기업이며, 기본적으로 홍콩은 모든 기업에 대해 자유경제원칙에 입각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음.

- 홍콩에는 별도의 경제자유구역이 없으며, 홍콩 전역이 자유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볼 수 있음.
 - 홍콩의 기업환경은 '철저한 자유 경제 원칙'에 입각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차별대우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규제 역시 없는 편임.
 - 전통적으로 홍콩은 무역거래와 가공무역산업에 크게 의존해왔으나, 최근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향하면서 고도 기술 집약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목적으로 조성된 과학기술단지에는 정밀 전자 기기, 사무자동화기기, 컴퓨터 관련 기기 등의 고도의 기술집약적 상품개발을 위한 R&D센터로 사용되고 있음.
 - 투자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지원하는 제도는 특별히 없으나,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인 IT,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들을 한곳에 집중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홍콩의 제조 및 서비스업의 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된 과학기술단지로는 Tai Po Industrial Estate(전통적인 산업 단지), Yuen Long Industrial Estate(전통적인 산업단지), Tseung Kwan O Industrial Estate(전통적인 산업 단지), Hong Kong Science Park (첨단기술 R&D센터), Inno Centre Center(첨단기술 R&D센터), Cyberport(IT·문화콘텐츠 사업 단지)가 있음.

다. 홍콩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 홍콩은 외투기업에게 제공하는 조세감면이 존재하지 않지만, 조세제도 자체가 매우 간단한 편에 속함.
 -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간접세는 존재하지 않고 직접세만 존재하며, 법인세율은 16.5%로 다른 국가와 대비하여 매우 낮은 법인세율임.
 - 또한, 홍콩 전역이 무관세지역이므로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품교역에 유리함.

7. 인도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가. 인도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부족한 국내 재원을 보완하고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투자 개방 및 투자환경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정부승인을 차츰 줄여나가 현재는 대부분의 산업군에 있어 정부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승인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정부승인이 필요한 산업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방을 단행하였음.
 - 예를 들어 통신부문의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선을 49%에서 100%로 조건부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용정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 상한선을 49%에서 74%까지 높였음(2013년 7월).
 - 또한 소매업에 대해서 일부 개방(단일 브랜드에 대한 100%까지 투자 허용, 멀티브랜드에 대해서는 51% 허용)이 단행하였음.
 -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영세기업 고유업종의 수를 줄이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하고 있음.

- 2014년 4월 인도 산업정책진흥위원회(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DIPP)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 정책안내에 따르면, 단일 브랜드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100% 허용을 유지하고 있어 외국 브랜드가 인도 시장에서 100% 소유권과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임.
 - 단, 100% 단일 브랜드 사업 투자 시 원료 및 제품 구입의 30%를 현지의 사업규모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영세 기업으로부터 구입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외투기업들이 인도정부에 현실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인도정부는 총 외국인투자 투자금액의 50%는 투자가 결정된 후 3년 내에 가공, 제조, 유통, 디자인 개선, 품질관리, 포장, 물류, 저장, 물류창고, 농업 생산 인프라 등 제반 인프라를 뜻하는 'Back-end Infrastructure'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장기적으로 소매 유통관련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승인은 정부 사전승인이 불필요한 자동승인과, 정부(외국인 투

자진흥 위원회 : FIPB)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FIPB 승인의 두 종류가 있으며, 대부분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장려 목적으로 절차 및 시간을 간소화 한 자동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FIPB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 투자는 아래와 같음.
 - 담배 제조
 - 전자 , 우주항공 및 방위 산업
 - 영세기업 고유3 업종(Small Scale Sector)으로 유보된 산업(24%) 지분까지는 승인 없이 투자 가능)
 - 이미 인도에 합작 투자, 기술 이전 .상표권 계약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투자, 기술 협력과 동일한 분야에서 신규 투자,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 업종별 정책 또는 지분제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인 경우
- 외국인투자 승인 절차는 자동승인 대상 투자의 경우 인도중앙은행(RBI) 지방사무소에 인도로의 송금 수령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식 발행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자동으로 투자가 승인이 됨.

□ 인도정부가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분야는 제조업 및 인프라 개발 관련 분야로 , 대부분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된 상태임.

- 대부분의 제조업은 외국인투자를 100% 허용하고 있으며 인프라개발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법인세 감면,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면제 및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대표적인 인프라 개발 분야는 발전(원자력 제외), 송전, 배전, 고속도로, 유료 도로, 교량, 항만, 호텔 및 관광, 도시 개발 프로젝트, 주택 건설 등임.
-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정부와 직접 협상이 가능하며, 이 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투자규모,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는 투기 도박, 복권 비즈니스, 대부, 주택 및 부동산, 소매 유통, 원자력 에너지 업종임.

- 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 , 주택 건설 등 일부 사업은 허용하고 있음.
- 인도는 각 업종별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투자 금지 및 허용, 승인 종류,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선 설정 등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음.

나. 인도의 외국인투자 비조세지원제도

-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은 외화 순취득 의무를 달성할 경우 입주할 수 있으며 각종 조세지원(관세, 법인세, 소비세, 서비스세, 중앙 판매세 등), 운영상의 지원(영세기업(SSI) 유보 품목에 대한 투자 상한선 및 산업 허가 면제, 수입 시 별도 허가 불요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인도 정부는 2000년 4월 특별 경제 구역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설립 및 입주 실적이 저조하자 특별경제구역법(SEZ Act 2005)과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동 법은 2006년 2월 발효되었으며, 특별경제구역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종래 입주 기업에게 수출 의무를 부과하던 것에서 5년 내 외화 순취득 의무만 달성토록 간소화
 - 법인세 감면 범위를 확대
 - 영세기업 고유 업종에 대한 투자를 허용
 - 자본재 등 수입 시 관세를 면제
 - 주요 운영상의 지원은 아래와 같음.
 -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100% 외국인 직접투자를 자동 승인
 - SSI(소규모기업)유보 품목에 대한 투자 상한선 및 산업허가를 면제
 - 수입 시 별도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음.
 - SEZ내 자체 통관시설이 이용 가능
 - 입주기업의 의무는 아래와 같음.
 - SEZ 입주기업은 제조, 무역, 서비스업에 종사 가능
 - SEZ 입주기업은 5년 내 외화 순취득(NFE) 의무가 있음.
 - 개발구 위원회(Development Commissioner)와 관세청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입주기업의 사업성과를 감시
 - 면세수입품목의 5년 이내 실사 의무가 있음.
- 100% 수출기반기업(EOUs, Export Oriented Units)이나 STP(Software Technology Park)를 이용한 인센티브도 가능하며, EOU는 특별한 공단에 입주해 있지 않아도 신청 및 지정이 가능함.
 - 단, 수출을 전제로 한다면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협력업체도 EOU를 승인 받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I)는 IT산업의 육성을 위한 독특한 제도로 인도

전역에 40여 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인도 IT산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한 바 있음.

-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에 입주한 기업이나 수출전용기업(EOU, Export Oriented Unit)으로 등록된 기업은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받게 되나, 다만 매출의 대부분을 수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됨.
- STP/EOU정책에 의한 지원은 200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될 계획이었으나 인도 산업경제부는 계속해서 관련 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전자하드웨어기술파크(EHTP)는 전자산업을 육성, 수출잠재력을 높이고 효율적 전자부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EHTP에는 관세면제, 수출 간주 혜택, 조세감면 혜택 등이 주어지게 됨.

- EHTP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규정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통상 2주내에 승인서가 발급됨.
- 정부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통신 IT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해야 하며, 통상 6주 내에 승인 결정이 이루어짐.
- 이들 기업의 외국인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00% 외국인투자 자동승인 대상이 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는 FIPB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인도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 인도 기업과 외국기업 간에 법인세율에는 차이가 있으며, 인도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인도 법인으로 간주되나, 지사, 프로젝트 사무소의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간주하고 있음.

- 외국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부담하는 법인세율이 더 높음.

<표 26> 인도의 법인세율

구분	세율	
	1억 루피 이상	1억 루피 이하
국내기업	33.99%	30.9%
외국기업 (지점, 프로젝트 사무소 포함)	43.26% (40% + 5%추가부담금 + 3%교육세)	41.2% (40% + 3%교육세)

<http://www.ois.go.kr>

- 수출 위주의 기업이나 특별경제구역(SEZ)에 입주해 있는 기업, IT 파크 등 특정 지역 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약 10년간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됨.
 - 이들 지역 또는 기업으로는 개별 공고된 특정주(notified States) 및 낙후지역(backward Districts) 입주 기업, 전자 하드웨어 테크놀로지 파크 (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s, EHTPs) 및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s) 입주 기업, 100% 수출기업 (Export Oriented Units, EOU) 및 수출 가공구(EPZ) 입주 기업,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SEZ) 입주기업 등임.
 -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SEZ)는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면세지역으로 지정 받아 무역활동, 관세, 조세 등에서 외국영토로 간주됨.
 - 본재, 원자재, 소비재, 예비품(spares) 등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 국내 시장으로부터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예비품 조달시 소비세(Excise Tax)를 면제함.
 - SEZ기업의 수출활동을 위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세를 면제하며, 수출제품에 대해서 서비스세를 면제
 - 수출이익에 대해 초기 5년간 법인세를 100% 면제, 향후 5년간 50% 면제, 추가 5년간 재투자 이익의 50%까지 면제
 - 제품의 주간(Interstate)이동 시 중앙 판매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는 주별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다르며,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인프라 시설(도로, 고속도로, 공항, 항만, 철도, 상수, 관개, 위생 및 하수설비 프로젝트 등)의 개발, 보수, 운영 관련 기업, 과학 및 산업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 Development Activities) 관련 기업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됨.

〈표 27〉 인도의 조세지원제도

구분	EHTP, STPI, EOU 입주기업	SEZ 입주기업
지원기간	설립 후 최장 10년	제조개시 시점부터 15년
법인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이익에 대한 100% 법인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5년간 수출이익 100% 법인세 감면 ■ 추가 5년간 수출이익 50% 법인세 감면 ■ 재투자이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최대 수출이익 50% 범위 내)
관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시 관세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시 관세면세
서비스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에 의해 사용된 서비스는 서비스세 면세 ■ 수출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세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이 사용한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세 면세 ■ 수출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세 면세

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재 및 원자재 구입시 소비세 면세 ■ S/W제작시 소비세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재 및 원자재 구입시 소비세 면세 ■ S/W제작시 소비세 면세
-----	---	---

<http://www.ois.go.kr>

8. 중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가.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중국은 개혁·개방경제의 일환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세율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실시해왔음.
 -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외국기업과의 차별을 없애고 특정지역 및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 하는 방향으로 선회
- 중국의 낙후한 지역에 법인을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세제지원 실시
 - 하이테크 산업의 법인에게는 감면세율 적용
 - 2008년 세계개편을 통해 우대세율을 적용받던 외국법인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두어 국내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외국기업 법인세(기업소득세)의 주요 변경 내용 아래 표와 같음

〈표 28〉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른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변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법정세율		33%	25%(업종불문) 하이테크기업: 15% 중소영세기업: 20%
우대세제	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특구 외자기업 및 국가급 개발구 생산형 외자기업 : 15% ■ 주요도시 생산형 외자기업 : 24% 	폐지 (기존 수혜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의 이행기간을 부여)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형 외자기업에게 2년간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 3년간 일부감면 	
	반감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형 외자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기간 종료 후에도 50%의 경감세율을 적용 	폐지

자료 : www.ibfd.org

나. 중국의 외국인투자 비조세지원제도

- 베이징시는 일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으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함.
 - 수정안에서는 베이징에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인 중국 내 등록자본금액을 실 납부액 기준으로 종래 3,000만 달러였던 것을 1,000만 달러로 완화함.
 - 또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의 경영범위에 수출·입, 내수소매, 물류배송, 아웃소싱 서비스 등을 추가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가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정안은 2009년 1월 1일 이후 베이징시에 신규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한 지역 본부로 등록자본금이 1억 위안(약 US\$ 1,616만) 이상인 경우 3년에 걸쳐 등록자본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 다국적기업의 베이징 주재 지역본부에 대해 사무실 임차료 관련 첫 해 30% 지원을 포함하여, 총 3년 간 연속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체건물 건축 또는 사무실 건물 구입시에는 m²당 1,000위안(US\$ 161.6)의 보조금을 지원함. 단, 임차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조금 수혜기간에는 시설을 임대, 전대 혹은 용도 변경할 수 없음.
 - 2009년 1월 1일 이후 베이징에 신규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한 지역본부 및 그 연구개발(R&D)센터가 자체 건설 또는 구매하는 사무용 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2009년부터 연간 영업수입이 처음으로 1억 위안(약 US\$ 1,616만) 이상에 달한 지역본부에 대해 영업수입의 규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011년 12월 상하이시는 외국기업 지원정책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금 구조 최적화, 외국인투자방식 다양화 및 관리체제 개혁 심화 등을 추진하였음.
 - 이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출알선, 산업개방, 외국인심사제도 개혁 등의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관리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1) 첨단기술

-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15%의 경감된 기업소득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핵심 지적재산권을 보유할 것

- 제품 혹은 서비스가 국가에서 중점 지원하는 첨단기술영역 범위에 속해야 함
- 과학기술인원은 총 직원수의 일정 비율을 차지해야 함. (ex)다련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과학기술 인원이 총 직원수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주요 연구개발인원은 총 직원수의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비용이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해 함
- 첨단기술제품 또는 서비스의 소득이 기업 총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함

(2) 집적회로 설계 기업

□ 집적회로 설계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경감된 기업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감된 기업소득세율 적용
 - 폭이 0.8 μ m 이하인 집적회로 제조기업은 첫 1~2년은 기업소득세 면제, 그 후 3~5년 기간은 25% 법정세율을 적용한 기업소득세 중 50% 면세로 2017년까지 적용됨.
 - 폭이 0.25 μ m 이하인 집적회로 제조기업 혹은 투자액 80억 위안 이상인 제조기업은 인정확득 후 15%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 받음. 첫 1~5년은 기업소득세 면제, 그 후 6~10년 동안은 25% 법정세율을 적용한 기업소득세 중 50% 면세로 2017년까지 적용됨.
 - 신규 설립된 집적회로 설계기업은 인정 획득 후 2017년 12월 31일 이전, 이윤발생 연도부터 혜택기간으로 정함. 첫 1~2년은 기업소득세 면제, 그 후 3~5년은 25% 법정세율을 적용한 기업소득세 중 50% 면세로 2017년까지 적용됨.
-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특례 내용연수의 적용
 - 기업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고정자산 혹은 무형자산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고정자산 혹은 무형자산으로 정산하며 감가상각기한은 최대 2년까지 축소 가능
 - 집적회로 제조기업의 생산설비는 고정자산 감가상각기한이 최대 3년까지 축소 가능

(3) 기술양도,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 기술양도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세 면제 및 기업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 제공

- 영업세 혜택정책 상세 내용
 - 회사가 기술양도나 기술개발업무 혹은 관련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업무 진행 시 발생하는 소득은 영업세를 면제함.
 - 도면이나 자료로 제공하는 기존 기술이나 개발성과 관련 영업세 면세범위는 관련

수익 및 비용을 포함.

- 바이오기술 제공 시 포함된 미생물균종표본이나 동식물신품종은 영업세 면세범위에 속함.
- 샘플이나 설비로 제공하는 기존 기술이나 개발성과 관련, 영업세 면세범위는 샘플 및 설비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음.
- 기업소득세 과세특례
 - 중국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5백만 위안화이하의 소득금액은 기업소득세가 면제되며, 5백만 위안화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12.5%의 특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이전 등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는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관련 기술적 자문 용역, 교육용역 등을 포함하나 기술 이전 이후 사후적인 업그레이드 서비스, 기술적 자문 용역 서비스로 인한 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4) 서부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 중국의 지역투자 현황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 대부분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 촉진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중부, 서부 지역의 외국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51%, 21.42% 증가하여 동부 지역(0.11%)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부와 중서부지역간의 외국인 투자 격차가 해마다 점점 좁혀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중서부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정책의 하나로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한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국 신장(Xinjiang)지역에 새롭게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2년간 면제하며, 이후 3년간은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경감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5) 상하이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조세지원

- 중국정부는 2013년 9월 18일부터 2~3년간 시험적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운영하기로 하였음.

-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함.
 - 비화폐자산의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5년간 납부를 유예
 - 피고용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특정기계장치 또는 장비의 수입에 대해 증치세 및 영업세 과세특례의 적용
 - 자유무역지구 내의 금융리스회사의 자회사를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6) 기타

- 중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형영세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공업기업은 연간 과세소득액이 30만 위안 이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100명 이하, 자산총액은 3000만 위안 이하여야 함.
 - 기타 기업은 연간 과세소득액이 30만 위안 이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80명 이하, 자산총액은 1000만 위안 이하여야 함.
 -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 과세소득액이 6만 위안 이하인 소형영세기업의 기업소득세는 소득의 50%를 과세소득액으로 계산하며 20% 법정세율을 적용함.

9. 일본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가.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를 위한 별도의 외국인을 우대하는 세제가 있는 것은 아님.
 - 다만, 각 지방정부별로 자율적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음.
- 대일투자유치에 역점을 두는 중점도시는 치바, 후쿠오카, 히로시마, 카와사키, 기타큐슈, 코베, 교토, 나고야, 오사카, 사이타마, 삿포로, 센다이, 요코하마 등의 경우 별도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음.
- 외국인투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진출이 가능하며 사후신고를 원칙으로 함.
 - 그러나 일본 정부가 별도로 정한 일부 업종은 사전신고를 하거나 사전허가를 받아야함.
 -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은 국가 안보 및 OECD 자본자유화 규약에 따라 개방

이 유보된 업종으로 핵연료 제조업, 항공기 제조업, 무기 제조업, 농림수산업, 석유업, 피혁제품 제조업 등이 해당됨.

- 사전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은행업, 보험업, 가스 및 전기업, 증권업 등임.

나. 일본의 외국인투자 비조세지원제도

□ 외국인투자에 대한 행정지원은 아래와 같음.

- 자금조달 지원 :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에 의한 자금조달 지원(자본금 3억 엔 이상의 주식회사 대상)
- 특허출원 조기 심사 : 특허출원 심사/심리를 신속화(통상 약 22개월 → 약 2개월)
- 특허 출원료 경감 : 특허/발명 관련 심사 청구료 및 특허료를 50% 경감
- 투자절차 간소화 : 규제대상 업종에 대한 대내 직접투자 등의 사전신고 심사 기간을 단축(통상 30일 → 2주)
- 비자심사 신속화 : 근로 예정 외국인의 비자 심사를 신속화(통상 약 30일 → 약 10일)

□ 채무보증의 경우 특정 대내투자사업자(외국자본 비율이 1/3을 초과하고 설립 8년 이내인 자회사)는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해 10억 엔의 차입금액을 채무보증 받을 수 있음.

- 보증기간은 설비자금의 경우 원칙 10년 이내(3년 거치),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이내(3년 거치)임.
- 이외에도 외국기업 및 외투기업은 일본정책 투자은행의 융자 제도를 이용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음.
 - 일본의 대일 액세스 촉진사업(외자지분 1/3 이상인 기업이 일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일 투자기술 노하우를 통해 일본산업의 고도화, 산업창출, 고용증대에 공헌하는 사업)의 경우 정책금리를 이용하면 융자 비율은 50% 이상이 됨.
 - 대일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인터내셔널스쿨과 같이 대일투자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학교 등 외국어 교육기관)의 경우 정책금리Ⅱ를 적용하며 융자비율은 50%가 됨.

□ 고도의 능력 및 자질을 보유한 외국인 인력 유치에 촉진하기 위해 평가 포인트 합계가 일정점수 이상인 인력을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출입국관리상 우대 조치를 취함.

- 지방정부 중 요코하마시의 경우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아시아 기업에게는 건물임대료의 6개월 분(한도액 300만 엔)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환경·에너지, 의료·건강, IT, 전문 서비스업, 기타 사업 서비스업,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새로 설치하는 사업소 등에서 대표 외에 직원이 2명 이상일 것
 - 공장·창고 등 물품판매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점포·음식시설 등을 제외
 - 시내에 본사, 지점, 영업소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없을 것

다. 일본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 오키나와 현에는 3가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있어 법인세 과세소득의 40% 공제 등을 일본에서 유일하게 국세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며, 국내외 기업 상관 없이 입주 가능함.
 - 국세 우대조치 외에도 지방세 우대조치나 고용, 투자에 대한 각종 조성금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임대공장이나 인큐베이팅 시설도 정비되고 있음.
 - 국제물류거점 산업집적지역, 정보통신산업 특별지역 및 금융업무 특별지구가 이에 해당함.

10.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가.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말레이시아는 1986년 투자진흥법, 1967년 소득세법,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및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의해 세제상의 직·간접적인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이들 법은 제조업, 농업, 관광업(호텔포함) 및 승인된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환경 관리 활동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 부문에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제조 활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합작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내 심각한 노동 부족으로 노동 집약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

라 고부가 가치 또는 자본집약산업의 집중 유치를 지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이 RM 55,000 미만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 산업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조업 허가나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다만 30%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MTS (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가 15% 이상인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의 권장 활동과 하이테크로 지정된 분야의 프로젝트(MSC 등)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는 과거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의 한도는 수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1998. 7. 31부터 제조 부문에의 신규 투자, 투자 확대 또는 다변화 투자에 대한 지분 참여를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는 수출 비중에 관계없이 100% 지분을 소유 할 수 있게 되었음.

- 말레이시아 회사가 생산 능력과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이 포장, 플라스틱 포장, 플라스틱 사출 주조 컴포넌트, 금속 스탬핑과 금속 조립, 전기 배선, 인쇄 및 철강 서비스 센터와 같은 특정 활동과 제품은 지분 제한 지침이 적용되었으나 2003. 6. 17부터 모든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를 전면 자유화하였음.
- 제조업 외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70%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일부 업종에 대해 지분을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음.
-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비스업에는 현지인 지분 조건이 남아 있음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대형 유통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부미푸트라 지분 30%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법률 서비스는 100% 현지인 지분만 가능하고, 건설업의 경우 상시 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지분 7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업은행의 경우 현지인 지분 30%가 되어야 은행영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나.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 비조세지원제도

□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국민의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음.

- 투자보장 협정의 주요내용은 국유화 및 몰수로부터의 보호, 국유화나 몰수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보상의 보장, 과실송금의 자유로운 이동, 투자분쟁 시 1966년 말레이시아가 가입한 투자분쟁 해결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의 보장 등 임.
- 외국인투자촉진과 보호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후원 하

에 재정된 투자분쟁해결 협약을 1966년 비준하였음.

- 이 협정은 국가간의 투자 분쟁 시 워싱턴의 국제부흥개발은행 본부 건물에 소재하는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를 통해 조정 및 중재할 것을 정하고 있음.

다.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 세계상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이며, 세계상의 간접적인 인센티브는 수입 관세, 판매세 및 국내 소비세의 면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 인센티브가 있음.

- 제조부문, 농업부문, 생명공학 산업, 관광산업, 환경관리, 에너지 절약,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 이용, 자체소비를 위한 재생가능 에너지 발생, 연구개발, 의료기기 산업, 교육 훈련,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 해운 및 운송업,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MSC), 정보통신기술부문, 지식기반 활동, 제조업 관련 서비스, 사업운영본부 등

□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는 개척자격(Pioneer Status) 부여와 투자세공제(ITA, Investment Tax Allowance) 혜택이 있음.

- 개척자격과 투자세공제 자격은 부가가치, 사용기술 및 산업간 연계정도와 같은 특정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자격이 있는 활동과 제품을 권장활동 또는 권장제품이라 칭함.
- 개척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간 소득세의 부분감면 혜택을 받음. 법정 소득액(총소득에서 수익적 지출액과 자본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감면 기간은 생산일(생산수준이 생산 능력의 30%에 달한 날)로부터 5년간임.
- 개척자격 부여와 투자세가 공제되는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 권장지역인 펠리스 주,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켈란탄주, 테렝가누 주, 파항 주, 그리고 조호르 주의 머싱 지역)에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는 5년간 법정소득액에 대해 100% 세금이 면제되는 개척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 개척자격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함.

□ 기업은 개척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투자세 공제를 받는 기업은 최초의 공제가 가능 자본적 지출(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된 공장, 기계, 설비 및 기타 장비 등 지출 관련)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 가능함.

-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사에서는 이 공제액을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까지를 상계할 수 있으며,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할 수 있음. 상계 후 잔존액, 즉 법정소득액의 30%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함.

- 권장지역, 즉 펠리스 주, 사바 주, 사라와 주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의 경우 이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는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100%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전액을 상계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아래와 같은 장소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본사(operational headquarter)
- 대표 또는 지역통할 사무소(representative and regional offices)
- 조달센터(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res)
- 지역통할 배부센터(regional distribution centres)
- 재무관리센터(treasury management centres)
- 라부안 금융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말레이시아 정부는 라부안 금융 센터(Labuan Financial Centre) 입주기업에 대해, 순소득의 3% 또는 2만링깃의 정액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또한 입주기업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비롯한 기타 조세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지원하고 있음.

1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내·외국법인의 조세제도를 비교한 결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율에 차이를 두고 있는 국가는 인도뿐임.

- 인도의 내국법인 법인세율이 32.445%(또는 33.99%), 외국법인 법인세율은 42.024%(또는 43.26%)으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외국법인이 인도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으로 간주하고 있음.
- 과거에 중국은 외국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과잉투자, 조세회피 및 내국법인의 성장지연 등의 문제로 동일한 법인세율을 2008년 이후 적용하고 있음.
- 다만, 낮은 법인세율은 외국법인의 투자유인이 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싱가포르(17%), 대만(17%) 및 홍콩(16.5)임.
- 영국은 G20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인하할 예정임.

〈표 30〉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내·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비교 1

(적용연도 : 2014년)

구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싱가포르	대만	
내국 법인	법인세율	누진세 10% (2억이하), 20% (2억초과 200억이하), 22% (200억초과)	연방세 최고세율 35%, 주세 최고세율 12%, 주에 따라 다름	21% (23%:’13년, 20%:’15년), 20%:소기업 (300,000파운드 이하), 30% (북해석유가스개발, 다만, 일정소득이하 19%)	17%	17% 과세소득이 TWD 120,000이하인 경우 (10%의 최저한세 적용)
	과세소득	전세계소득 과세	전세계소득 과세	전세계소득 과세	국내소득 과세	전세계소득 과세
	양도소득 등에 대한과세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일부 부동산 등의 처분에 따른 소득에는 추가 과세가 있을 수 있음	일반소득과 동일한 과세	사업소득으로 과세, 관계기업주식 처분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 적정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대한 과세이연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과세 내국법인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은 0% 세율 적용
	이중과세 방지 규정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세액공제방식)
외국 법인	누진세 10% (2억이하); 20% (2억초과 200억이하); 22% (200억초과)	미국내 사업관련 소득 연방세 최고세율 35%, 주세 최고세율 12%, 주에 따라 다름	21% - 고정사업장인 경우 (23% 2013년, 20% 2015년), 20% -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17%	17% 과세소득 TWD 120,000이하인 경우 (10%의 최저한세 적용)	

구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싱가포르	대만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과세 (내국상장주식 양도소득비과세)	미국내 활동법인 또는 미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지점세	조약에 따라 다름	30%	없음	17%	0%
배당	20% (22% 주민세포함)	30%	없음	없음	20%
이자	20% (22% 지방소득세 포함), 14% 국공채 및 회사채	30% (일반), 0% (은행예금 및 포트폴리오이자)	20% (일반), 0% (은행예금 및 EU채권, EU 회사관련 EU이자 및 사용료)	15%	20% (일반), 15% (국공채이자)
사용료	20% (지방소득세포함 22%)	30%	20% (일반), 0% (EU 회사관련 EU이자 및 사용료)	10%	20%
기술용역 수수료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30%	0%	법인세율로 과세	20% (사전특별승인을 얻은 경우 3%)
경영관리 수수료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30%	0%	법인세율로 과세	20%
조세지원제도	외국인 직접투자, 중소기업	개업비용, 조직구성비용, 연구개발비, 오염통제시설, 국내제조활동, 석유가스활동, 감가상각 대상자산	연구개발, 혁신기업, 톤세제도, 특허박스제도	재무서비스분야, 초기투자기업, 연구및개발, 지정투자	연구투자 세액공제,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자료 : www.ibfd.org

〈표 3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내·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비교 II

(적용연도 : 2014년)

구분	홍콩	인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내국 법인	16.50%	30%; (소득금액이 INR 10백만을 초과하는 경우 5%, INR 100백만을 초과하는 경우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SC)) 2% 교육세(EC) 및 1% 이차고등교육세 (SHEC) 추가부담 세액을 고려하는 경우 유효세율은 32.445% (5% SC) 또는 33.99% (10% SC)	25%; 20% 저소득회사에 대한 특례세율(내국법인만 적용가능)	25.5%; (중소기업의 소득금액이 8백만엔 이하인 경우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15%, 그 이후 19%),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특별재건 법인세율은 10%	25%
과세소득	국내소득과세	전세계소득과세	전세계소득과세	전세계소득과세	국내소득과세
양도소득 등에 대한과세	비과세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납세자사업의 특성에 따라 특별규정 적용	사업소득으로과세	사업소득으로과세	비과세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다 보유회사의 주식처분 등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규정 적용)
이중과세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구분		홍콩	인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방지 규정					
외국 법인	법인세율	16.5%	40%; (소득금액이 INR 10백만을 초과하는 경우 5%, INR 100백만을 초과하는 경우 10%의 추가세율을 적용(SC)) 2% 교육세(EC) 및 1% 이차고등교육세 (SHEC) 추가부담세액을 고려하는 경우 유효세율은 42.024%(5%SC) 또는 43.26%(10%SC)	25%	25.5%; (중소기업의 소득금액이 8백만엔 이하인 경우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15%, 그 이후 19%),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특별조건 법인세율은 10%	25%
	주식의 양도소득 에 대한 과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지점세	비과세	비과세 (배당지급법인에게 15%(SC, Ec, SHEC를 포함하여 16.995%)의 조세부과)	10%	20%; 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을 수취한 경우 2013년까지 7% 그 이후 15% 20%;	없음

구분	홍콩	인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2013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재건 소득세 2.1%적용	
배당	비과세	20%(INR10백만~100백 만의 이자에 대해서는 SC, Ec, SHEC를 포함하여 21.012%,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1.63%)	10%, 국채:0%	20%(일본내 사업영위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15%(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이자); 20%;2013년1월1일부터2 037년12월31일까지 특별재건소득세 2.1%적용	15%
이자	4.95% (이익의 30% x 법인세율)	25% (INR10백만~100백만의 이자에 대해서는 SC, Ec, SHEC를 포함하여 26.265%,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7.037%)	10%	20%; 2013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재건소득세 2.1%적용	10%
사용료	비과세	25% (INR10백만~100백만의 이자에 대해서는 SC,	비과세	20%; 2013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10%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는

구분	홍콩	인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Ec, SHEC를 포함하여 26.265%,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7.037%)		특별재건소득세 2.1%적용	비과세)
기술용역 수수료	비과세	25% (INR 10백만~100백만의 이자에 대해서는 SC, Ec, SHEC를 포함하여 26.265%,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7.037%)	비과세	0%	10%(특별소득분류)
경영관리 수수료	국채 0%	15%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이자)	0%	법인세율로 과세	20%
조세지원제도	고부가가치 제조업, 국공채, 재보험업, 역외뮤추얼펀드	연구개발업, 미네랄오일생산, 항공 해상 운송, 호텔, 병원 발전 제조	고도신기술, 국공채, 승인받은 농업, 어업, 임업, 환경보전프로젝트, 기술이전, 승인받은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서부지역 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 벤처캐피탈에 대한투자, IT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설비, 중소기업의 컴퓨터장비 및 소프트웨어	초기투자, 투자세액감면, 재투자 감면, 본사, 지역통합점, 국제적 물류센터, 이슬람 자본, 벤처캐피탈

자료 : www.ibfd.org

- 법인세 대상 과세소득의 범위를 전세계소득 또는 국내소득으로 하는지 여부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한 투자유인이 되는데, 과세소득의 범위를 국내소득으로 한정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적극적인 투자유인이 될 수 있음.
 - 현재 싱가포르, 홍콩 및 말레이시아가 국내소득에 한정하여 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외국인투자의 규모는 매우 큰 편에 속함.
 - 최근 영국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소득을 전세계소득에서 국내소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유치를 위한 장려정책의 일환임.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조세지원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주로 입지지원, 보조금 또는 대출금 등의 현금지원, 행정처리 등의 간소화 등의 기타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 내외국법인에 차등을 두지 않고 지원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외국인투자 장려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입지지원과 보조금지원 등이 있으나, 내외국법인을 차등을 두지 않는 편임.
 - 영국은 외국인투자자의 체제허가 등의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전자상거래 등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규모보다는 사업계획서 등의 요건을 제시하게 하였음.
 - 싱가포르는 내외국법인 구별 없이 연구개발센터 자금지원 및 신기술도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대만은 외국법인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 경우 최대 35%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외국인이 설립한 현지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센터 설립시 요건충족시 최대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가공수출단지 및 과학공업단지를 지정하여 외국기업의 행정처리, 치안 및 정보통신 인프라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홍콩은 별도의 비조세지원은 없으나 홍콩 전체가 자유무역지역으로써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한 규제 등이 존재하지 않음.
 - 인도의 경우 SEZ라는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운영상의 지원, 산업허가 등의 면제 및 수입시 별도 허가 면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중국내에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외국기업에 대해서 자금지원, 특허출원 조기사, 특허출원료 경감, 투자절차 간소화 및 비자심사 간소화 등이 있음.

-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산업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 및 금융거

래지원 등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제도가 보편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 결과 역시 과거의 외국기업 또는 외국자본에 대한 우대조치 성격이 강했던 조세지원제도에서 특정 지역 및 특정 기술에 대해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지원 방향의 변화가 나타났음.
 - 무차별적인 외국기업이나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보다 자국에 유리한 산업이나 기술을 선별하여 유치
 - 특정지역에 각종 규제나 제재를 완화하고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법인을 유치
 - 중국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과거 무차별적인 외국자본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 등을 하는 정책방향에서 특정지역 및 산업에 한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실시
 -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법률 등이 이러한 성격에 해당된다 할 것임.

-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인도 및 싱가포르 등의 몇몇 국가에서 외국법인만을 위한 조세지원, 보조금 및 현금지원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는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 게임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높은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음.
 - 싱가포르는 투자유치기관인 EDB가 협상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유치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현금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유치가 높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특징은 법인세의 부담이 매우 낮으며,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접근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정책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각국의 투자정책목표는 각국이 처한 사회, 경제, 정치적 배경과 매우 관련이 높음.
 - 영국의 경우 과거에는 사양산업으로 인한 실업구제를 위하여 투자정책목표의 최우선순위를 고용창출과 낙후된 지역경제 개발에 두고 있었으나, 특허박스란 제도를 도입하여 영국정부에서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하고 혁신의 결과물이 영국에서 상업화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 또한, 영국은 보조금 지급을 강력하게 그리고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투자입지로서 매력

도를 높이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투자입지 측면에서 저임금 및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국내 고부가 가치산업의 육성 및 수출증대를 꾀하는 정책을 시행
-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는 세제감면위주인 조세인센티브가 주류라 볼 수 있으며 특히 발달된 금융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매우 큰 장점임.

□ 외국인투자유치는 선진기술이전 및 전수, 고용창출 및 경쟁을 통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 등 무역과 더불어 국가경제에 다양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니만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하며,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우수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DI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특정 지역 및 분야에 대한 투자일 경우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세제지원의 혜택을 주어 해당 지역 활성화 및 선진기술 습득과 이에 따른 고용창출을 꾀하고,

- 또한 FTA 체결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금융법률·회계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M&A형 투자 등 신규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투자인센티브 마련 필요할 것임.

□ 또한, 산업기술뿐만 아니라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 고도의 기술 또는 높은 수준의 노하우를 가진 외국인경영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V. 외국인직접투자 과세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사항들: OECD 보고서로부터의 시사점

- OECD에서는 2001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외국인직접투자 과세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음.
 - 이 보고서들에서 OECD는 외국인직접투자자와 조세와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이에 따른 각국의 조세경쟁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본 절에서는 2007년 OECD 보고서의 Chapter3 Taxation of Inbound FDI- Policy Consideration and Perspectives를 요약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과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1.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효익

-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하여 국내소득이 늘어나고 늘어난 국내소득이 임금이나 급여를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이전되고 또한 이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정부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는 고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기도 하고 국내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추가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추가적인 고용을 간접적으로 창출하기도 함.
 - 정부는 근로자들의 급여나 임금에 대해 과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며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대한 배당이나 사용료에 대해 과세하거나 재산세 등의 다른 세금들을 과세함으로써 재정수입을 얻음.
 - 이러한 효과는 순수하게 추가되는 것이어야 하며 기존의 소득을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됨.
- 가장 직접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직접적인 고용과 국내기업에서의 대체인력 고용 등을 통해서 국내 소득을 증가시킴.
 - 이러한 고용효과는 완전고용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음. 완전고용상태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은 전체 고용을 증가시키지 못하며 국내기업의 기존 고용 인력을 단지 이동시킬 뿐임.
 - 다만 추가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기업보다 더 높은 임금이나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국내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따라서 고용의 순증가

가 없더라도 외국인직접투자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만일 외국인직접투자가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이어진다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국내소득이나 총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함.
 -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이나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한 고용증가만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후생을 증가시켰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만일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하여 국내기업이 밀려난다면 외국인투자자로 인한 이익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송금되어지는 만큼 국내소득은 감소되는 것임.

- 이러한 고용효과 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외부효과로서 이전효과(spillover effect)를 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원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가 경제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가 하는 것들이 있음.
 - 이러한 외부효과는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인적 자원의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임.
 -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기업의 경쟁을 심화시켜서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줄 수도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의 효익은 투자의 형태나 투자유치국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외국인직접투자의 금액만으로 그 효익을 판단할 수는 없음.
 - 기존 국내기업의 합병이나 취득을 통한 투자보다는 국내에는 없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또한 조세감면과 같은 외국인직접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만을 목적으로 국내자금이 외국인직접투자자로 들어오는 반복투자(round tripping)를 유인하며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아무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함.

- 외국인직접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다른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투자유치국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증가된 국내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다른 세金的 인상 없이도 재정수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이렇게 재정수입을 증가시킬지의 여부는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한 다른 분야에서의 비효율이나 왜곡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로 예상되는 여러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 각국의 정부는 외국인직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음.
 - 이로부터 국가 간에 조세경쟁이 격화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세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
 - 그러나 이와 함께 조세와 투자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반응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2. 외국인직접투자 과세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

가. 핵심고려사항과 상충관계

- 비록 외국인직접투자는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 조세부담을 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규정과 방법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정책적 고려사항과 제약조건들을 감안해야 함.
 - 여기에는 투자유치국의 재정수입,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가 사이에서의 공평성 확보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조세경쟁과 이에 상응하는 효율성 문제가 포함됨.
- 일차적인 고려사항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임.
 - 이는 국내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이전에 안전망으로서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함.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들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도로,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를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
 -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처럼 지역 특유의 이점을 향유하고 있다면 국내기업과 동등한 세금을 부담해야 함.
- 재정수입 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저소득층에 대해 불균등하게 부과되는 소비세와 같은 다른 세금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 공평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또한 투자모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투자유치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재정수입이 투자유치국에서 투자모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국내투자자가 소유하는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소유하는 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쟁의 공정성 확보에도 중요함.
 - 즉 이를 통해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이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받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음.

- 이렇게 재정수입이나 공평성 확보 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조세경쟁으로 인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낮추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음.
 - 특히 자본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워 외국인투자자들이 여러 투자유치국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의 세금에 대해 민감해지고 투자유치국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별도의 조세감면이나 일반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유인을 받음.
 - 최근 들어 이러한 국제적인 조세경쟁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나. 외국인직접투자 과세에 대한 두 가지 이론적 입장

(1) 조세경쟁이론(tax competition theory)

- 외국자본의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며 국내 노동의 공급은 비탄력적임을 가정함. 이런 상황 하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최적 상태임.
 - 만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면 이는 균형상태에서 한계자본비용을 낮추어서 자본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서 노동 한단위당 자본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동대가 즉 임금은 상승하며 결과적으로 국내소득은 증가함.
 - 자본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서 노동공급은 비탄력적이므로 만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과세하게 되면 이는 국내 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져서 투자소득 과세로 인한 세금 증가를 임금 하락으로 인한 소득세 감소가 상쇄하게 됨.
 -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직접 과세하는 것이 생산효율의 감소를 방지하는 최적의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만일 노동과 자본의 소유가 일치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소득분배 면에서도 최적 상태임.

-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조세경쟁이론 하에서도 모든 경제적 이익을 완전하게 과세하지 못한다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2)신경제지역이론(new economic geography theory)

- 자본이동에는 거래비용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본공급은 최소한 일정한 구간 내에서는 비탄력적이고 사업집중효과(business concentration effects)가 존재한다고 가정함. 이런 가정 하에서는 앞선 조세경쟁이론 하에서의 결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거래비용은 자본이동성을 제약하며 만일 거래비용이 하락하면 자본이동성이 증가하고 최적 세율은 낮아짐. 이런 측면에서 본 이론이 반드시 조세경쟁이론과 상반되는 것은 아님.
 - 사업집중효과가 사라지면 최적 세율은 낮아짐.
 - 사업집중효과는 산업별로 다를 수 있는데 따라서 세율 차이가 입지선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산업을 구분하지 않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왜곡된 결론에 이르게 됨.
- 자본과 자본소유주가 동시에 이동한다는 가정 하에서 사회적으로 최적 세율이 외국인직접투자를 과세하는 최적의 세율임.
 - 자본과 소유주가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이동한다는 가정은 소규모 기업이나 기술이나 숙련도와 같이 인력에 내재된 자본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가정이 될 수 있음.
 - 자본소유주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의 대가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최적 세율은 사회적인 최적 세율임.
- 만일 자본과 자본소유주가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자본이동성이 높아지면 사업집중효과가 증가하여 자본입지선정에서 세율이 미치는 영향이 감소함.

다. 효율성 판단과 관련한 고려사항들

-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이전효과(spillover effects)를 들 수 있음. 이전효과란 외국

인투자기업으로부터 국내기업이 얻을 수 있는 노하우 등의 가치를 의미함.

- 앞선 이론검토에서는 이전효과를 무시하였음.
-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얼마나 이전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의 효익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여부에 대한 효율성 판단도 어려움.

- 조세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상응하는 이전효과를 확인하고 측정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소득에 미치는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것이 효율성 판단의 가장 큰 문제임.
-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세부담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추정하거나 일반적으로거나 특수한 조세지원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들이 따르게 됨.

□ 많은 실증연구에서는 투자유치국의 조세감면에 대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정의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탄력성 추정치의 편차는 매우 크고 투자유치국의 조건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짐.

- 또한 투자유치국의 조세부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반응은 비선형 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와 투자유치국 조세부담 간의 선형관계를 가정한 모형을 통해서 추정된 탄력성 추정치는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줌.
- 여기에 보다 큰 어려움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이전효과를 측정하는 것임.

□ 요약하자면 정부는 국내 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가정 하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오직 세수손실이 국내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주어져야 함.

- 그러나 많은 경우에 투자유치국의 조세지원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를 확인하거나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져오는 고용창출이나 이전효과나 세수 증대 등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움.
- 외국인직접투자가 순 국내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므로 국내소득 증가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
-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소득에 미치는 불확실한 효과는 효율성 판단이나 정책적 고려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가져옴.

라. 우발이득에 대한 처리

- 효율성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조세감면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우발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임.
 - 이는 조세지원을 받은 외국인직접투자 중 일부는 조세지원이 없어도 어차피 투자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임.
 - 다른 말로 하자면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조세지원을 제공받고 증가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모두 증분투자는 아니며 이들 중 단지 일부만이 조세지원 때문에 투자된 것이라는 사실임.
- 실질적인 증분 외국인직접투자와 우발이득을 누리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 이는 사업 유형별로, 혹은 국가별로 혹은 어떤 조세지원을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 또 다른 우발이득으로는 투자모국에서 취하는 우발이득이 있을 수 있음.
 - 투자모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투자유치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 조세지원을 제공할 경우, 이 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투자모국에서 추가로 징수하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우발이득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추정하기 어려움. 그 이유는 외국인투자자들 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기 어렵고 이를 안다고 하더라도 개별투자자들의 상황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초과인지 미달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마. 조세지원 유형별 효율성 고려사항들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조세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미 외국인직접투자는 바람직한 것이며 투자유치국의 조세부담은 사업비용으로서 조세부담이 높은 경우에는 조세부담이 낮은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 조세지원이 외국인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호적인 조세지원은 입지선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분야에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존재함.

- 투자유치국에서 조세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세제를 입법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업별로 관리되는 별도의 규정을 이용하기도 함.
 -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내 과세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세법의 적용을 고의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있음.

- 조세지원 유형에 따른 효율성 판단 사항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조세지원 유형의 장단점을 고려하는 것임.

- 조세지원 유형 중 하나로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조세감면이나 신규 직접투자에 대한 일부 감면과 같은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명백하게 목표로 삼는 조세지원이 있음.
 - 이러한 조세지원 유형은 대상이 아닌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조세감면이 적용됨으로써 생기는 재정손실이 크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이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만을 겨냥한 조세지원은 관리비용만을 추가로 일으키면서 남용 가능성에 항상 노출된다는 단점을 가짐.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세지원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비하여 국내투자가 불리해지는 형평성 문제를 가져옴.
 - 이러한 불공평성에 대한 인식은 자발적인 납세이행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이러한 납세불이행 인식이 국내투자자들의 세무계획을 부추기고 동시에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많은 감면을 허용함으로써 과세기반이 취약해지는데 이는 또 다시 개인소득세와 같은 다른 세금의 세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또 다른 조세지원 유형은 외국인직접투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로열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것임.
 -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면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 부채나 지분에 대한 해외공급자들이 받는 세금인하가 다시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들 자산이나 자본에 대한 취득원가가 낮아짐. 이는 국내와 외국인직접투자자들의 경쟁상 위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원천징수세율 지원이 다시 환원된다면 경쟁상 위치가 개선되고 이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시키고 국내 소득을 증대시킬 것임.
 - 이런 상황에서 핵심은 과연 투자자들에게 대한 조세지원이 어느 정도 환원될 것인가임.

- 부채에 대한 해외공급자들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인하를 이자비용 인하로 환원하며 이에 따라 국내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조달비용이 인하됨. 그러나 로열티의 경우에는 환원 정도나 효율성 문제가 약간 달라짐. 만일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원천세 인하가 로열티 인하로 환원되지 않음. 그러나 무형자산 시장이 경쟁적이지 않다면 원천세 인하는 로열티 인하로 환원되어서 경쟁상 위치를 향상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함.

- 외국의 무형자산이나 자본의 공급자들이 모기업과 같이 특수관계자들이라면 원천세율 인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서 투자모국에 우발적인 재정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원천세율 인하는 외국납부세액을 감소시켜 투자모국의 추가적 과세를 불러오고 이는 투자모국에서 우발적 재정이익을 받게 됨.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원천세율 인하는 모기업에게 이익을 안겨 줌.
 - 모기업과 해외자회사와의 거래에서 원천세율 인하는 완전하게 기업의 비용을 낮추어주는 않지만 투자의 순수익률을 향상시켜 입지선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로열티나 이자에 대한 원천세를 낮추게 되면 관계회사 간 이익송금 방법이 배당에서 로열티나 이자로 전환됨. 물론 이렇게 송금방법이 전환되는 것은 단순한 원천세만의 문제는 아니며 투자모국과 투자유치국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야 함. 그러나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손실도 중요한 정책고려사항으로 볼 수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세지원의 문제나 한계점을 감안하여 외국과 국내투자에 모두 혜택을 주는 조세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위한 조세지원에서 나타나는 왜곡이나 납세불이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막대한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함.
 - 기본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가져오는 재정손실은 특히 국내 자본축적이 크거나 과세기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커짐.

- 많은 국가에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나 국내투자를 대상으로 법

인세율을 인하하여 왔지만 막대한 재정손실로 인하여 현재는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음.

- 이에 비하여 신규투자자에 대해서만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기존자산에 대해서는 과거의 상각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기존 자본에서 나타나는 재정손실을 억제할 수 있지만 자산 유형을 구분하여 감가상각을 한다는 복잡성을 일으킴.
-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한 자산에 대해서만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며 이는 외국인직접투자자에 대한 유인이 됨.

□ 법정 법인세율 인하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막대한 재정손실 외에도 또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즉 법인세율만 인하하고 소득세율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법인세와 소득세율 차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을 불러오게 됨.
- 즉 납세자들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전환하고자 할 것이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것인데 이는 또 다른 경제적 의사결정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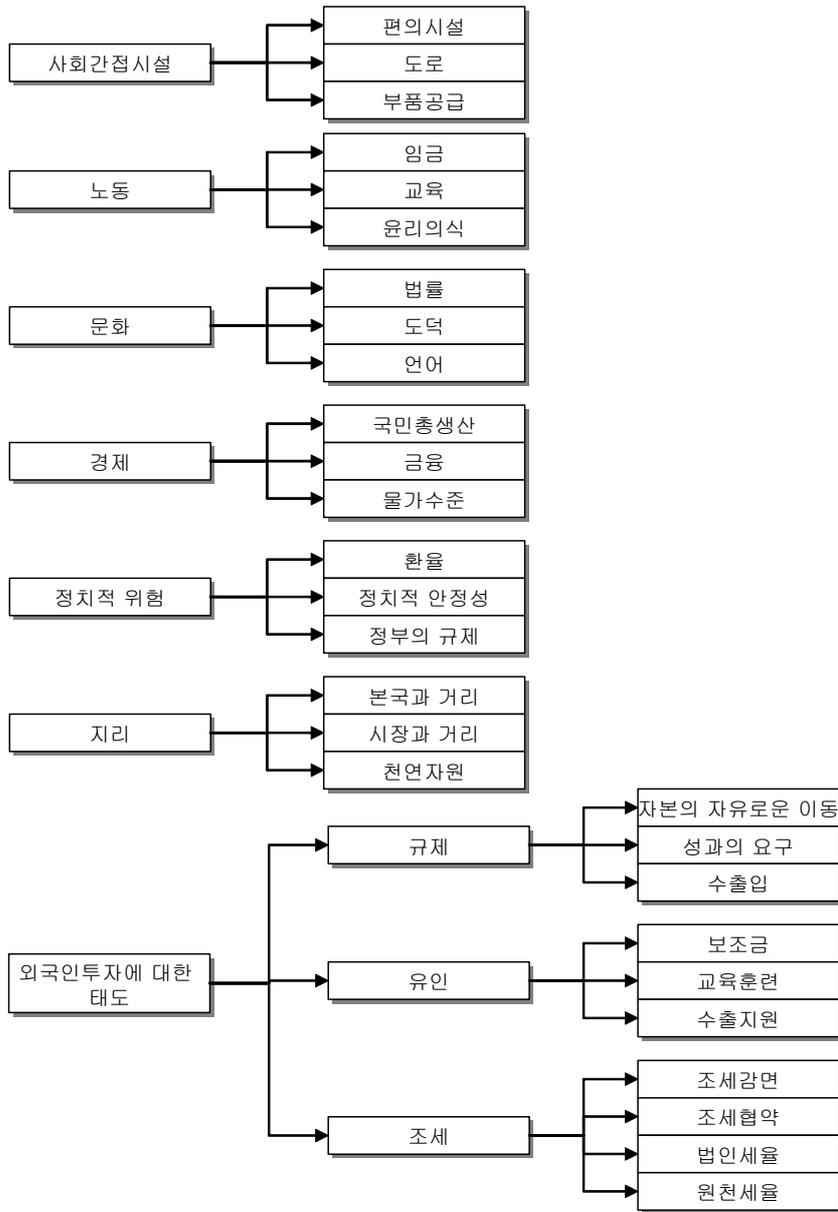
3. 투자유치국의 세제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관련성에 대한 관점

가. 외국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조세 및 비조세요인들

□ 조세가 외국인직접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비조세요인들의 중요성도 함께 평가되어야 함.

- 외국인직접투자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는 거시경제적 안정성, 우호적인 법률 및 행정체계, 시장규모와 연결될 사업기회 등이 있음.
- Single and Kramer(1996)에서는 이러한 조세와 비조세요인을 <그림 2>에서와 같이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음.

〈그림 2〉 외국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조세요인과 비조세요인



Source: Single & Kramer (1996), 121쪽

- 한 국가만을 보면 법인세부담 보다는 다른 비조세 요인들이 보다 중요할 수 있음. 비조세요인 중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는 산업별로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
 - 자동차 산업에서는 비록 법인세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비조세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음.
 - 이런 경우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은 회사의 입지선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지 못함.

- 종종 유효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입지선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유효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련성을 수립하기에는 부족함.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세금 민감성에 대한 일반적인 불확실성

- 정책담당자는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유치국의 조세지원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민감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은 일단 조세부담에 대한 측정치가 불확실하고 지역별로 조세와 비조세 요인을 결합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조세 민감도는 국가별로, 투자가별로 혹은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기 생겨나는 것임.
- 법정세율이 낮아지면 유효세율도 낮아지고 이에 따라 낮은 법정세율과 낮은 유효세율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또 다른 견해는 실제로 실현된 평균 유효세율이 입지선정에서 세금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세부담 측정치라는 것임.
 - 평균유효세율은 예상되는 미래 유효세율이라는 관점에서 유용하고 또한 기업의 세무계획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세율보다 유용하다고 함.
 - 그렇지만 특정 지역으로 소득을 이전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조세절감액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법정세율도 중요한 측정치임.
- 또 다른 복잡한 요인은 국내 세법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프로젝트나 투자가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임.
 -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 대규모 직접투자를 수행한 외국인투자자가 연금기금이었던 것을 알았다면 이 기금은 어떤 조세정책의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임.
 - 이는 세금이 입지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다른 비조세요인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임을 보여줌.
 - 또한 투자자들이 속한 투자모국에서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세금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함.

- 비록 대부분 관심은 법인세에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세만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유일한 세금이 아님을 주의해야 함.
 - 예를 들어 에너지 세금이나 근로소득세 등이 법인세보다 더욱 중요한 국가들도 있음.
 -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다양한 세무계획 기법을 통해서 이미 법인세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부담액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이 중요해지기도 함.

다. 지역특유 이점과 과세 가능성

- 앞선 선행연구에서 보면 어떤 연구에서는 투자유치국의 과세와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강한 관련성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 그렇지 않았음.
 - 이를 통해서 몇몇 큰 국가에서는 유효세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국가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지역특유 이점이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충분히 과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낮은 법인세율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음.
 - 그렇지만 세율이 높으면서도 사회간접시설과 공공서비스가 잘 갖추어지고 사업환경에 우호적인 특성을 갖춘 국가에서는 이런 특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와의 조세경쟁을 수용하지 않음.
- 동시에 인구도 적고 시장규모도 적으면서 GDP 대비 세금 비율이 높은 작은 국가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전반적인 조세부담은 높을지 모르지만 사업에 부과되는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업상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음.
- 일부 정책담당자들은 그들 국가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 아니라 숙련된 노동력이나 큰 국내시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음.

라. 투자유치국 기초 환경의 중요성

- 광범위한 동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핵심은 투자유치국의 세율이 낮은 것만으로는 취약하거나 매력이 없는 투자환경을 만회할 수 없다는 것임.
 - 취약한 사회간접시설이나 투자조건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연되는 수많은 사례가 존재함.
 - 세금은 단지 많은 요인 중 하나일 뿐이며 취약한 비조세 조건을 상쇄할 수 없음.

4. 국제적인 조세경쟁에 대한 대응

- 자본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경쟁적인 조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지면서 OECD 국가들의 조세경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관심은 저세율 국가나 저임금 국가로 자본이 투자되거나 이동하는 사례로부터 촉발된 것임.
 -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 입지선정 결정에서 많은 요인들 중 낮은 조세부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다른 국가에서 법인세율이 낮추게 되면 경쟁적으로 우호적인 조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하고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저세율 국가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저비용 국가로 이전할 것이라는 유권자의 우려를 반영한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짐.

가. 유사한 국가와의 비교

- 조세경쟁은 시장규모나 경제발전 정도가 유사한 이웃 국가와 사이에서 벌어짐. 직관적으로 투자의 결정요인들이 유사한 경우에는 조세요인의 중요성이 훨씬 커짐.
 - 외국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유사하다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핵심 조세요인은 투명한 조세제도와 우호적인 조세협약 등과 함께 갖추어진 낮은 법정세율과 한계유효세율임.
 - 외국인직접투자에 조세가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유사 지역 내에서 다른 요인들 수준이 얼마나 비슷한가에 달려 있음.

나. 국제적 조세경쟁의 증가

- 외국인직접투자와 세금 간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OECD 국가들은 직접투자가 계속 세금을 민감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한 국가의 사례를 들자면 한때는 경쟁력이 있었다고 생각되던 이 국가의 조세제도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다른 국가들과의 조세경쟁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음.
 - 이 국가의 2002년 조세제도 검토보고서에서는 정부가 법정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며 과세기반을 넓혀서 세수를 충당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음.
 -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가 비조세요인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법정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또 다른 국가에서는 최근 격화되는 조세경쟁으로 인하여 잘 정비된 규정이나 재량적인 조세지원과 광범위한 조세협약 네트워크로 한 때 누렸던 경쟁상 이점이 손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전에 이 국가가 누렸던 경쟁상 이점은 다른 국가에서 조세협약을 늘려가고 투자유치국에서 제공하는 재량적인 조세지원을 제한하고 과세 투명성을 높이려는 국제적 시도에 의해 상당부분 사라졌음.
 - 이 국가에서 모든 세법 변경은 외국인직접투자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많은 다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음.

다. 조세경쟁에 대한 여러 대응방안

- OECD 국가들에서 조세경쟁에 대한 여러 대응방안들을 관찰할 수 있음. 여기에는 기본적인 법정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 또 다른 형태의 일반적인 조세지원 그리고 이동성이 높은 활동이나 산업 혹은 시장실패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조세지원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됨.
-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목표로 조세지원의 비효율성,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막대한 재정손실 등을 고려해서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법정 조세부담을 그대로 놓아둔 채

투명성 증대와 같이 세제상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도 함.

(1) 법정 법인세율 인하

- 많은 조세정책담당자들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정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순이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이며 과세기반 확대와 맞 물려서 효율적이며, 국내과세기반에 대한 세무계획 압력을 줄임.
 - EU에서는 회원국들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우호적인 입법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서 이런 추세는 국가들이 법정세율 인하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함.
 - 그러나 동시에 법정 법인세율 인하는 재정손실이 막대하고 소득세와의 불공평성을 가져와서 조세차익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투자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세법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법정 법인세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
 - 일부에서는 법정 법인세율이 입지선정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조세요인이라고 하기도 함.
 - 경제적 지대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에게는 지대에 대해서 얼마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지가가 투자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됨.
 - 최근 어떤 국가에서 수립된 위원회에서는 국제조세와 관련된 해당 국가의 위치를 검토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정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보고하기도 함.
 - 이렇게 법정 법인세율이 중요하다는 인식에는 유효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유일하게 입력되는 조세요인이 법정세율이라는 견해가 반영되어 있음.

- 많은 국가에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정 법인세율을 최근 인하하고 있음.
 -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앞으로 법정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을 공시하기도 함.
 - 어떤 국가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정책을 공표하면서 특정 분야의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된 부분적인 조세지원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함.
 - 많은 국가에서 법정세율을 인하하면서 동시에 재정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과세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예를 들어 법정세율을 인하한 어떤 국가에서는 대신에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지원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정 법인세율 인하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님.
 - 일부에서는 법정세율을 인하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이전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자본이 이동하는 기준이 되는 법인세율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기도 하고 명확하지도 않다는 것임.
 - 또 다른 문제점은 소득세율 인하를 수반하지 않은 법인세율만의 인하는 개인소득을 법인소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인을 일으킨다는 점임.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정 법인세율 인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우발이득을 가져다주고 이에 따라 재정손실이 커진다는 것임.

(2) 세율 인하 외에 다른 형태의 일반적인 조세지원

- 일부에서는 투자자들은 통상적으로 법정세율만을 고려한다고 주장하지만 투자자들이 유효세율을 계산할 때 법정세율 외의 다른 세법규정들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도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법정세율 외에도 최종적으로 유효세율에 영향을 주는 많은 세법 규정들이 존재하며 이들 규정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어떻게 입법하는지에 따라서 법정세율 인하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음. 이러한 일반적인 조세지원 사례는 아래와 같음.

□ 세법규정을 국제적 규범과 일치시킴

- 한 국가의 세법규정이 다른 국가와 다를 경우에는 비록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유효세율을 달라질 수 있음. 조세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율을 인하는 것 외에도 세부적인 세법규정을 국제적인 규범과 일치시키는 것도 필요함.
- 한 국가의 예를 들면 항공기에 대해서 35년의 감가상각기간을 두고 있다가 대부분 국가의 규정에 맞추어 20년간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세법을 변경함. 이러한 변경은 세율 변경 없이 당해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효세율의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특정분야에 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일반적 조세지원 규정을 마련함.

- 일반적인 조세지원 규정의 한 가지 형태로 이동성이 높은 산업분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세법규정을 만들 수 있음.
- 벨기에를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ACE(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형태의 세제는 이러한 유형의 조세지원 형태로 볼 수 있음. 이런 형태의 세제는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EU의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특정한 산업분야에 주로 혜택이 제공되는 것임.

(3) 외국인직접투자만을 위한 조세지원

- 조세경쟁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추기 보다는 일부 국가에서는 세수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목표가 명백하게 설정되어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함.
- 이동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감안하면 운송, 영화, 수출이나 본점과 같이 이동성이 높은 활동들만을 대상으로 조세지원을 설계할 수 있음.
 - 영화산업은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가장 흔한 예임. 영화산업을 조세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정책적 이유는 일단 이동성이 높아서 투자유치국 세제에 민감하기 때문임. 또한 영화산업은 다른 민간산업 부문에 영향이 없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줄 수 있는 산업임.
 - 또 다른 예로는 비거주자가 완전하게 소유한 국내기업이 해외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것인데 이는 본점을 유치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국내시장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서 수출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유효세율을 낮추어 주기도 함.
-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 국가별 특유의 산업정책에 따라서 특정산업에 대한 별도의 조세지원이 수행되기도 함.
 - 국가별로 조세지원으로 인한 세수손실보다 해당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한 효익이 더욱 크다고 기대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있을 수 있음.
- 시장실패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 많은 국가에서 시장실패가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들을 조세지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
 - 예를 들어 연구개발 활동은 정부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나 최적 수준에 못 미치게 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활동임.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외국인직접투자만을 위한 별도의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효율성 문제와 한계점들이 존재함.
 - 시장실패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활동들을 측정하고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조세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됨.
 - 정부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조세지원을 해주는 것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갖는다는 시각도 존재함.
 - 또한 조세지원은 일단 도입된 후에는 축소하기가 어려움.
 - 이렇게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세지원의 문제점들 때문에 국내외 투자를 구분하지 않는 일반적 조세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 EU에서는 국가별로 외국인투자와 국내투자를 차별하는 조세지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별로 시행되는 특별경제구역 등을 승인하기도 함.

(4) 세율 변동 없이 장애요인들의 제거

- 적어도 법정 유효세율을 변동시키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도 조세경쟁에 대한 또 하나의 대응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 유효세율을 불필요하게 감소시키는 것은 정책적 목표와 상충을 일으킬 수 있음.
 - 법정 유효세율을 낮추는 것은 정책목표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재정수입목표, 조세부담의 부문 간 공평성 확보 등이 있음.
 - 조세경쟁에 대응하지 말자는 의견은 일단 투자유치국의 조세부담이 낮추는 것은 자본을 유치하거나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니며 다른 정책목표에 위배된다는 전체를 갖고 있음.
 - 많은 국가들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조세지원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투자의 사결정은 궁극적으로는 조세요인이 아닌 사업상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 하에서 부문이나 지역 혹은 투자가별로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세법의 복잡성을 낮추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조세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중임.
 - 이 방안은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대신에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우선적으로 철폐한다는 의미임. 어떤 국가에서는 특별한 정부기구를 설치하여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자국의 세법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함.

□ 과세의 투명성 확보와 불확실성 제거

- 과세투명성과 확실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식이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끌고 있음.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 재량적으로 주어지는 조세지원은 투자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기업들은 보다 단순하고 보다 투명한 시스템을 원하며 정상적인 과세시스템 하에서 과세받기를 원하고 있음.
- 또 다른 예로서 과세의 불확실성도 투자의 장애요인이 됨. 이런 측면에서 최근 EU 국가들에서 일부 과세권이 'EU에게 이전된 것은 과세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조세협약이나 상호양해절차(MAP)는 국가 간 투자에서 확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 많은 국가들에서는 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국가와의 조세협약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많은 OECD 국가의 담당자들은 그들은 투자나 거래가 발생하기에 앞서서 과세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석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들을 만들고자 노력한다고 함.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인 시행령 등을 도입하기도 함.
- 어떤 국가에서는 예규를 제공하는 전통을 갖고 있기도 함. 비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예규는 세법이나 시행령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으로서 세법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세법 규정을 만들지 않고도 세법의 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이 국가의 과세당국에서는 국제 조세 이슈나 비거주자 과세문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나 관리절차들을 도입하고 있음.

5.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 외국인직접투자 과세와 관련한 또 다른 주제는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인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음.
 - 조세회피는 근본적으로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에 의하여 생기는 것으로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과세기반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음.
 - 투자유치국에 납부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세무계획은 이제는 통상적인 경영전략이 되고 있으며 투자유치국의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들은 이제는 공공연하게 홍보되고 있고 접근이 점차로 용이하게 됨.

가. 조세회피 대응의 중요성

-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는 매우 중요한 세금임. 법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개인소득 과세의 전단계이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인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기능

을 갖기도 함.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임.

- 한 국가에서는 투자를 장려하면서도 동시에 적정 수준의 조세수입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조세회피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세체계의 능력을 훼손하게 됨. 이에 따라 세법상 허점을 막고 조세회피 기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개혁에 착수하고 있음.
- 이러한 방법에는 기존 세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과 가공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것들이 있음.

나. 법정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한 세무계획 유인

- 세무계획은 투자유치국의 상대적인 법정세율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채나 이전가격을 이용하여 세율이 낮거나 없는 지역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임.
 - 법인세율 차이에 의하여 조세회피가 기회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외국인직접 투자를 유치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지만 이는 또한 조세회피 방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일단의 OECD 국가들에서는 조세회피 압력을 염두에 두고 법정 법인세율을 인하하기도 하였음. 최근 한 국가의 사례를 보면 국내 법인세 과세기반에 대한 조세회피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인세율을 5% 인하하기도 하였음.

다. 법정 법인세율 인하의 한계점

- 법정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조세회피 가능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재정손실이 크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며 우발 이득을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아무리 법정 법인세율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하고 이들 지역 간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회피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는 점임.
 - 물론 법정세율이 낮아질수록 조세회피의 기회는 감소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세율을 낮추어야 조세회피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 없음. 어떤 조세정책담당자는 법정세율 5% 내외의 차이로는 조세회피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함.
 - 그러나 민간 기업에서 조세회피에 투자되는 재원은 과세당국이 기울이는 노력에 비하여 훨씬 크기 때문에 세율 인하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함.

라.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 OECD 국가들은 세무계획 기법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과세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무계획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보완하고 있음.
 - 많은 국가들에서는 일반적 조세회피 규정과 구체적인 조세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전가격과 과소자본세제가 포함됨.
 - 어떤 국가에서는 OECD 지침에 따라서 이전가격 규정을 만들면서도 과소자본세제와 같은 국내 과세기반 보호 방안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이는 비록 이런 규정이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이전가격에서는 비정상가격의 입증책임이 과세당국에 있고 적용상 복잡성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이전가격 규정을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 어떤 국가에서는 납세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재조치들과 함께 엄격한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음.

- 이전가격과 마찬가지로 과소자본세제를 운용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음.
 - 과소자본세제에서 어느 정도의 부채비율을 적정한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갖기가 어려움. 예를 들어 적정 부채비율은 산업마다 다를 수 있음. 또한 개별 기업마다 적정 부채비율은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은 과소자본세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됨.
 - 또한 부채를 계산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생긴 부채나 자산과 상계되어야 할 부채 등 여러 가지 실무적 계산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두 과소자본세제 운용을 어렵게 만들.

- 이전가격, 과소자본세제, 일반적 조세회피 규정 등은 모두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다른 규정들과 조화를 이룰 때 효과적임.
 - 이러한 보완규정들에는 정보의 공시,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과의 정보 공유와 협조, 위험이 높은 영역이나 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프로그램 등이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노력은 조세회피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앞서기가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가장 최신의 조세회피 사례를 연구하고 이러한 조세회피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6. OECD 보고서 정책고려사항의 시사점

□ OECD 보고서의 개념적 틀은 아래와 같음.

$$\frac{\Delta DI}{\Delta LOSS} = \frac{\Delta FDI}{\Delta LOSS} \times \frac{\Delta DI}{\Delta FDI}$$

ΔDI :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의 증분 국내소득

$\Delta LOSS$: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인한 증분 세수손실

ΔFDI : 외국인직접투자의 증분

□ 위 식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세지원의 목표는 조세지원으로 인한 세수손실(LOSS)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소득 증대를 최대화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임.

- 이는 다시 두 개의 항으로 분해될 수 있는데 하나는 세수손실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를 나타내며 다른 하나는 외국인직접투자 대비 국내소득 증가를 나타내는 것임.
- 첫 번째 항인 $\Delta FDI/\Delta LOSS$ 는 조세지원에 따른 세수손실을 통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얼마나 유치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러 정책수단을 고려하여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두 번째 항인 $\Delta DI/\Delta FDI$ 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외생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투자유치국의 경제여건 등에 의하여 주어지게 됨. 따라서 두 번째 항은 내생적인 정책수단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여러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 OECD(2007)에서는 우선 $\Delta DI/\Delta FDI$ 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소득을 증가시키는 경로는 고용창출이나 기술이전 등이지만 이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투자를 위축시키거나 국내기업을 축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소득에 대해 부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이론상으로도 일관되지 않음. 이러한 효과는 국가마다 경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산업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함. 만일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소득을 증가시킬지 여부가 불분

명한 상황이라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OECD(2007)에서는 $\angle FDI / \angle LOSS$ 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수단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세지원수단에는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법정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과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실시하는 방법, 그리고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조세감면 등이 있을 수 있음.
- 외관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집행되는 조세감면이 세수손실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투자 위축이나 조세 회피와 같은 부작용을 감수해야 함.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지원의 효과가 국내로 이전되어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국내 이전효과 없이 세수손실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 조세지원으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인 효과는 분명하지 않음.

□ OECD에서는 조세지원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서 외국인투자기업 혹은 투자자나 투자모국에 대해 우발이득(windfall gain)을 가져다 줄 여지가 있으며 또한 조세회피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음

- 우발이득은 조세요인이 아닌 비조세요인이 외국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인 경우에 발생함. 즉 외국인직접투자가 조세요인과 무관하게 결정되었는데 조세지원이 추가될 경우에 이는 세수손실에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자 혹은 투자모국에 우발적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의미임.
-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세지원은 조세지원만을 목표로 하는 조세회피를 불러올 수 있음. 예를 들어 사실상의 국내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의 형식을 갖추는 투자라든가 아니면 순환반복투자로 실질적인 자본 증가 없이 지속적인 조세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음.

□ 전반적으로 볼 때 OECD에서는 통상적인 믿음과는 달리 조세지원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효과는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음. 다만 국가 간의 치열한 조세경쟁

으로 인하여 각국의 정부가 조세지원을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함.

- 또한 OECD(2007)에서는 국제 조세경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세율 인하 혹은 선별적인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나 조세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서 유효세율을 낮추지 않고 조세경쟁에 대응하는 방안도 있음을 밝히고 있음.
- 마지막으로 OECD(2007)에서는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도 강조하고 있음.
 - 즉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기회도 증가하게 되므로 각국 정부의 세수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회피 대응방안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임.
 - 이를 위해서 과소자본세제, 이전가격 세제나 일반적 조세회피 규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하여 강구해야 하며 국가간 정보공유나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사례 연구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VI. 맺음말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임. 평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 외국인직접투자와 조세감면 제도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들 연구들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해보고자 하였음.
 -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투자요인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우리나라 조세지원 제도의 효과를 판단해보고자 하였음.
 - 미국, 영국,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와 같은 총 9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조세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 마지막으로 2007년 OECD보고서를 검토하고 동 보고서 상의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 외국인직접투자와 조세요인 간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조세요인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불확실하며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많은 요인 중에서 조세요인이 차지하는 순위는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외국인직접투자와 세율 간의 관련성을 국가별로 혹은 시계열로 파악한 연구에서는 분명히 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와의 음의 관련성을 발견함. 그러나 관련성의 크기는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음. 이는 세율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크기는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함.
 -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면담이나 설문을 이용한 연구들에서는 조세요인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수많은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며 그 중요도의 순위도 다른 비조세요인에 비하여 앞서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조세지원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특수한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대부분의 경우 조세요인보다 중요한 비조세요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중요한 비조세요인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조세지원만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율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율을 낮추어준다면 면에서 실효성을 갖지만 실제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지원의 영향으로 유치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음.
 -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조세부담율을 비교해본 결과 연도별, 산업별로 모두 유의하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율이 국내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모기업들이 안정적 사업기반을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고 이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수익모형을 갖고 국내 자회사를 설립했다는 면에서 일부 설명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보다 조세부담율이 낮다는 미국 등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투자동기가 조세요인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등록일 경과기간별로 조세부담율을 살펴본 결과 경과기간에 따라 조세부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며 따라서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와 같은 우리나라와 경쟁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인도 등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살펴보았음.
 -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를 차별하는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음.
 - 오히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자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지원이나 규제완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한 때 파격적이고 전면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를 운용하던 중국도 현재는 선별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내 여건에 맞추어 선별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이러한 외국사례를 통해서 무조건인 외국인직접투자에 지원보다는 국내여건을 고려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동시에 국내투자자와의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OECD(2007)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서 외국인직접투자 조

세지원을 설계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조세경쟁이나 조세회피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음.

- OECD 보고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궁극적인 효과는 국내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론상으로도 언제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조세지원의 유형별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우발이득을 안겨주거나 조세회피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 결과적으로 OECD 보고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져오는 효과나 외국인직접투자를 조세지원을 통해서 유인하는 효과가 통상적인 생각보다는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극심한 국가간의 조세경쟁으로 많은 국가의 정부들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지원을 설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경쟁에 대한 대응방안이 반드시 세율을 낮추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것만은 아니며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세율을 낮추는 것 못지 않게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를 운용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적인 세무계획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세수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음.

2.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분석

가. 현황분석

- 우리나라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부터 121조5까지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이들 규정에서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직접투자자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과 관세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자격으로는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지역 입주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조세지출보고서 상으로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서는 조세지원 외에도 다양한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는 주요국의 지원제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파격적이고 지원방법 등에서 다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모습을 갖춘 것은 역대 정부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하여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기 때문임.
-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효과적으로 유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음.
 - 본 보고서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와 조세지원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OECD 보고서 등을 통해서 외국인직접투자와 조세지원간의 관련성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상당히 다양하고 파격적인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지원이 없어도 유치할 수 있었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 불필요한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우발이득을 안겨다주고 세수손실을 증가시키지 않았는지 평가해보아야 함.
 - 또한 이러한 지원제도로 인하여 세제지원만을 목적으로 한 조세회피가 증대되고 이러한 조세회피가 세수손실을 더욱 크게 만들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함.

나.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평가

-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 ①항에서 모두 11개 항목에 걸쳐 외국인투자를 위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통계연보에서 감면실적을 보면 이중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제1호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제2호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감면이며 나머지 규정들은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함.
- 이용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감면도 이용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수는 2012년 기준으로 75개와 30개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이 극히 일부 기업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본 보고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전반적으로 국내기업보다 높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와 같이 거점 office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국

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는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조세지출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추세임.

-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술력, 노동력, 시장환경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투자의사 결정을 하며, 조세감면 등의 유인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앞선 선행연구나 OECD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현황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를 위한 조세감면제도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실효성을 갖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도록 함.

다. 조세감면 제도운용상의 실효성 평가

- OECD보고서에 따르면 조세감면을 얼마나 하는지 못지 않게 감면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

- 외국인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조세지원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외국인투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불확실성은 조세지원의 예측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즉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투자유치국에서의 조세지원의 크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함.
- 이렇게 외국인투자자들이 인지하는 불확실성은 결과적으로 조세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 최기호(2007)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외국인직접투자 조세감면규정들의 운용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부적으로 관련세법규정들의 이해가능성이나 절차의 간편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불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검토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조세지원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는 Invest Korea에서 해주고 있으나 직접적인 권한은 개별적으로 산업자원통상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각 지자체 등의 여러 부처 및 지방정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one-stop-service 를 받기 어려움.

-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직접적인 권한은 경제개발청(EDB)에 있으며, 조세지원 제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투자유인의 결정이 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개별투자사안별로 협상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면 투자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인센티브 범위를 유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조세지원제도에서는 그 특성상 신속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범위를 사안별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우리나라 감면제도 운용에 있어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3.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의 개선방향

가. 개선방향의 설정

- 일차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를 국내 외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앞선 선행연구나 OECD 보고서에서는 국내투자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만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 즉 이러한 제도는 조세회피를 유발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조세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켜 납세비순응을 유발한다는 것임.
 - 또한 앞서 살펴본 대부분 외국에서도 국내투자와 외국인투자를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국가는 거의 없었음.
-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같은 조세지원의 목표를 고용창출 등 좀 더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함.
 -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사업임.
 -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 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음. 즉 고도기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며 고도기술로 유치된 외국인직접투자가 과연 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측정도 어려움.
 - 앞선 OECD 보고서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져오는 기술이전 등의 효과는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 실제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는 조세감면 외에도 조세행정투명성 확보나 예측가능성 증대 등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세수손실을 가져오는 조세감면을 최소화하고 외국인투자가 국내 조세행정에 대해서 인식하는 불확실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세제의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세제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지나치게 자주 세법을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함.

나. 개선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에서 제2호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1호인 고도기술수반사업은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며 고도기술 판단 등에서의 재량성으로 인하여 운용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이 조항의 취지는 제2호를 운용함으로써 살릴 수 있음.
 - 나머지 대부분 규정들을 실제 이용실적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에 그치고 있음.
- 고용창출 목표를 확립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고려함.
 - 이를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정리하고 이를 외국인투자를 위한 조세감면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외국인투자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원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통합하고 단일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조세지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함.
 - 특히, 현금보조 등의 재정지원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지원에 대한 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한 기관에서 처리하는 더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일 수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실적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통계자료가 필요한데, 이는 신고기준과 도달기준의 금액과 시차차이가 크기 때문이며, 단일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쉽게 해소될 수 있음.

참고문헌

- 국세청, 2014,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 전태영·변용환, 2006,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세무요인을 중심으로, 회계저널(제15권 제2호): 145-165.
- 최기호, 2007,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세제에 대한 평가, 세무학연구(제24권 제1호): 51-80.
- KOTRA, 2013, 외국인투자가이드
- Invest Korea, 2004,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방향-주요 경쟁국의 경영/생활환경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KOTRA.
- Invest Korea, 2004, 2003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연차보고서, KOTRA.
- Bartik, T. J., 1985, Business Location Decisions in the United States: Estimates of the Effects of Unionisation, Taxes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States,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Vol. 3): 14-22.
- Blouin, J., 2012, Taxatio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Now.
- Boskin M. and W. Gale, 1987, New Results on the Effects of Tax Policy on the International Location of Investment, The Effects of Taxation on Capital Accumul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ettner, T., 2002, The Impact of Taxes and Public Spending on the Location of FDI: Evidence from FDI Flows within the EU, ZEW Discussion Paper No.02-17.
- Buettner, T and M. Ruf, 2004, Tax Incentives and the Location of FDI: Evidence from a Panel of German Multinationals, ZEW Discussion Paper No. 04-76.
- Cummins, J. G., and R. Hubbard, 1995, The Tax Sensitivit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Evidence from Firm Level Panel Data, The Effects of Taxation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vereux, M. P. and H. Freeman, 1995, The Impact of Tax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Empirical Evidence and the Implication for Tax Integration,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2): 85-106.
- Frisch, D. J. and D. G. Hartman, 1983, Taxation and the Location of U.S. Investment

- Abroad, NBER Working Paper No.1241.
- Grubert, H. and J. Mutti, 1991, Taxes, Tariffs and Transfer Pricing in Multinational Corporate Decision Maki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3): 285-293.
- Harris, D. G., 1993, The Impact of U.S. Tax Law Revision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Capital Location and Income Shifting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1 Supplement): 111-140.
- Hartman, D.G., 1984, Tax Policy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United States, *National Tax Journal* (No. 37, No.4): 475-488.
- Hines, J. R., and E. Rice, 1994, Fiscal Paradis: Foreign Havens and American Busines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9): 149-182.
- Hines, J. R., 1997, Tax Policy and The Activit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Fiscal Policy: Lessons from Economic Research* (MIT Press): 401-445.
- Hines, J. R., 1996, Altered States: Taxes and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America,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6): 1076-1094.
- Jun, J., 1994, How Taxation Affects Foreign Direct Investment-Country Specific Evidenc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307*, World Bank.
- Kemsley, D., 1998, The Effect of Taxes on Production Loc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36): 321-341.
- Newlon, T.S., 1987, Tax Policy and the Multinational Firm's Financial Policy and Investment Decisions, Ph.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 OECD, 2001, Corporate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OECD Tax Policy Studies No.4*.
- OECD, 2007, Tax Effec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Present Evidence and Policy Analysis, *OECD Tax Policy Studies No.17*.
- Papke, L.E., 1991, Interstate Business Tax Differentials and New Firm Location: Evidence from Panel Da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45): 47-68.
- Porcano, T. M. and C. E. Price, 1996, The Effects of Government Tax and Non Tax Incentiv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Multinational Business Review* (Vol. 4, No.1): 9-19.
- Rolfe, R.J., and R.A. White, 1991, Investors' Assessment of the Importance of Tax Incentives

in Locating Foreign Export-Oriented Investment: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9-57.

Scholes, M. and M. Wolfson, 1990, The Effects of Changes in Tax Law on Corporate Reorganization Activity, Journal of Business (Vol. 63): 141-164.

Scholes, M. and M. Wolfson, 1992, Taxes and Business Strategy: A Planning Approach, Prentice Hall.

Single, L.E. and J.L. Kramer, 1996, Tax Policy and the Location of Plants and Profi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vol. 15 : 108-142.

Slemrod, J., 1990, Tax Effec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United States: Evidence from a Cross Country Comparison, Taxation in Global Economy: 79-117.

Stówase, S., 2003, Tax Rate Differentials and Sector Specific Foreign Direct Investment: Empirical Evidence from EU, Working Paper.

Swenson, D. L., 2001, Transaction Type and the Effect of Taxes on the Distribu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axation and Multinational Activ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89-109.

Swenson, D. L., 1994, The Impact of US Tax Reform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y (Vol. 54): 243-266.

Wilson, 1993, The Role Of Taxes In Location And Sourcing Decisions, Studies in International Taxation(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234.

웹사이트

www.ibfd.org

www.ois.go.kr

www.mosf.go.kr

